

2022년 HS 개정내용 해설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김 성 채

목차

I. 머리말	1
1. HS 협약의 개정	1
2. HS 협약 제16조와 개정주기(Review-Cycle)	1
3. HS 협약 개정경과	2
II. 2022년 HS의 개정 범위 및 주요 개정 분야	5
1. 제6차 Review-Cycle의 개정범위	5
2. 2022년 HS에서 호·소호의 변동	7
III. 2022년 HS의 주요 개정내용	10
1. 어류·갑각류·연체동물·그밖의 수생무척추 동물의 분말과 펠렛(pellet)을 통합하기 위하여 제0309호 신설	10
2. FAO의 요청에 따른 개정	13
3. 미생물성 오일과 올리브 오일	20
4. 코코넛 워터는 과일주스인가?	23
5. 새로운 형태의 담배 제품들	25
6. 유해물질 관련 개정(국제협약 관리물질의 특개)	29
7. 군민 양용(dual use) 품목과 관련한 개정	46
8. 진단용 시약 등 의료용품과 관련한 개정	54
9. 내화성 세라믹과 관련한 개정	59
10. 유리섬유 및 그 제품에 관한 개정	62
11. 비금속(卑金屬)제의 봉 등에 관한 개정	64
12. 금속가공용 단조기와 관련한 제8462호의 개정	70
13. 3D 프린터와 관련한 개정	73
14. 태양에너지 제품과 관련한 개정	75
15. 스마트폰과 제8517호의 개정	77
16.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을 위한 4단위 호(제8524호) 신설	79

17. LED 제품·조명기구 및 제8541호에 대한 개정 84

18. 제17부 수송기기에 관한 개정 97

19. 임플란트용 스크루와 ‘범용성’부분품의 문제 109

20. 반도체 디바이스 측정 검사용 기기에 대한 개정 112

21. 테마파크와 인디애나 존스(미국의 제95류와 97류 개정 제안) 114

22. 그 밖의 개정 118

IV. 맺음말 119

1. 사용자 친화적인 HS와 코드 수 증가의 문제 119

2. HS 개정에 따른 우리나라 HSK 개정의 문제 119

부록 : 2022년 HS 개정(신구대조표) 122

I. 머리말

1. HS 협약의 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 협약”이라 함)은 1988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6차례 개정되어 왔다.¹⁾ 여기서 말하는 HS 협약의 개정이란 통상 HS 협약 부속서인 품목분류표(Nomenclature)의 개정을 의미한다. HS 협약(부속서인 품목분류표 포함)의 사용자인 각국의 정부, 관세 및 무역종사자 등의 요구나 기술의 발전 또는 국제 무역패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협약의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품목분류표를 개정할 수 있다.

HS 품목분류표가 개정되는 사유로는 무역거래량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품목코드의 신설 또는 삭제²⁾, 주요 국제기구 또는 특정 국제협약사무국의 요청에 따른 개정, 신상품 또는 신기술과 관련한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 등을 들 수 있다.

2. HS 협약 제16조와 개정주기(Review-Cycle)

품목분류표의 개정 주기에 대하여 협약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1988년 시행 이후 92년과 96년에 두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2002년부터는 5년의 개정주기가 정착이 되어 오고 있다. (2002년, 2007년, 2012년, 2017년까지 총 6차례 개정)

HS 협약 제16조는 협약의 개정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HS 협약 개정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권고(recommend)되며, 이 권고안이 통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원국의 반대가 없는 경우에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하여 수락된 개정안은 통지일이 4월 1일 이전인 경우 그로부터 2차년도 이후의 1월 1일에, 통지일이 4월 1일 이후인 경우 그로부터 3차년도 이후의 1월 1일에 발효된다. 관세협력 이사회는 매년 6월이나 7월에 개최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통지된 개정안은 3차년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HS 개정안은 그 개정안의 실제 발효시기보다 훨씬 앞서서(통상 2년 6개월 이전) 확정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를 WCO에서는 개정주기(Review-Cycle)라고 표현하고 있다.

1) 2020년 1월 현재 개정안이 확정된 상태인 2022년 HS까지 포함하면 총 7차례 개정

2) WCO는 HS 품목분류표에 특개되어 있는 품목이라도 무역 거래량이 미미하면 코드를 삭제하고, 반대로 무역거래량이 증가할 경우 새로운 코드를 신설하는데 통상 4단위 호(heading)의 경우 연간 국제거래량 1억불, 6단위 소호(subheading)의 경우 연간 국제거래량 5천만불을 기준으로 한다.

HS 제7차 개정판(이하 “2022년 HS”라 함)은 개정주기로는 여섯 번째³⁾에 해당한다. 2022년 HS는 2019년 6월, 관세협력이사회(CCC)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었고 각 회원국은 남은 기간 동안의 준비를 거쳐 자국의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국내 수용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2022년 HS 시행에 맞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개정안,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 고시) 개정안 및 HS 해설서(관세청 고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⁴⁾.

3. HS 협약 개정경과

1988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HS 개정경과는 다음과 같다.

<HS 품목분류표 개정경과>

구 분	개정개요	주요 개정품목	6단위 코드의 수
1차 개정 (‘92.1.1)	HS 제정 작업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 반영 및 호의 용어를 보완·개정	- 소호의 통합 및 신설 - 호의 용어 등	5,019→5,018
2차 개정 (‘96.1.1)	신상품의 개발과 국제기구에서 요청한 마약원료물질 및 오존층 파괴물질 등을 특정 호(또는 소호)에 신설	- 영상전화기, 팩시밀리, 휴대용 컴퓨터 등 - 마약원료물질 및 오존층파괴물질 등	5,018→5,113
3차 개정 (‘02.1.1)	폐기물 및 CITES협약 대상품목을 특정 호(또는 소호)에 신설 하였으며 HS의 통일적 적용을 위한 용어정의 등을 마련	- 보증된 참조물질 및 산업 폐기물 등 -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 소매포장 정의 등	5,113→5,224
4차 개정 (‘07.1.1)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통제물질 및 IT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특정상품에 대한 호(또는 소호)를 신설하였으며 다양한 신상품의 개발로 인하여 종전의 용어정의 및 분류 기준을 보완	- 수은화합물, 농약원료, 청석면 등 유해물질 - 반도체 제조용 기기 - 유.무선 통신기기 등 - 신문용지, 합성섬유 및 재생섬유 등에 대한 용어	5,224→5,052
5차 개정 (‘12.1.1)	FAO(국제 식량 농업기구)의 요청에 따른 농수산물의 분류체계를 재편하는 한편, 신상품 및 국제 무역상 중요한 품목을 반영	- 품목분류표상 제3류의 어류의 구분을 위한 학명 적용 - 제1~4부의 분류체계 개정 - 유기화합물의 분류체계 개정	5,052→5,205

3) WCO는 이를 6th Review-cycle로 표현한다. 따라서 제6차 개정 주기라 표현한 것은 HS 2022 버전을 위한 개정과정을 지칭하는 말이다.

4) WCO에서는 각 회원국이 새로운 버전의 도입을 위한 준비과정을 충분히 거칠 수 있도록 2년 이상의 여유기간을 제공하고 있지만 각국의 역량이나 국내사정에 따라 도입이 1년 이상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구 분	개정개요	주요 개정품목	6단위 코드의 수
		- 바이오 디젤(제3826호)에 관한 규정 신설	
6차 개정 (17.1.1)	WSC(세계반도체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집적회로의 범위를 확대하고, 어류의 학명을 다양하게 특개하는 한편, 신상품 및 국제무역상 중요품목의 반영	- 제3류에서 어류의 증명(학명) 확대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련 소호 신설(스톡홀름 컨벤션 요청) - 말라리아 퇴치용 제품 관련 개정 - 복합부품(MCO) IC 개념 신설 및 제8542호 범위 확대 -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제87류 각호의 소호체계	5,205→5,387

<제7차 HS 개정(22.1.1 시행)의 주요 내용>

개정 개요	주요 개정품목	코드의 수	
		4단위 (heading)	6단위 (sub-heading)
바젤협약의 요청에 따라 산업폐기물(e-waste)의 특개	- 제8549호를 신설하여 전기, 전자 웨이스트와 스크랩 특개(전기전자 조립품, 인쇄회로 보드, 또는 전기전자 제품 등의 폐기물)	1,222→1,228	5,387→5,609
타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품목분류표 개정	- 식용곤충 특개 - 여러 가지 목제품 특개 - 오존층 파괴물질, 온실가스, 화학무기 원료, 마약원료 등과 관련한 개정 - 태양열 및 태양광 사용제품의 소호 신설		
궐련형 전자담배 등 새로운 형태의 담배제품 등장과 관련한 개정	- 제2404호 신설(전자담배 및 금연보조제, 니코틴 제품 등) - 전자담배용 기화기(제8543.40호)		
군민양용(dual use) 물품과 관련한 품목분류표 개정	- 제81류의 기타 비금속에서 특정 물품 특개 - 생물학적 안전캐비닛, 동결건조기, 고속카메라와 야간감시카메라 등		
신상품 및 국제무역상 중요품목의 반영	- LED 제품의 특개(제8539호, 제9405호 등) - 스마트폰(제8517.13호),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제8524호), 3D프린터(제8485호) 등의 호·소호 신설		
제8541호 반도체의 범위 확대	- 제8541호 분류체계개편 및 반도체		

개정 개요	주요 개정품목	코드의 수	
		4단위 (heading)	6단위 (sub-heading)
대	기반의 트랜스듀서 개념 도입		
제17부 수송기기	- 제8806호(무인기) 신설 - 제8701호와 제8704호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위한 소호 신설 - 제8903호의 세분류		

2022년 HS는 2017년 HS와 비교하여 호(heading)의 수가 6개 늘어나고 소호(sub-heading)의 수는 222개가 늘어났다. 코드 수의 증가도 클 뿐만 아니라 그 개정폭 또한 첨단기술 제품과 환경관련 물품에 관한 규정을 크게 개정한 2007년 HS에 버금갈 정도로 변화가 많다.

II. 2022년 HS의 개정 범위 및 주요 개정 분야

1. 제6차 Review-Cycle의 개정범위

매 HS 개정주기마다 WCO에서 설정하는 기본적인 몇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이전 개정주기에서 검토하였으나 시간 부족으로 종결짓지 못한 항목에 대한 검토 계속
- 품목분류표의 간소화를 위하여 국제거래량이 감소한 물품의 호와 소호 삭제(호와 소호를 신설하거나 삭제하는 기준은 각각 연간 국제거래량 1억불과 5천만불)
- 국제거래량 기준의 예외 유지(사회와 환경에 중요한 물품, 개발도상국의 경제에 중요도가 높은 물품, 품목분류표 체계 유지에 꼭 필요한 잔여 호, 특정 회원국이 요청하고 HS 위원회가 동의한 물품의 경우 국제거래량이 미미하더라도 품목번호 유지)
- 무역기구나 국제기구 등의 요청 고려
- 기술발전, 산업동향 발전 등의 이유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연구
- 품목분류표를 보다 쉽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

HS 개정은 큰 틀에서는 이러한 대원칙 내에서 검토되며, 제6차 개정주기에서 논의되었던 내용 중 몇 가지 중요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산업쓰레기와 관련한 HS 품목분류표 개정(바젤협약 사무국 요청)

HS 품목분류표는 전 세계적으로 무역거래되는 “상품”의 원활한 분류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국가간 거래는 이루어지지만 실체는 없는 물품(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은 포함하지 않으며, 실체가 있는 유체물이라 하더라도 상업적 가치가 없는 물품(쓰레기, 폐기물, 중고품 등)에 대하여는 그다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바젤협약 측은 국가간 국력과 빈부의 차이에 의하여 선진국의 폐기물이 상업적으로 무분별하게 후진국에 버려지는 관행을 방지하고 이러한 물품교역의 모니터링을 원활히 하고자 HS 품목분류표 전반에 걸쳐 폐기물을 특제하는 개정을 요청하였다. 폐기물의 종류는 재질, 용도,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폐기물을 HS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방대한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HS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기계, 전기기기, 전자장비나 그 부분품의 폐기물(e-waste)을 제16부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제8549호 신설)

식량자원과 특정 목제품과 관련된 개정(FAO의 요청)

식량농업기구(FAO)는 2012년, 2017년 HS 개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국제기구이며 이번 개정에도 식용곤충의 특계(제0410호 신설), 여러 가지 목제품의 특계 등 HS 개정에 기여하고 있다.

그 밖의 다른 국제기구의 요청

그 밖에도 몬트리올 의정서(오존층 파괴물질), CWC(화학무기협약), UN 마약관리국(INCB) 등에서 국제적인 통제물질의 거래와 이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HS 품목분류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제84류와 제85류에서 태양광과 태양열을 이용하는 기기에 대한 소호 신설을 제안하였다.

군민양용(dual-use) 물품과 관련한 개정

기술발전의 역사에서 군사용 기술과 산업용 기술의 cross over는 그 역사가 길며, 이러한 군민양용 기술과 연관된 물품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략적” 기술 또는 물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2022년 HS는 불법 무기제조 등에 악용될 수 있는 군민양용 물품의 국제교역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일부 소호가 신설되었다. (제8109호의 지르코늄, 제8414호의 생물학적 안전 캐비닛, 제8419호의 동결건조기 등)

정보기술 분야의 HS 개정

2022년 HS에서는 3D 프린터(제8485호), 스마트폰(제8517.13호),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제8524호) 등이 특계되는 한편, 반도체기반의 트랜스듀서 개념의 도입을 통하여 제8541호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LED 기술의 발전에 따라 LED를 이용한 조명용 물품을 여러 소호 레벨에 특계하였다.

제17부 수송기기의 개정

과거 WCO HS 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카메라가 결합된 드론을 제8525호에 분류토록 결정한 바 있다. 이 결정은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무인 비행체가 그 용도(촬영, 첩보, 물품수송, 농업, 무기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2022년 HS에서는 제8806호를 신설하여 용도에 관계없이 (완구 제외) 모든 무인기를 이 호에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제8701호(트랙터), 제8704호(화물차)에서 전기

차와 하이브리드차를 소호 레벨에서 구분하여 분류하도록 하는 한편 레저용 선박 등의 세분류를 위하여 제8903호의 소호 체계를 개편하였다.

2. 2022년 HS에서 호·소호의 변동

2022년 HS의 주요 류(Chapter)에서의 호와 소호의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다.

류 (Ch.)	호의 수(증감)		소호의 수(증감)		주요 내용
	HS 2017	HS 2022	HS 2017	HS 2022	
제3류	8	9(+1)	224	225(+1)	어류 등의 가루, 펠렛 등을 새로운 호(제0309호)에 통합
제7류	14	14	67	73(+6)	FAO의 요청에 의하여 제0709호의 채소를 세분화
제15류	21	21	48	53(+5)	IOC의 요청에 따라 버진 올리브유를 세분화
제24류	3	4(+1)	10	16(+6)	새로운 형태의 담배제품을 제24류에 포함시키도록 제2404호를 신설
제28류	50	50	174	180(+6)	화합물의 무역거래 동향 반영, 몬트리올의정서·화학무기금지협약 등과 관련한 유기화합물의 특계를 위한 소호 신설
제29류	42	42	385	410(+25)	
제36류	6	6	8	13(+5)	제3603호(도화선, 도폭선, 뇌관 등)의 소호 세분화
제38류	26	27(+1)	92	108(+6)	- 제3822호(진단용 시약)의 세분화 - 오존층파괴물질(메탄·에탄·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함유한 혼합물) 관련 제3827호 신설(제3824호의 포함에 따라 제3827호 신설)
제44류	21	21	103	128(+25)	- FAO의 요청에 따라 제44류 각 호에 특정 목제품 분류를 위한 소호 신설 - 건축용·구조용 목재의 분류를 위하여 제4418호의 소호 세분화
제62류	17	17	112	104(-8)	의류의 무역패턴 등 반영을 위하여 불필요한 소호 삭제
제70류	19	19	64	71(+7)	산업동향 반영을 위하여 제7019호(유리섬유 및 그 제품)의 소호 체계 개편
제81류	13	12(-1)	48	56(+8)	- 제8107호(카드뮴과 그 제품) 삭제 - 지르코늄 제품을 위한 소호 세분화

류 (Ch.)	호의 수(증감)		소호의 수(증감)		주요 내용
	HS 2017	HS 2022	HS 2017	HS 2022	
					(제8109호), 하프늄, 레늄, 카드뮴 등을 위한 소호 신설(제8112호)
제84류	85	86(+1)	516	538(+22)	- 제8462호(단조기 등)의 소호 체계를 재구성하여 여러 형태의 금속가공기계를 소호레벨에 특게 - 제8485호를 신설하여 부가제조기계(3D 프린터)를 이 호에 통합하여 분류
제85류	46	48(+2)	265	296(+31)	- 제8501호 등 몇몇 호에서 태양열을 이용하는 기기를 위한 소호 신설 - 제8517호에서 스마트폰을 위한 소호 신설(제8517.13호) - 제8524호를 신설하여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을 통합 분류 - 제8525호에서 군민양용 물품인 초고속 카메라, 방사선 카메라, 야간투시 카메라 등을 위한 소호 신설 - 제8541호에서 반도체 디바이스의 분류체계 개편 - 제8549호를 신설하여 e-waste를 통합 분류
제87류	16	16	87	97(+10)	- 제8701호에서 전기식 또는 하이브리드식 트랙터를 구분하기 위한 소호 신설 - 제8704호에서 전기식 또는 하이브리드식 화물차를 구분하기 위한 소호 신설
제88류	5	6(+1)	15	26(11)	- 제8806호를 신설하여 무인기(드론)를 통합 분류 - 기존의 제8803호를 삭제하고 제8807호를 신설하여 항공기용 부품품을 이 호에 분류
제89류	8	8	18	26(+8)	제8903호(요트, 유람용·운동용의 선박)의 소호 분류체계를 개편하여 다양한 형태와 규격의 선박을 특게
제94류	6	6	42	52(+10)	- 목재로 만든 가구와 부분품 등을 위한 소호 신설(제9401호, 제9403호)

류 (Ch.)	호의 수(증감)		소호의 수(증감)		주요 내용
	HS 2017	HS 2022	HS 2017	HS 2022	
					- LED 또는 태양광 방식의 조명기구를 위한 소호 신설(제9405호) - 제9406.20소호를 신설하여 철강제의 모듈화된 빌딩 유닛을 특개
제95류	6	6	31	39(+8)	제9508호(놀이공원용 기구 등) 소호 체계를 개편하여 다양한 형태의 놀이기구를 소호 레벨에서 특개
제97류	6	6	7	19(+12)	- 제9701호부터 제9705호에서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5단위 소호레벨 구분 - 제9706호에서 제작 후 250년이 경과한 물품을 위한 소호 구분

III. 2022년 HS의 주요 개정내용

1. 어류·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무척추 동물의 분말과 펠렛(pellet)을 통합하기 위하여 제0309호 신설

제56차 HS 위원회("15.9월)는 "오징어의 냉동건조 분말"이 제0307호에서 어느 소호에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HS 2017에서 제3류의 분류체계상 어류(제0301호 또는 제0302호)의 가루는 제0305호에 따로 분류되는 반면, 갑각류(제0306호), 연체동물(제0307호), 수생무척추동물(제0308호)의 가루는 그 동물과 같은 호에 분류되는 것은 명확하다. 다만, 소호 레벨에서 제0307호의 경우 오징어의 분말을 오징어가 분류되는 소호(제0307.4호)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 잔여소호(제0307.9호)에 분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것이다. HS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이 물품을 제0307.99호에 분류하면서 이러한 분말의 품목분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품목분류표의 개정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HS 검토소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두 가지 옵션, 즉 제0305호부터 제0308호의 각 소호의 용어를 분명히 정리하는 방안과 새로운 호를 신설하여 제3류 어류 등의 분말과 펠렛을 통합하여 분류하는 방안 중에서 후자를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제3류의 각 호와 소호의 용어가 일부 정리되고 제0309호를 신설하여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그 밖의 수생무척추 동물의 가루와 펠렛을 모두 이 호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제3류 주3 신설 <신설>	3. 제0305호부터 제0308호에는 식용에 적합한 고운 가루, 거친 가루와 펠렛은 포함하지 않는다.(제0309호)	
03.05 -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u>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렛(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u>	03.05 -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3.06 -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	03.06 -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u>갑각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u>]	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306.19 -- 기타 <u>[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u>	0306.19 -- 기타	
0306.39 -- 기타 <u>[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u>	0306.39 -- 기타	
0306.99 -- 기타 <u>[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u>	0306.99 -- 기타	
03.07 -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u>연체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u>]	03.07 -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기타 <u>[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u> 0307.9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0307.92 -- 냉동한 것 0307.99 -- 기타	- 기타 0307.9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0307.92 -- 냉동한 것 0307.99 -- 기타	
03.08 -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	03.08 -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u>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한다)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u>]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신설>	03.09 –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9.10 -- 어류의 것 0309.90 -- 기타	호 +1 소호 +2

2022년 HS에서 제3류의 종합적인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제0301호	어류 (Fish)	① 살아 있는 것(관상용, 이식용, 식용)	제0301호	어류 (Fish)	① 살아 있는 것(관상용, 이식용, 식용)
제0302호		② 신선, 냉장한 것	제0302호		② 신선, 냉장한 것
제0303호		③ 냉동한 것	제0303호		③ 냉동한 것
제0304호		④ 필렛(Fillet)	제0304호		④ 필렛(Fillet)
제0305호		⑤ 건조, 염(수)장, 훈제 ⑥ 분말, 거친 가루, 펠릿(식용) ⁵⁾	제0305호		⑤ 건조, 염(수)장, 훈제
제0306호	갑각류(①~⑥)		제0306호	갑각류(①~⑤)	
제0307호	연체동물(①~⑥)		제0307호	연체동물(①~⑤)	
제0308호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①~⑥)		제0308호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①~⑤)	
			제0309호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의 분말, 거친 가루, 펠릿(식용) ⁶⁾	

5) 식용에 부적합한 것은 제2301호에 분류

6) 식용에 부적합한 것은 제2301호에 분류

2. FAO의 요청에 따른 개정

2012년 HS 개정시 FAO는 전 세계 식량자원의 거래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분야의 품목분류표 개정에는 크게 기여한 바 있다. FAO는 1970년대 초의 세계 식량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식량 생산 및 식량 안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식량 및 농업에 대한 지구정보 및 조기경보시스템(GIEWS; Global Information and Early Warning System on Food and Agriculture)”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GIEWS의 목적은 각국의 정책 담당자와 분석가들에게 식량의 수급에 대한 정확하고 유용한 최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가능한 식량 위기로부터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세계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기에 경고하는 것이다.

FAO는 HS가 GIEWS의 목표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 품목분류표(주로 제1부 내지 제4부의 식량자원 관련 품목)의 개정안을 제시하였고 이는 2012년 HS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 바 있다. 나아가 2017년 HS 개정시에는 식량안보와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자원관리 측면에서 FAO에는 제3류 각 호에 분류되는 어류의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호의 용어에 학명을 정교하게 삽입하도록 개정안을 제시하는 한편, 제8류와 84류의 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FAO의 요청에 따라 2022년 HS에 반영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제2류 주1 나목 신설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생략) 나~다. (생략)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생략) 나. 먹을 수 있는 죽은 곤충(제0410호) 다~라. (생략)	
제4류 주5 나목, 주6 신설 4.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신설> 가~다. (생략) <신설>	5.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식용에 부적합한 죽은 곤충(제0511호) 나~라. (생략) 6. 제0410호의 목적상 ‘곤충’이란 먹을 수 있는 곤충의 전체 또는 일부분으로, 신선, 냉장, 냉동, 건조, 훈제,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하며, 조제 또는 보존처리한 먹을 수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있는 곤충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제4부)	
04.10 -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물	04.10 - 곤충과 그 밖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물 0410.10 - 곤충 0410.90 - 기타	소호 +1
- 버섯과 송로(松露) 0709.51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0709.59 -- 기타	- 버섯과 송로(松露) 0709.51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0709.52 -- 볼레투스(Boletus)속의 버섯 0709.53 -- 칸타렐루스(Cantharellus)속의 버섯 0709.54 -- 표고버섯(Lentinus edodes) 0709.55 -- 송이버섯(Tricholoma matsutake, Tricholoma magnivelare, Tricholoma anatolicum, Tricholoma dulciolens, Tricholoma caligatum) 0709.56 -- 송로버섯(Tuber spp.) 0709.59 -- 기타	소호 +5
<신설>	0712.34 -- 표고버섯(Lentinus edodes)	소호 +1
0802.90 - 기타	- 기타 0802.91 -- 잣,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802.92 -- 잣, 껍데기를 벗긴 것 0802.99 -- 기타	소호 +2
<신설>	1211.60 -- 아프리카 체리(<i>Prunus africana</i>) 나무의 껍질	소호 +1
제16류 표제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또는 곤충의 조제품	
제16류 주1, 주2 1. 이 류에서 제2류·제3류나 제0504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은 제외한다. 2.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어류나 갑각류·	1. 이 류에서 제2류·제3류·제4류 주 제6호나 제0504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그리고 곤충은 제외한다. 2.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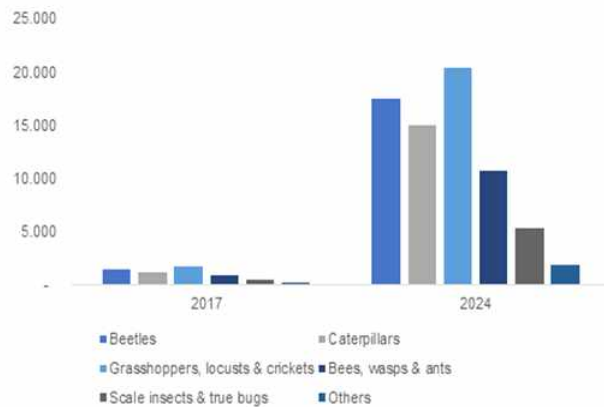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생략)	·육·설육(脣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생략)	
제16류 소호주1 1. 소호 제1602.10호에서 “균질화한 조제품”이란 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육이나 설육(脣肉)이나 피를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중략)... 그 조제품에는 육이나 설육(脣肉)이 눈에 보일 정도의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이 소호는 제1602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	1. 소호 제1602.10호에서 “균질화한 조제품”이란 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육·설육(脣肉)·피나 곤충을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중략)... 그 조제품에는 육·설육(脣肉)이나 곤충이 눈에 보일 정도의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이 소호는 제1602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	
16.01 -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脣肉)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	16.01 -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脣肉)·피나 곤충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	
16.02 -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脣肉)이나 피	16.02 -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脣肉)·피나 곤충	
제18류 주1 1. 이 류에서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제3004호의 조제품은 제외한다.	1. 이 류에서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가. 소시지·육·설육(脣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조제식료품 나. 제0403호·제1901호·제1902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제3004호의 조제품	
제44류 소호주2, 3, 4 신설 <신설>	2. 소호 제4401.32호에서 “목재 브리켓(briquettte)”이란 기계 목재가공업, 가구 제조업이나 그 밖의 목재 변형 활동에서 발생하는 대팻밥, 톱밥, 칩과 같은 부산물로서 직접 압축하거나 중량기준으로	소호주 3과 4는 캐나다의 요청에 따라 신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전 중량의 100분의 3 이하로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것을 말한다. 이러한 브리켓(briquette)은 입방형·다면체·원통형으로 가장 짧은 단면이 25밀리미터 이상이다. 3. 소호 제4407.13호에서 "S-P-F"란 가문비나무(Spruce), 소나무(Pine), 전나무(Fir)의 혼교임분에서 얻어진 목재를 말하며 각각의 종의 구성비는 다양하고 정확히 알 수 없다. 4. 소호 제4407.14호에서 "Hem-fir"란 웨스턴 솔송나무와 전나무의 혼교임분에서 얻어진 목재를 말하며 각 종의 구성비는 다양하고 정확히 알 수 없다.	
<신설>	4401.32 -- 목재 브리켓(briquette)	소호 +1
4401.40 - 톱밥,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응결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톱밥,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응결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401.41 -- 톱밥 4401.49 -- 기타	소호 +1
44.02 - 목탄[셸(shell)이나 너트(nut)의 탄을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2 - 목탄[셸(shell)이나 너트(nut)의 탄을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소호 +1
4402.10 - 대나무로 만든 것	4402.10 - 대나무로 만든 것	
<신설>	4402.20 - 껍질과 너트로 만든 것	
4402.90 - 기타	4402.90 - 기타	
<신설>	4403.42 -- 티크(Teak)	소호 +1
<신설>	4407.23 -- 티크(Teak)	소호 +1
44.12 -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44.12 -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소호 +7
4412.10 - 대나무로 만든 것	4412.10 - 대나무로 만든 것	
-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412.31 ~ 4412.39 (생략)	4412.31 ~ 4412.39 (생략)	
<신설>	- 적층 베니어 목재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 기타 4412.94 -- 블록보드(blockboard), 라민보드(laminboard), 배튼보드(battenboard) 4412.99 -- 기타	4412.41 -- 적어도 한 쪽 바깥면의 플라이가 열대산 목재로 된 것 4412.42 -- 기타, 적어도 한 쪽 바깥면의 플라이가 활엽수로 된 것 4412.49 -- 기타, 양쪽 바깥면의 플라이 모두 침엽수인 것 - 블록보드(blockboard), 라민보드(laminboard), 배튼보드(battenboard) 4412.51 -- 적어도 한 쪽 바깥면의 플라이가 열대산 목재로 된 것 4412.52 -- 기타, 적어도 한 쪽 바깥면의 플라이가 활엽수로 된 것 4412.59 -- 기타, 양쪽 바깥면의 플라이 모두 침엽수인 것 - 기타 4412.91 -- 적어도 한 쪽 바깥면의 플라이가 열대산 목재로 된 것 4412.92 -- 기타, 적어도 한 쪽 바깥면의 플라이가 활엽수로 된 것 4412.99 -- 기타, 양쪽 바깥면의 플라이 모두 침엽수인 것	
44.14 - 나무로 만든 그림틀·사진틀·거울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44.14 - 나무로 만든 그림틀·사진틀·거울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4414.10 - 열대산 목재로 된 것 4414.90 - 기타	소호 +1
4418.10 - 창, 프랑스 창과 이들의 틀	- 창, 프랑스 창과 이들의 틀 4418.11 - 열대산 목재로 된 것 4418.19 - 기타	소호 +1
4418.20 - 문·문틀·문지방	- 문·문틀·문지방 4418.21 - 열대산 목재로 된 것 4418.29 - 기타	소호 +1
<신설>	4418.30 - 소호 제4418.81호부터 제4418.89소호의 물품을 제외한 기둥과 빔	소호 +1
4418.60 - 기둥과 들보	<삭제>	소호 -1
<신설>	- 가공한 구조용 목재 4418.81 -- 접착한 적층목재(glulam)	소호 +4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4418.82 -- 교차적층 목재(CLT 또는 X-lam) 4418.83 -- I 비임(beam) 4418.89 -- 기타	
<신설>	4418.92 -- 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	소호 +1
<신설>	4419.20 - 열대산 목재로 만든 것	소호 +1
4420.10 - 나무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4420.11 - 열대산 목재로 만든 것 4420.19 - 기타	소호 +1
<신설>	4421.20 - 관(棺)	소호 +1
9401.30 - 회전 의자(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회전 의자(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9401.31 -- 목재로 만든 것 9401.39 -- 기타	소호 +1
9401.40 - 침대 겸용 의자[가든시트(garden seat)나 캠핑용은 제외한다]	- 침대 겸용 의자[가든시트(garden seat)나 캠핑용은 제외한다] 9401.41 -- 목재로 만든 것 9401.49 -- 기타	소호 +1
9401.90 - 부분품	- 부분품 9401.91 -- 목재로 만든 것 9401.99 -- 기타	소호 +1
9403.90 - 부분품	- 부분품 9403.91 -- 목재로 만든 것 9403.99 -- 기타	소호 +1

2022년 HS에서 FAO의 가장 혁신적인 기여중 하나는 식용의 곤충을 특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품목분류표에서 식용의 곤충은 어느 호에서 특별히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제1류와 2류의 분류맥락상 식용의 (죽은) 곤충은 제0208호에 분류가능하다. FAO는 제0208호와 0210호에 식용의 곤충을 특제하는 개정안을 제시했지만 HS 검토소위원회는 식용의 곤충을 제4류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선호함에 따라 제0410호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식용 곤충(왼쪽)과 식용곤충의 미래 수요 예측(FAO)>

아울러 제0410호에 분류되는 식용곤충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류 주 제6호를 신설하였다. 이 주에 따르면 제0410호에는 먹을 수 있는 곤충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분류되나 신선, 냉장, 냉동, 건조, 훈제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통상 제2류나 3류에서 허용하는 가공범위 이내의 것)에 한정하며 그 이상 가공된 것은 제16류나 제21류에 분류될 수 있다.

향후 이 분야에서 “곤충”의 범위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식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곤충은 귀뚜라미, 메뚜기, 벌, 개미, 딱정벌레나 애벌레 종류인데 분류학상 곤충으로 분류되지 않는 절지동물(거미, 전갈, 지네 등)이 식용으로 사용될 경우 제0410호의 범위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곤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FAO는 그 밖에도 제0709호에서 버섯을 세분하고, 제44류에서 열대목 제품과 건축용 목재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3. 미생물성 오일과 올리브 오일

제57차 HS 위원회('16.3월)는 균류(Fungus, *Mortierella Alpina*)에서 얻어진 오일(oil)의 품목분류를 검토하였다. 제15류의 분류체계상 돼지, 소, 양 등에서 얻어진 동물성 유지는 제1501호부터 제1506호에 분류되고, 대두, 낙화생, 올리브 등으로부터 얻어진 식물성 유지는 제1507호부터 제1515호에 분류되며, 변성유지, 에스테르화 유지, 식물성의 납(wax), 잔류물 등은 제1516호부터 제1522호에 포함된다.



<균류(fungi)는 동물인가, 식물인가?>

균류로부터 얻어진 유지는 품목분류표의 맥락상 제15류의 어딘가에 분류되는 것이 적절하지만 호의 용어에서 이러한 유지를 명확하게 포함하는 호는 없다. 이에 따라 제59차 HS 위원회('17.3월)는 이 유지를 통칙 제4호를 적용하여 제1515호에 분류하였으며, 아울러 연관된 품목분류표의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2022년 HS는 제1515호의 용어를 개정하여 식물성 유지만이 아니라 미생물성 유지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개정은 이 호의 용어만이 아니라 제3부와 제15류의 표제와 품목분류표의 관련된 주나 호의 용어에서도 이를 반영하는 개정을 수반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 올리브 이사회(IOC)는 제1509호와 1510호의 올리브유를 소호 레벨에서 보다 세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제3부 표제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동물성·식물성·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제15류 표제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동물성·식물성·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제15류 소호주 <신설> 1. 소호 제1514.11호와 제1514.19호에서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유 (rape oil, colza oil)"란 (생략)	1. 소호 제1509.30호의 목적상, 버진 올리브유는 유리산도가 올레산(oleic acid)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하로 나타나며, 코텍스 규격 33-1981에 명시된 특성에 따라 다른 범주의 버진 올리브유와 구분할 수 있다. 2 소호 제1514.11호와 제1514.19호에서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유 (rape oil, colza oil)"란 (생략)	
15.09 -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9.10 - 버진(virgin) 1509.90 - 기타	15.09 -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9.20 -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509.30 - 버진 올리브유 1509.40 - 기타 버진 올리브유 1509.90 - 기타	소호 +2
15.10 -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신설> <신설>	15.10 -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1510.10 - 가공하지 않은(crude) 올리브 포마스유 1510.90 - 기타	소호 +1
15.15 - 그 밖의 비취발성인 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5 - 그 밖의 비취발성인 식물성·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신설>	1515.60 -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그 분획물	소호 +1
15.16 -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테르화한(inter-esterified) 것, 리에스테르화한(re-esterified) 것,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것으로 한정하며,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6 -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테르화한(inter-esterified) 것, 리에스테르화한(re-esterified) 것,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것으로 한정하며,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신설>	1516.30 -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그 분획물	소호 +1
15.17 -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	15.17 - 마가린,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	
15.18 -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15.18 -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23.06 -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304호나 제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6 -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304호나 제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34류 주1 가목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으로 사용되는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식용 혼합물과 조제품(제1517호)	가. 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으로 사용되는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식용 혼합물과 조제품(제1517호)	
제38류 주7 7. 제3826호의 소호에서 “바이오디젤”이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사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서 얻은 것으로서 연료로 사용되는 지방산 모노 알킬 에스테르를 말한다.	7. 제3826호의 소호에서 “바이오디젤”이란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사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서 얻은 것으로서 연료로 사용되는 지방산 모노 알킬 에스테르를 말한다.	
84.38 - 식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	84.38 - 식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비휘발성인 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	
8479.20 -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조제용 기계류	8479.20 - 동물성·비휘발성인 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조제용 기계류	

4. 코코넛 워터는 과일주스인가?

제57차 HS 위원회(‘16.3월)는 코코넛 워터(coconut water)의 품목분류를 검토하였다. 코코넛 워터는 완전히 익지 않은 코코넛의 껍질(shell)을 칼로 잘라내거나 구멍을 뚫어서 코코넛 내의 수분을 그대로 따라내어 채취한 것을 말한다. HS 위원회는 이 코코넛 워터에 별다른 가공을 하지 않고 단지 0.05%의 설탕만을 첨가한 물품을 제2009호의 과일주스로 볼 것인지, 제2202호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2009호에는 과일주스와 채소주스(fruit juice and vegetable juice)가 분류되며, 코코넛은 분류학상으로는 과실에 해당하므로 (HS 품목분류표에서 신선한 코코넛은 다른 견과류와 함께 제0801호에 분류) 일견 코코넛 워터를 제2009호의 과일주스로 보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코코넛 워터〉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의문점이 존재하는데, 첫째, 견과류(nut)인 코코넛의 주스를 제2009호의 과실주스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둘째, 주스란 보통 완숙한 과실을 짜서 즙을 내거나 과육 채로 갈아서 액상으로 만든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면 덜 익은 코코넛의 껍데기에 단순히 구멍을 내서 속에 들어 있는 액체를 따라내기만 한 것을 주스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제2009호의 관련 해설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009호 해설서

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generally) 신선하고 알차고 완숙한 과실과 채소를 압착하여 얻는다.

그러나 완숙한 과실을 압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generally)” 주스를 얻는 방법이기 는 하지만 제2009호가 절대적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얻은 주스에 한정한다는 해석은 불가능하기에 HS 위원회는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코코넛 워터를 제2009호에 분류하였고 이 분류를 명확히 하는 한편, HS 품목분류표의 불문판과 영문판을 일치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제2009호의 일부 텍스트가 개정되었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20.09 -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	20.09 - 과실 및 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9.2 -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포멜로(pomelo)를 포함한다] 주스	2009.2 -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주스, 포멜로(pomelo) 주스	
- 그 밖의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 2009.81 --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 · 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 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주스 2009.89 -- 기타	- 그 밖의 한 가지 과실 · 견과류나 채소로 된 주스 2009.81 --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 · 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주스, 링곤베리[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주스 2009.89 -- 기타	

5. 새로운 형태의 담배 제품들

WCO HS 위원회는 2011년 화학적으로 조제한 담배대용품인 전자담배용 용액과 이 용액을 실제로 기화시켜서 흡입할 수 있는 담배 모양의 전기기기(전자담배)의 품목분류를 검토하여, 전자담배용 용액은 제3824호에, 그리고 전자담배 기기는 제8543호에 각각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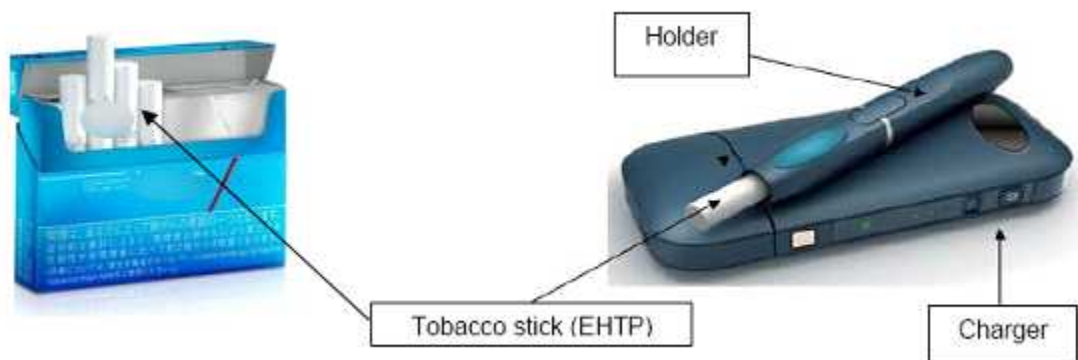


<전자담배의 구성요소 및 구조(제854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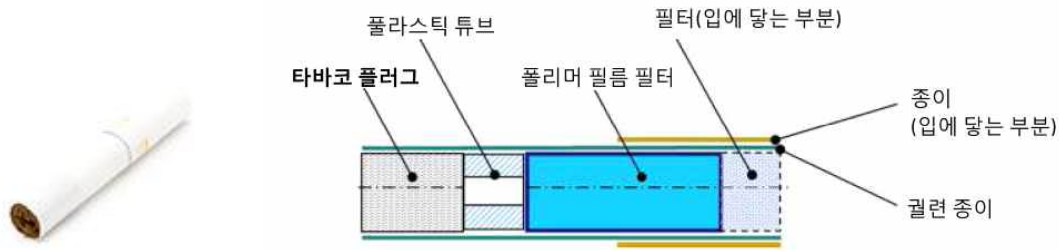
<전자담배 용액과 카트리지(제3824호)>

그리고 제59차 HS 위원회('17.3월)에서 EHTP(Electrically Heated Tobacco Product)라는 신종 쥘련(卷煙)형 담배제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 물품은 전통적인 쥘련담배와 유사하지만 길이는 더 짧은 원통형상(길이 45mm, 지름 7.3mm)의 담배 제품으로 담배 재료를 재구성하여 만든 시트상(cast-leaf) 재료로 100% 제조된다. 이 쥘련 모양의 담배 제품은 보통의 담배처럼 불을 붙여 피우는 방식이 아니라 전용의 전기기기에 장착해서 가열하는 방식으로 피우는 것이다.



<쥘련형 전자담배(EHTP)와 가열 장치>

이 담배는 이전까지 전자담배라고 불렀던 “용액이 함유된 카트리지”형 제품과는 달리 내부에 100% 담뱃잎 재료(재구성한 담배)로 제조한 코어(core) 부분(tobacco plug라고 표현)이 있고, 코어에서 나온 연기를 용이하게 흡수할 수 있도록 튜브나 필터 구조가 함께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담배는 전통적인 담배처럼 불을 붙여 태워서 연기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전용의 기기 안에 담배를 넣고 전기적으로 가열하여 니코틴이 포함된 증기를 발생시킨다. (담배의 필터 부분을 입에 물고 흡입하는 방식으로 피우는 것은 동일하다.)



<EHTP의 외형 및 내부구조>

WCO에서는 가열용의 전기기기는 제외하고 담배(EHTP) 자체만을 놓고 논의하였다. 전통적인 전자담배용의 니코틴 용액과는 다르게 이 물품은 담뱃잎을 재료로 했다는 점에서 제24류에 포함되는 것은 명백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우선 관세율표 제24류의 4단위 호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401호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제2402호 시가(cigar)·셔루트(cheroot)·시가릴로(cigarillo)·겔련(담배나 담배 대용물인 것으로 한정한다)

제2403호 그 밖의 제조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담배 추출물(extract)과 에센스(essence)

일부 회원국은 이 물품이 제2402호에 분류되는 겔련 담배와 형태상 유사하며, 주재료 또한 겔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뱃잎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므로 제2402호에 분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이 물품이 전통적인 겔련처럼 태워서(burning) 연기(smoke)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흡연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2402호에 분류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안건은 제60차 HS 위원회('17.10월)에서 계속 논의되어 투표를 거쳐 제2403호에 분류토록 결정되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아랍권 국가들은 이러한 물품도 겔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제2402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검토를 요청하였고, 이 물품은 HS 위원회에서 네 번의 검토를 거쳐 결국 제2403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 물품의 품목분류 논의와 별개로 HS 위원회는 이들 새로운 형태의 담배와 니코틴 제품을 제24류에 분류할 수 있도록 제2404호를 신설하는 품목분류표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이 호에는 EHTP와 전자담배용 용액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금연을 보조하기 위한 조제품(정제, 씹는 껌, 피부투여 방식의 패치 등)까지 분류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담배 혹은 담배 대용품을 흡입하기 위한 전기기기(전자담배)를 제8543호에 포함시키기도

록 소호를 신설하였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고안된 상품(니코틴을 함유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다), 기타 니코틴을 함유한 상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고안된 것	
제24류 주2, 주3 신설 <신설>	2. 제2404호와 이 류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제2404호에 분류한다. 3. 제2404호의 목적상 "연소없이 흡입"이라 함은 가열장치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하여 연소 없이 흡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설>	24.04 - 담배 · 재구성한 담배 · 니코틴을 함유한 제품 또는 담배 · 니코틴 대용품을 함유한 제품으로 연소하지 않고 흡입하도록 고안된 것, 그 밖의 니코틴을 함유한 제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하도록 고안된 것 - 연소하지 않고 흡입하도록 고안된 제품 2404.11 -- 담배나 담배대용품을 함유한 것 2404.12 -- 기타, 니코틴을 함유한 것 2404.19 -- 기타 - 기타 2404.91 -- 씹거나 먹는 방식의 것 2404.92 -- 피부투여 방식의 것 2404.99 -- 기타	호 +1 소호 +6
제30류 주1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생략) 나. 흡연자의 금연을 보조하기 위한 조제품[예: 정제(tablet) · 추잉껌 · 패치(피부투여 방식)](제2106호나 제3824호) 다~아. (생략)	나. 니코틴을 함유한 것으로 흡연자의 금연을 보조하기 위한 제품[예: 정제(tablet) · 추잉껌 · 패치(피부투여 방식)](제2404호) 다~아. (생략)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신설>	자. 제3822호의 진단용 시약	
제38류 주1 다목 신설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나. (생략) <신설> 다~마. (생략)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나. (생략) 다. 제2404호의 물품 라~바. (생략)	
<신설>	8543.40 - 전자담배 및 이와 유사한 개인 용 전기 기화장치	소호 +1

6. 유해물질 관련 개정(국제협약 관리물질의 특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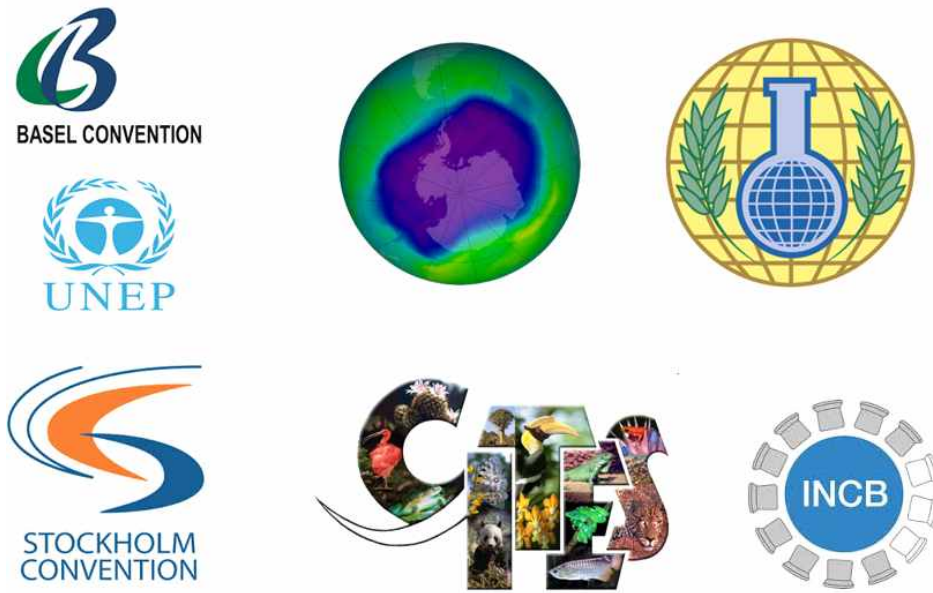
1) 국제기구와 HS 협약

HS 협약 전문(Preamble)에는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다양한 관심사를 충족하는데 적합한 다목적 품목분류표로서의 HS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한 관심사중 하나는 국제사회의 안전과 환경 보호 등이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전과 사회안전 등 범지구적인 가치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양한 국제기구가 존재한다. 이들 국제기구의 공통된 관심사 중 하나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물품 또는 이러한 취지를 위반하는 물품의 국제간 거래와 이동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CWC(Chemical Weapon Convention, 화학무기금지협약)는 화학무기의 원료가 되는 물질이 전쟁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보유, 거래 및 사용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금지는 물론 궁극적으로 폐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협약이며, 같은 맥락에서 산업폐기물과 유기오염물질의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약(바젤협약, 스톡홀름 협약, 로테르담 협약)도 있다.

그 밖에도 전 세계 환경보호, 특정의 동식물 보호, 마약류 거래 통제, 세계 식량자원 확보 및 관리 등 다양한 범지구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각종의 국제기구, UN의 산하기구 또는 환경자원 관리기구 등 특정 상품의 국제거래 통제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국제기구가 존재한다.



<HS 개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국제기구>

이들 국제기구는 공통적으로 자신들이 관리하고자 하는 상품의 국제간 거래통계나 이동경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러한 물품이 HS의 특정 호나 소호 단위에서 명확히 계기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WCO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HS의 호나 소호 신설을 위한 국제거래량 기준(연간 1억불 또는 5천만불)과 관계 없이 이들 국제기구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2) 산업쓰레기와 관련한 개정(바젤협약 사무국의 요청)

제51차 HS 위원회에서 바젤협약⁷⁾ 사무국은 유해성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정확히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이들 유해성 폐기물을 HS 품목분류표에 특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젤협약측에서 정의한 유해성 폐기물의 몇 가지 그룹은 다음과 같다.

- 안티몬, 베릴륨, 카드뮴 납, 수은 등을 함유한 금속 및 금속 합금의 웨이스트
- 안티몬, 베릴륨, 카드뮴 납, 수은 및 그 화합물을 함유한 오염물질
- 제련 과정의 부산물 및 잔류물
- 폐 배터리
- 전기 정련이나 도금 공정에서의 슬러지
- 전기전자 조립품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7) 유해성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 and Their Disposal)

- 광물성 오일의 웨이스트
- 가죽 가공 공정의 웨이스트나 폐가죽 등을 함유한 웨이스트
- 의류나 직물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섬유산업의 부산물
- PCB(polychlorinated biphenyl) 등을 함유한 웨이스트와 스크랩
- 플라스틱 공정, 화학공정, 의약품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독성 폐기물이나 부산물
- 수명이 다한 기계, 전기기기, 수송기기, 측정기기, 의료기, 악기, 무기, 가구 등
- 폐 타이어, 플라스틱 및 고무 폐기물



<각종 폐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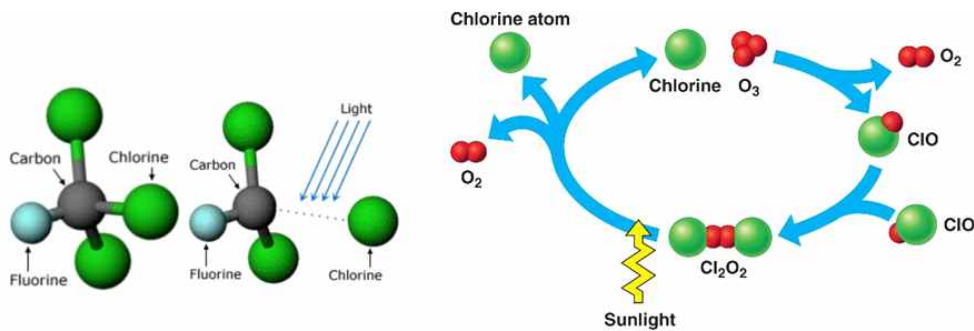
이들 유해성 폐기물은 사실상 HS 품목분류표의 거의 모든 영역과 관련이 있다. 바젤 협약측에서 요청한 모든 내용을 HS에 반영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HS 검토소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HS의 각 부나 류별로 폐기물 또는 수명이 다한 물품을 포함하는 호 신설하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제77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 모든 종류의 폐기물을 HS에 반영하는 것은 방대하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실용적인 접근으로 수명이 다한 기계, 전기기기, 전기전자 조립품의 폐기물과 가장 밀접한 제16부에서부터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후 장기적으로 다른 부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제8549호를 신설하여 수명이 다한 배터리(HS 2017 버전에서는 제8548호에 분류)를 포함한 전기·전자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분류토록 하였다.

3) 온실가스와 관련한 개정(몬트리올 의정서 사무국의 요청)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 Chloro Fluorocarbon)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협약이다. 따라서 온실가스와 몬트리올 의정서는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몬트리올 의정서 사무국은 2022년 HS 개정시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가스를 특게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을 줄이려는 전 세계의 끝나지 않는 노력에 기인한다.

염화불화탄소는 프레온 가스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냉장고나 에어컨의 냉매로 많이 쓰였던 물질이다. 이 염화불화탄소가 오존층을 파괴하는 방식은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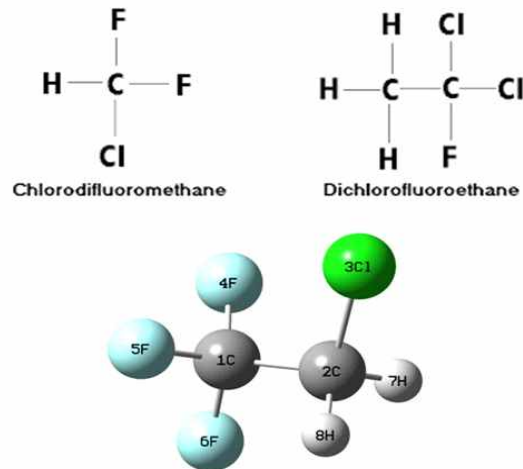


<CFC로 인한 오존층의 파괴>

CFC 분자가 햇빛을 쏘이게 되면 분자 중에서 염소원자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고 이 염소원자가 오존층을 돌면서 오존(O_3) 분자와 반응하여 산화염소(CIO)를 생성하면서 오존(O_3)이 분해되어 산소분자(O_2)로 환원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오존층이 파괴된다.

몬트리올 협약측은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의 국제간 거래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HS에 CFC의 특계를 요청하였고, CFC는 1996년 HS 개정당시 2903호 내의 6단위 소호 레벨에서 특게되었다.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CFC의 사용이 제한되자 업계에서는 기존의 프레온 가스를 대체하기 위한 물질을 개발하였고, CFC의 대체재로 등장한 것이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Hydro-Chloro Fluorocarbon)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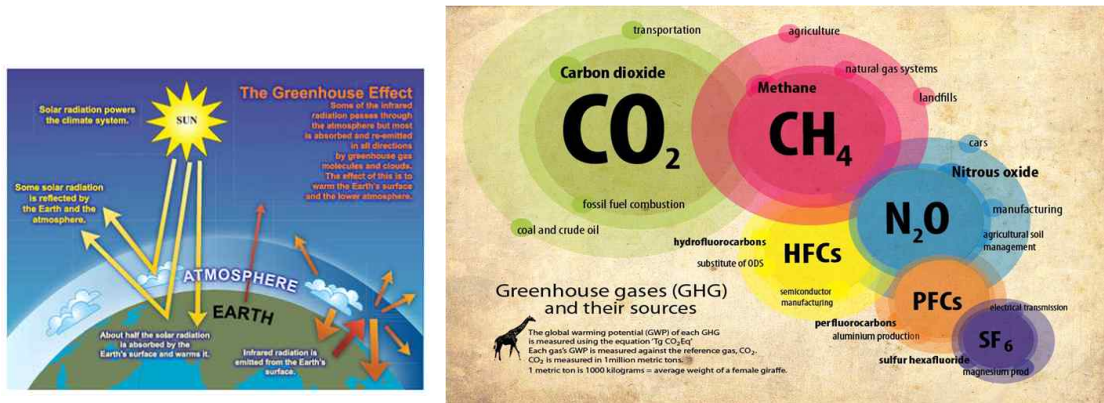
<CFC의 구원투수 HCFC, 소화설비의 분사제로도 사용된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효과로 업계에서 CFC를 냉매로 사용하는 일은 줄어들거나 없어졌다. 그러나 HCFC는 CFC에 비하면 오존층 파괴효과가 한결 완화된 것이긴 하지만 그 분자구조를 보면 염소 원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CFC와 마찬가지로 태양빛을 받으면 염소원자의 연결고리가 파괴되게 되고 자유로워진 염소 원자로 인하여 여전히 오존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몬트리올 의정서측은 전 세계적인 CFC 거래는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보고 이번에는 제2903호의 6단위 소호 레벨에서 CFC의 특계를 삭제하는 한편, HCFC의 특계를 요청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2012년 HS에서 이를 반영한 제2903호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HS 2007 – CFCs		HS 2012 – HCFCs	
H.S. Code	Halogenated derivatives of acyclic hydrocarbons containing two or more different halogens		Halogenated derivatives of acyclic hydrocarbons containing two or more different halogens
2903.41	Trichlorofluoromethane	2903.71	Chlorodifluoromethane
2903.42	Dichlorodifluoromethane	2903.72	Dichlorotrifluoroethanes
		2903.73	Dichlorofluoroethanes
2903.43	Trichlorotrifluoroethanes	2903.74	Chlorodifluoroethanes
2903.44	Dichlorotetrafluoroethanes and chloropentafluoroethane	2903.75	Dichloropentafluoropropanes
2903.45	Other derivatives perhalogenated only with fluorine and chlorine	2903.76	Bromochlorodifluoromethane, bromotrifluoromethane and dibromotetrafluoroethanes
2903.46	Bromochlorodifluoromethane, bromotrifluoromethane and dibromotetrafluoroethanes	2903.77	Other perhalogenated only with fluorine and chlorine
2903.47	Other perhalogenated derivatives	2903.78	Other perhalogenated derivatives
2903.49	Other	2903.79	Other

<HCFC를 제2903호의 소호에 특계하기 위한 2012년 HS 개정>

CFC에 이어 HCFC의 사용마저 제한되자 업계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냉매물질을 개발하게 된다. 그 결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수소불화탄소(HFC, Hydro Fluorocarbon)이다. HFC는 염소화합물이 아니며 태양빛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오존층 파괴 부작용은 확실히 제거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어서 HFC가 냉매 사용되는 일이 급증하면서 온실가스를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로 대두되게 되었다.



<온실효과 다이어그램(왼쪽)과 대표적인 온실가스들>

실제 HFC는 국제기후협약을 통해 규제되는 6종의 온실가스 중 하나로, 이산화탄소(CO₂)에 비해 양은 적지만 CO₂보다 100~10,000 배 이상의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16.10월 르완다에서 개최된 몬트리올 의정서 제28차 당사국 회의'에서는 HFC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몬트리올 협약측의 요청에 따라 WCO에서는 2022년 HS 제2903호에 18가지의 HFC를 특제하는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제2903.41소호부터 제2903.49소호) HFC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업계는 기존의 프레온가스는 물론 HFC를 대체할 새로운 차세대 냉매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HFC 이후에 등장하는 새로운 냉매가 또 어떤 부작용을 수반할 것인지는 예상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기술의 변화 또는 발전이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거나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경우 HS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또 개정되리라는 것이다.

4) 그 밖의 국제기구

바젤협약이나 몬트리올 의정서 이외에도 2022년 HS에는 화학무기의 원료나 중간물질로 사용되는 유기화합물(화학무기협약), 특정의 유해화학물질(로테르담 협약),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나 중간재료(UN 마약관리국)에 대한 국제 거래를 감시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주로 유기화합물 분야의 품목분류표 개정 수요가 있

었다.

2022년 HS에서 이 분야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제26류 주1 바목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스크랩(scrap), 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제7112호)	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스크랩(scrap), 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제7112호 또는 제8549호)	바젤협약 관련 개정
제6부 주4 신설 <신설>	4. 그 명칭이나 기능에 따라 제6부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호의 용어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제3827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3827호에 분류하지 않고 그 물품의 명칭이나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몬트리올 의정서 관련 개정
제29류 주4 4. (중략) 제2911호, 제2912호, 제2914호, 제2918호, 제2922호에서 "산소관능"이란 제2905호부터 제2920호까지에서 열거한 관능(특성 유기산소를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29류 주4 4. (중략) 제2911호, 제2912호, 제2914호, 제2918호, 제2922호에서 "산소관능"(이들 해당호의 특성 유기산소를 함유하는 그룹)이란 제2905호부터 제2920호까지에서 열거한 산소관능을 말한다.	
- 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브롬화·요드화유도체 2903.31 -- 이브롬화에틸렌(ISO)(1,2-디브로모에탄) 2903.39 -- 기타	-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 유도체 2903.41 -- 트리플루오르메탄(HFC-23) 2903.42 -- 디플루오르메탄(HFC-32) 2903.43 -- 플루오르메탄(HFC-41), 1,2-디플루오르에탄(HFC-152)과 1,1-디플루오르에탄(HFC-152a) 2903.44 -- 펜타플루오르에탄(HFC-125), 1,1,1-트리플루오르에탄(HFC-143a)과 1,1,2-트리플루오르에탄(HFC-143) 2903.45 -- 1,1,1,2-테트라플루오르에탄(HFC-134a)과 1,1,2,2-테트라플	소호 +12, 몬트리올 의정서 관련 개정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루오르에탄(HFC-134) 2903.46 -- 1,1,1,2,3,3,3-헵타플루오르프로판(HFC-227ea), 1,1,1,2,2,3-헥사플루오르프로판(HFC-236cb), 1,1,1,2,3,3-헥사플루오르프로판(HFC-236ea)과 1,1,1,3,3,3-헥사플루오르프로판(HFC-236fa) 2903.47 -- 1,1,1,3,3-Pentafluoropropane (HFC-245fa) and 1,1,2,2,3-pentafluoropropane (HFC-245ca) 2903.48 -- 1,1,1,3,3-펜타플루오르부탄(HFC-365mfc)과 1,1,1,2,2,3,4,5,5-데카플루오르펜탄(HFC-43-10mee) 2903.49 -- 기타 -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 유도체 2903.51 -- 2,3,3,3-테트라플루오르프로펜(HFO-1234yf), 1,3,3,3-테트라플루오르프로펜(HFO-1234ze)과 (Z)-1,1,1,4,4,4-헥사플루오르-2-부텐(HFO-1336mzz) 2903.59 -- 기타 - 비환식탄화수소의 브롬화·요드화 유도체 2903.61 -- 브롬화메틸(브로모메탄) 2903.62 -- 에틸렌 디브로마이드(ISO) (1,2-디브로모메탄) 2903.69 -- 기타	
2903.71 --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2903.72 --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2903.73 --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 2903.74 --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2903.75 --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2903.76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	2903.71 --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HCFC-22) 2903.72 --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HCFC-123) 2903.73 --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HCFC-141, 141b) 2903.74 --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HCFC-142, 142b) 2903.75 --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HCFC-225, 225ca, 225cb) 2903.76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몬트리올 의정서 관련 개정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Halon-1211),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Halon-1301),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Halon-2402)	
<신설>	2930.10 - 2-(엔,엔-디에틸아미노)메탄티올	소호 +1, 화학무기협약 관련 개정
29.31 -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2931.10 - 테트라메칠납, 테트라에칠납 2931.20 - 트리부틸틴 화합물 - 그 밖의 유기인 유도체 2931.31 -- 디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2931.32 -- 디메틸 프로필포스포네이트 2931.33 -- 디에틸 에틸포스포네이트 2931.34 -- 3-(트리하이드록시시릴)프로필 메틸포스포산 나트륨 2931.35 -- 2,4,6-트리프로필-1,3,5,2,4,6-트 리옥사트리포스피네인 2,4,6-트 리옥사이드 2931.36 -- (5-에틸-2-메틸-옥시도-1,3,2-디 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2931.37 -- 비스[(5-에틸-2-메틸-2-옥시도 -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 틸] 메틸포스포네이트 2931.38 -- 메틸포스포 산과 (아미노이미노 메틸)우레아의 염(1 : 1) 2931.39 -- 기타 2931.90 - 기타	29.31 -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2931.10 - 테트라메칠납, 테트라에칠납 2931.20 - 트리부틸틴 화합물 - 비할로겐화 유기인 유도체 2931.41 -- 디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2931.42 -- 디메틸 프로필포스포네이트 2931.43 -- 디에틸 에틸포스포네이트 2931.44 -- 메틸포스포산 2931.45 -- 메틸포스포산과 (아미노이미노 메틸)우레아의 염(1 : 1) 2931.46 -- 2,4,6-트리프로필-1,3,5,2,4,6-트 리옥사트리포스피난-2,4,6-트리 옥사이드 2931.47 -- (5-에틸-2-메틸-2-옥시도-1,3,2- 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2931.48 -- 3,9-디메틸-2,4,8,10-테트라옥사 -3,9-디포스파스피로[5.5] 언데 칸 3,9-디옥사이드 2931.49 -- 기타 - 할로겐화 유기인 유도체 2931.51 -- 메틸포스포닉 디클로라이드 2931.52 -- 프로필포스포닉 디클로라이드 2931.53 -- 오-(3-클로로프로필) 오-[4-니트 로-3-(트리플루오로메틸)페닐] 메틸포스포노시오네이트 2931.54 -- 트리클로르폰(ISO) 2931.59 -- 기타 2931.90 - 기타	소호 +5, 화학무기협약 및 로테르담 협약 관련 개정
<신설>	2932.96 -- 카보푸란(ISO)	소호 +1, 로테르담 협약 관련 개정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2933.33 -- 알펜타닐(INN) · 아닐레리딘(INN) · 베지트라마이드(INN) · 브로마제팜(INN) · 디페녹신(INN) · 디펜옥실레이트(INN) · 디피파논(INN) · 펜타일(INN) · 케토베미돈(INN) · 메틸페니데이트(INN) · 펜타조신(INN) · 페치딘(INN) · 페치딘(INN) 제조중간체 에이 · 펜사이클리딘(INN)(PCP) · 페노페리딘(INN) · 피프라드롤(INN) · 피리트라미드(INN) · 프로피람(INN) · 트리메페리딘(INN)과 이들의 염	2933.33 -- 알펜타닐(INN) · 아닐레리딘(INN) · 베지트라마이드(INN) · 브로마제팜(INN) · 카펜타닐(INN) · 디페녹신(INN) · 디펜옥실레이트(INN) · 디피파논(INN) · 펜타닐(INN) · 케토베미돈(INN) · 메틸페니데이트(INN) · 펜타조신(INN) · 페치딘(INN) · 페치딘(INN) 제조중간체 에이 · 펜사이클리딘(INN)(PCP) · 페노페리딘(INN) · 피프라드롤(INN) · 피리트라미드(INN) · 프로피람(INN) · 레미펜타닐(INN) · 트리메페리딘(INN)과 이들의 염	UN 마약관리국 관련 개정
<신설>	2933.34 -- 그 밖의 펜타닐과 그 유도체 2933.35 -- 3-퀴누클리도놀 2933.36 -- 4-아닐리노-N-펜에틸피페리딘(ANPP) 2933.37 -- N-펜에틸-4-피페리돈(NPP)	소호 +4, 화학무기협약 및 UN 마약관리국 관련 개정
<신설>	2934.92 -- 그 밖의 펜타닐과 그 유도체	소호 +1, UN 마약관리국 관련 개정
- 에페드린과 이들의 염 2939.41 -- 에페드린과 그 염 2939.42 -- 슈도에페드린(INN)과 그 염 2939.43 -- 캐친(INN)과 그 염 2939.44 -- 놀에페드린과 그 염 2939.49 -- 기타	- 마황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39.41 -- 에페드린과 그 염 2939.42 -- 슈도에페드린(INN)과 그 염 2939.43 -- 캐친(INN)과 그 염 2939.44 -- 놀에페드린과 그 염 2939.45 -- 레보메탐페타민 · 메탐페타민(INN) · 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및 이들의 염 2939.49 -- 기타	소호 +1, UN 마약관리국 관련 개정
- 기타(식물성의 것에 한정한다) 2939.71 -- 코카인 · 엑고닌 · 레보메탐페타민 · 메탐페타민(INN) · 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및 이들의 염 · 에스테르 · 그 밖의 유도체 2939.79 -- 기타	- 기타(식물성의 것에 한정한다) 2939.72 -- 코카인 · 엑고닌 및 이들의 염 · 에스테르 · 그 밖의 유도체 2939.79 -- 기타	UN 마약관리국 관련 개정
제38류 주4 가목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4. 이 표에서 “생활폐기물”은 가정·호텔·식당·병원·가게·사무실 등에서 수집된 쓰레기... (중략) ... 다만,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가. 플라스틱·고무·나무·종이·직물·유리나 금속의 폐기물과 폐전지 등과 같은 폐기물로부터 분리 수거된 개개의 재료나 제품으로 이 표의 적당한 호에 해당하는 것	4. 이 표에서 “생활폐기물”은 가정·호텔·식당·병원·가게·사무실 등에서 수집된 쓰레기... (중략) ... 다만,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가. 플라스틱·고무·나무·종이·직물·유리나 금속의 폐기물, 전기·전자 폐기물과 스크랩(폐전지를 포함한다) 등과 같은 폐기물로부터 분리 수거된 개개의 재료나 제품으로 이 표의 적당한 호에 해당하는 것	바젤협약 관련 개정
제38류 소호주1 1. 소호 제3808.52호와 제3808.59호는 다음을 하나 이상 함유하는 제3808호의 물품만을 포함한다. 알라클로르(ISO), 알디카브(ISO), 앨드린(ISO), 아진포스-메틸(ISO), 비나파크릴(ISO), 캄페클로(ISO)(톡사핀), 캡타폴(ISO), 클로단(ISO), 클로디메폼(ISO), 클로로벤질레이트(ISO), 디디티[DDT(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DNOC(ISO)]이나 그 염, 디노셉(ISO)과 그 염이나 에스테르, 엔도설판(ISO), 에틸렌디브로마이드(ISO)(1,2-디브로모에탄), 이염화에틸렌(ISO)(1,2-디클로로에탄),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헵타클로르(ISO), 헥사클로로벤젠(ISO),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 수은화합물, 메타미도포스(ISO), 모노크로토포스(ISO), 옥시란(산화에틸렌), 파라티온(ISO), 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온), 펜타- 및 옥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 펜타클로로페놀(ISO)과 그 염이나 에스테르, 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과불화옥탄 술폰일 플루오라이드, 포스파미돈(ISO),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와 그 염이나 에스테르, 트리부틸틴 화합물.	1. 소호 제3808.52호와 제3808.59호는 다음을 하나 이상 함유하는 제3808호의 물품만을 포함한다. 알라클로르(ISO), 알디카브(ISO), 앨드린(ISO), 아진포스-메틸(ISO), 비나파크릴(ISO), 캄페클로(ISO)(톡사핀), 캡타폴(ISO), 카보푸란(SIO), 클로단(ISO), 클로디메폼(ISO), 클로로벤질레이트(ISO), 디디티[DDT(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DNOC(ISO)]이나 그 염, 디노셉(ISO)과 그 염이나 에스테르, 엔도설판(ISO), 에틸렌디브로마이드(ISO)(1,2-디브로모에탄), 이염화에틸렌(ISO)(1,2-디클로로에탄),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헵타클로르(ISO), 헥사클로로벤젠(ISO),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 수은화합물, 메타미도포스(ISO), 모노크로토포스(ISO), 옥시란(산화에틸렌), 파라티온(ISO), 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온), 펜타클로로페놀(ISO)과 그 염이나 에스테르, 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과불화옥탄술폰일 플루오라이드, 포스파미돈(ISO),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와 그 염이나 에스테르, 트리부틸틴 화합물, 트리클로르폰(ISO).	로테르담협약 관련 개정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u>소호 제3808.59호에는 또한 베노밀(ISO), 카보퓨란(ISO), 타이람(ISO)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분제(粉劑) 제형(劑形)도 포함된다.</u>		
제38류 소호주3 3. 소호 제3824.81호부터 제3824.88호까지는 다음의 물질을 하나 이상 함유하는 혼합물과 조제품만을 포함한다. 옥시란(산화에틸렌),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앨드린(ISO), 캄페클로(ISO)(톡사핀),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디티[DDT(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엔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미렉스(ISO),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 펜타클로로벤젠(ISO), 헥사클로로벤젠(ISO), 과불화옥탄술포산,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포아미드, 과불화옥탄술포닐 플루오라이드 또는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또는 옥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	3. 소호 제3824.81호부터 제3824.89호까지는 다음의 물질을 하나 이상 함유하는 혼합물과 조제품만을 포함한다. 옥시란(산화에틸렌),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앨드린(ISO), 캄페클로(ISO)(톡사핀),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디티[DDT(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엔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미렉스(ISO),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 펜타클로로벤젠(ISO), 헥사클로로벤젠(ISO), 과불화옥탄술포산,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포아미드, 과불화옥탄술포닐 플루오라이드, 테트라·펜타·헥사·헵타·옥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 단사슬 염소화 파라핀. 단사슬 염소화파라핀이란 염소화 정도가 48% 이상이며 다음의 분자구조를 가진 화합물의 혼합물을 말한다. $C_xH_{(2x-y+2)}Cl_y$, ($x=10\sim13$, $y=1.13$)	로테르담협약 관련 개정
- 메탄, 에탄, 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가지는 혼합물 3824.71 --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는 것[수소염화불화탄소(HCFCs)·과불화탄소(PFCs)·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824.72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을 함유하는 것	<삭제>	소호 -9, 몬트리올의정서 관련 개정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3824.73 --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을 함유하는 것 3824.74 --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 인지는 상관없으며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24.75 -- 사염화탄소를함유하는 것 3824.76 -- 1,1,1-삼염화에탄(메틸클로로포름)을함유하는 것 3824.77 --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3824.78 --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는 것[염화불화탄소(C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 3824.79 -- 기타		
<신설>	3824.89 -- 단사슬 염화파라핀을 함유한 것	소호 +1, 로테르담협약 관련 개정
<신설>	3824.92 -- 메틸포스폰산의 폴리글리콜 에스테르	소호 +1, 화학무기협약 관련 개정
<신설>	38.27 - 따로 분류되지 않은 메탄·에탄·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함유한 혼합물 - 염화불화탄소(CFC)를 함유한 것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과불과탄소(PFC) 또는 수소불화탄소(HFC)를 함유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다), 수소브롬화불화탄소(HBFC)를 함유한 것, 카본 테트라클로라이드를 함유한 것, 1,1,1-트리클로로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한 것 3827.11 -- 염화불화탄소(CFC)를 함유한 것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과불과탄소(PFC) 또는 불화탄화수소	호 +1 소호 +19, 몬트리올 의정서 관련 개정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HFC)를 함유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다)	
	3827.12 -- 수소브롬화불화탄소(HBFC)를 함유한 것	
	3827.13 -- 카본 테트라클로라이드를 함유한 것	
	3827.14 -- 1,1,1-트리클로로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한 것	
	3827.20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Halon-1211) ·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Halon-1301) ·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Halon-2402)을 함유하는 것	
	-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27.31 — 소호 제2903.41호부터 제2903.48호의 물질을 함유한 것	
	3827.32 -- 기타, 소호 제2903.71호부터 제2903.75호의 물질의 함유한 것	
	3827.39 -- 기타	
	3827.40 - 메틸브로마이드(브로모메탄)나 브로로클로로메탄을 함유한 것	
	- 트리플루오르메탄(HFC-23)이나 과불화탄소(PFC)을 함유한 것(염화불화탄소(CFC)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27.51 -- 트리플루오르메탄(HFC-23)을 함유한 것	
	3827.59 -- 기타	
	- 그 밖의 수소불화탄소(HFC)를 함유한 것(염화불화탄소(CFC)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27.61 -- 1,1,1-트리플루오르에탄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HFC-143a)을 15% 이상 함유한 것 3827.62 -- 기타, 이 호의 앞선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펜타플루오르에탄(HFC- 125)을 55% 이상 함유한 것(비환식탄화수소(HFO)의 불포화 플루오르와 유도체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27.63 -- 기타, 이 호의 앞선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펜타플루오르에탄(HFC- 125)을 40% 이상 함유한 것 3827.64 -- 기타, 이 호의 앞선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1,1,1,2-테트라플루오르에탄(HFC-134a)을 30% 이상 함유한 것(비환식탄화수소(HFO)의 불포화 플루오르와 유도체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27.65 -- 기타, 이 호의 앞선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디플루오르메탄(HFC-32)을 20% 이상, 펜타플루오르에탄(HFC-125)을 20% 이상 함유한 것 3827.68 -- 기타, 이 호의 앞선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소호 제 2903.41호부터 제2903.48호의 물질을 함유한 것 3827.69 -- 기타 3827.90 - 기타	
3907.20 - 그 밖의 폴리에테르	- 그 밖의 폴리에테르 3907.21 -- 비스(폴리옥시에틸렌) 메틸포스포네이트 3907.29 -- 기타	소호 +1, 화학무기협약 관련 개정
<신설>	3911.20 - 폴리(1,3-페닐렌 메틸포스포네이트)	소호 +1, 화학무기협약 관련 개정
70.01 - 깨진 유리,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	70.01 - 깨진 유리,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	바젤협약 관련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트(waste) · 스크랩(scrap), 유리 괴(塊)	트(waste) · 스크랩(scrap)[제8549호의 음극선관과 그 밖의 활성화된 유리를 제외한다], 유리 괴(塊)	개정
71.12 -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71.12 -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854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바젤협약 관련 개정
제15부 주8 가목 8.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이란 금속의 제조나 금속에 대한 기계작업에 따라 발생한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파손 · 절단 · 마손(磨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금속물품을 말한다.	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1) 모든 금속 웨이스트와 스크랩 2) 파손 · 절단 · 마손(磨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금속물품	바젤협약 관련 개정
제16부 주6 신설 <신설>	6. 가. 이 표 전체에서 “전기 · 전자 웨이스트와 스크랩”이란 전기 · 전자 조립품, 인쇄회로 보드, 전기 또는 전자 제품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파손 · 절단 · 그 밖의 공정으로 원래의 의도대로 사용될 수 없게 되었거나 원래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 · 정비 · 보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적합한 것 2) 개별 물품을 운송 · 적재 · 하역 과정에서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방법으로 포장되거나 선적된 것 나. “전기 · 전자 웨이스트와 스크랩”과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이 혼재된 것은 제8549호에 분류한다.	바젤협약 관련 개정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다. 이 부에는 제38류 주 제4호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85류 주10호 삭제 10. 제8548호에서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란 파손·절단·소진이나 그 밖의 이유 등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재충전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삭제>	바젤협약 관련 개정
제85류 소호주 5 신설 <신설>	5. 소호 제8549.11호부터 제8549.19호까지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란 파손·절단·소진이나 그 밖의 이유 등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재충전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바젤협약 관련 개정
85.48 -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548.10 -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8548.90 - 기타	85.48 -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삭제> <삭제>	소호 -1 바젤협약 관련 개정
<신설>	85.49 - 전기·전자 웨이스트와 스크랩 -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8549.11 -- 연산(鉛酸)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수명이 끝난 연산축전지 8549.12 -- 기타, 납·카드뮴·수은을 함유한 것 8549.13 -- 화학적 형태에 따라 분류된 것으로 납·카드뮴·수은을 함유하지 않은 것 8549.14 --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납·카드뮴·수은을 함유하지 않은 것 8549.19 -- 기타 - 주로 귀금속의 회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	호 +1 소호 +11 바젤협약 관련 개정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8549.21 -- 일차전지 · 축전지 · 수은 스위치 · 음극선관이나 그 밖의 활성 유리에서 나온 유리를 함유하는 것 또는 카드뮴 · 수은 · 납 · 폴 리염화비페닐(PCB)을 함유한 전 기 · 전자부품	
	8549.29 -- 기타 - 기타 전기 · 전자 조립품과 인쇄 회로기판	
	8549.31 -- 일차전지 · 축전지 · 수은 스위치 · 음극선관이나 그 밖의 활성 유리에서 나온 유리를 함유하는 것 또는 카드뮴 · 수은 · 납 · 폴 리염화비페닐(PCB)을 함유한 전 기 · 전자부품	
	8549.39 -- 기타 - 기타	
	8549.91 -- 일차전지 · 축전지 · 수은 스위치 · 음극선관이나 그 밖의 활성 유리에서 나온 유리를 함유하는 것 또는 카드뮴 · 수은 · 납 · 폴 리염화비페닐(PCB)을 함유한 전 기 · 전자부품	
	8549.99 -- 기타	

7. 군민 양용(dual use) 품목과 관련한 개정

정치·외교적으로 “dual use”란 민간분야와 군사적인 목적 양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⁸⁾을 말한다. 예를 들면, 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은 사람을 우주(궁극적으로는 달)에 보내기 위하여 로켓 기술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부었다. 그러나 ‘평화적인’ 의도에서 시작된 로켓 기술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개발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오늘날 로켓 기술은 더 이상 평화적인 민간분야의 기술로 이해되지 않는다.

‘12년 개최된 전략무역관리감독(Strategic Trade Control Enforcement) 컨퍼런스에서

8) In politics and diplomacy, “dual use” refers technology that can be used for both peaceful and military aims. More generally speaking, dual use can also refer to any technology which can satisfy more than one goal at any given time. Thus expensive technologies which would otherwise only benefit civilian commercial interest can also be used to serve military purposes when not otherwise engaged such as “Global Positioning system”. (Wikipedia)

90여개 WCO 회원국이 참가하여 이 분야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였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주로 무역과 관세 목적에 초점을 맞춘 HS 품목분류표에 보다 전략적인 용도와 역할을 부여하는 아이디어가 논의되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전략물자의 효율적 관리와 불법 전용을 방지를 위해 국제교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이들을 HS에 폭넓게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WCO의 통관무역국과 조사감시국 공동으로 이와 관련한 전략물자의 범위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제49차 HS 소위원회(15.11월)에서 이 문제가 처음으로 논의되었다. HS 검토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전략물자(혹은 군민양용 물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특정의 방사성 재료 : HS 제2844호와 제2845호에 트리튬, 액티늄, 캘리포늄, 보론 등의 방사성 물질과 그 합금, 혼합물, 화합물 등을 특개

미생물 및 독소 : 박테리아, 바이러스, 균류 및 독소 등을 제3002호에서 세분류⁹⁾

아라미드의 토우(tow) : 아라미드는 내열성이 있는 견고한 합성섬유로 우주복이나 군복 등의 재료로 활용. (제5501.10호 등)

탄소섬유 : 탄소섬유는 보통 스펀 형태로 제시되며 우주항공산업, 풍력, 자동차 분야에서 복합재료를 강화하는데 주로 사용(제6815.9호)¹⁰⁾

탄탈륨 도가니 : 제8103.90호

고순도 비스무트 : 순도 99.99% 이상의 비스무트는 폴로늄(Po) 210을 제조하는데 사용(제8106호)

핵 등급 지르코늄 : 지르코늄 중 하프늄 함량이 1/500 미만인 물품이 핵 등급 지르코늄으로 인정됨 (제8109호)

하프늄과 레늄 : 제8112호

생물학적 안전 캐비닛(Class III) : 생물학적 안전 캐비닛(BSC; Biological Safety Cabinet)은 실험실 등에서 오염원·위험물을 처리 또는 작업할 때 작업자를 오염원로부터 보호하는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장비로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의하여 Class III 타입은 완전한 기밀(gas-tight)이 가능하고 캐비닛 전면에서 사용자가 손을 넣어서 작업물에 접근할 수 있는 고무장

9) 제3002호는 군민양용 물품 이외에도 진단용 시약, 제3002.1소호체계 재구성, 세포배양체의 특개 등 다양한 개정수요와 연관되어 있음

10) 군민양용 물품(탄소섬유)과 관련한 HS 개정 측면에서 검토소위원회에서는 제6815.9 소호를 세분화하는 개정안부터 검토되었으나 이후 EU측의 별도 개정안에 따라 제6815.1 소호가 세분되어 2022년 HS에서는 탄소섬유와 그 제품이 제6815.1 소호그룹에 포함되었음

갑 형태의 접근 장치가 있음 (제8414호)



<BSC class III 타입>

냉동 건조기 또는 분무 건조기 : 냉동 건조기는 생물학 무기, 독소 등의 보관과 안정화를 위하여 사용되며, 분무 건조기는 생물학 무기, 독소 등의 안정화 뿐 아니라 흡입이 가능할 정도의 미세한 분말 제조에 사용 (제8419호)

등방압 성형 프레스(isostatic press) : 등방압 프레스는 다양한 분말원료를 소결(sintering)하기 위한 장비로 냉간 소결 프레스와 열간 소결 프레스가 있음. 냉간 프레스는 그 가공대상 재료에 따라 제84류의 해당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열간 프레스는 제8514호의 노와 오븐의 형태임 (제8479호, 제8514호 등)

폭발물 및 방사선 재료 취급을 위한 산업용 로봇 : 제8428호

전자빔 용해로, 플라즈마 원자화·용해로, 진공 아크 용해로 : 제8514호

방사선 강화 카메라, 야간 투시 카메라, 고속 카메라 : NSG(Nuclear Supplier Group)의 기준에 의하며 고속 카메라는 기록속도 0.5 mm/ μ s 이상, 시간 해상도 50 ns 이하, 초당 225,000 프레임 이상의 요건을 갖춘 카메라를 말함(제8525호)

무인기 : 제8802호¹¹⁾

질량 분석기(mass spectrometer) : 질량분석기(스펙트로그래프)는 우라늄 농축 공정을 모니터

11) HS 검토소위원회는 무인기를 제8802호의 6단위 소호 레벨에서 무인기를 특제하는 방안의 검토부터 시작하였으나, 이후 무인기와 관련한 HS 개정은 별도의 주제로 논의됨(제8806호 신설)

링할 수 있음 (제9027호)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2844.40 - 방사성원소 · 방사성동위원소와 소호 제2844.10호 · 제2844.20호 · 제2844.30호의 것은 제외한 이들의 화합물, 합금 · 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의 방사성원소 · 방사성동위원소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사성 잔재물	- 방사성원소 · 방사성동위원소와 소호 제2844.10호 · 제2844.20호 · 제2844.30호의 것은 제외한 이들의 화합물, 합금 · 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의 방사성원소 · 방사성동위원소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사성 잔재물 2844.41 -- 트리튬과 그 화합물, 합금 · 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트리튬과 그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844.42 -- 악티늄-225 · 악티늄-227 · 캘리포늄-253 · 큐리움-240 · 큐리움-241 · 큐리움-242 · 큐리움-243 · 큐리움-244 · 아인슈타늄-253 · 아인슈타늄-254 · 가돌리늄-148 · 폴로늄-208 · 폴로늄-209 · 폴로늄-210 · 라듐-223 · 우라늄-230 또는 우라늄-232와 이들의 화합물, 합금 · 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 원소나 그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844.43 -- 그 밖의 방사성원소 · 방사성동위원소와 이들의 화합물, 합금 · 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의 방사성원소 · 방사성동위원소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844.44 -- 방사성 잔재물	소호 +3
28.45 - 동위원소(제2844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동위원소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28.45 - 동위원소(제2844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동위원소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소호 +3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것인지에 상관없다) 2845.10 - 중수(重水)(산화 중수소) <신설> <신설> <신설> 2845.90 - 기타	것인지에 상관없다) 2845.10 - 중수(重水)(산화 중수소) 2845.20 - 보론-10에 농축된 보론과 그 화합물 2845.30 - 리튬-6에 농축된 리튬과 그 화합물 2845.40 - 헬륨-3 2845.90 - 기타	
5501.10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5501.11 -- 아라미드의 것 5501.19 -- 기타	소호 +1
6815.10 -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	- 탄소섬유, 비(非)전기용의 탄소섬유 제품, 비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 6815.11 -- 탄소섬유 6815.12 -- 탄소섬유의 직물 6815.13 -- 그 밖의 탄소섬유 제품 6815.19 -- 기타	소호 +3
81.03 - 탄탈륨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3.20 -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가루 8103.3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8103.90 - 기타	81.03 - 탄탈륨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3.20 -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가루 8103.3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기타 8103.91 -- 도가니 8103.99 -- 기타	소호 +1
81.06 - 비스무트(bismuth)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6 - 비스무트(bismuth)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6.10 - 비스무트 함유량이 전 중량의 99.99를 초과하는 것 8106.90 - 기타	소호 +1
81.09 - 지르코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9.20 - 지르코늄의 괴(塊), 가루 8109.3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8109.90 - 기타	81.09 - 지르코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지르코늄의 괴(塊), 가루 8109.21 -- 하프늄(hafnium) 함유량이 중량 비로 지르코늄의 500분의 1 미	소호 +3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만인 것 8109.29 -- 기타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8109.31 -- 하프늄(hafnium) 함량이 중량 비로 지르코늄의 500분의 1 미 만인 것 8109.39 -- 기타 - 기타 8109.91 -- 하프늄(hafnium) 함량이 중량 비로 지르코늄의 500분의 1 미 만인 것 8109.99 -- 기타	
81.12 - 베릴륨 · 크로뮴 · 게르마늄 · 바나듐 · 갈륨 · 하프늄 · 인듐 · 니오븀(컬럼뵐) · 레늄 · 탈륨과 이것으로 만든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12 - 베릴륨 · 크로뮴 · 하프늄 · 레늄 · 탈륨 · 카드뮴 · 게르마늄 · 바나듐 · 갈륨 · 인듐 · 니오븀(컬럼뵐)과 이것으로 만든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신설>	- 하프늄 8112.31 --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8112.39 -- 기타	소호 +2
<신설>	- 레늄 8112.41 --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8112.49 -- 기타	소호 +2
<신설>	- 카드뮴 8112.61 --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8112.69 -- 기타	소호 +2
- 건조기 8419.31 -- 농산물용 8419.32 -- 목재용 · 제지펄프용 · 종이용 · 판지용 8419.39 -- 기타	- 건조기 8419.33 -- 동결건조 장치 · 냉동건조 유닛 · 분무건조기 8419.34 -- 기타, 농산물용 8419.35 -- 기타, 목재용 · 제지펄프용 · 종이용 · 판지용 8419.39 -- 기타	소호 +1
<신설>	8428.70 - 산업용 로봇	소호 +1
<신설>	8479.83 -- 냉간 등방압성형기	소호 +1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제85류 소호주 1~3 신설 <신설>	1. 소호 제8525.81호는 고속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 레코더로서 다음의 특징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가진 것만을 분류한다. - 기록속도가 마이크로초당 0.5 mm를 초과하는 것 - 시간 분해도가 50나노초 이하인 것 - 초당 225,000 프레임을 초과하는 것 2. 소호 제8525.82호와 관련, 방사선 강화 또는 내방사선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 레코더는 고방사선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강되거나 설계제작된 것을 말한다. 이들 카메라는 작동상의 품질저하 없이 최소한 방사선량 50 × 10³ Gy(silicon) (5 × 10⁶ RAD (silicon))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었다. 3. 소호 제8525.83호는 야간투시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 레코더로서 사용가능한 빛을 전자로 변환하고 이를 증폭하여 가시적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는 광음극을 사용한다. 이 소호에는 열영상 카메라는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제8525.89소호) 4. (생략)	
1. (생략)		
8514.10 - 저항가열식 노(爐)와 오븐	- 저항가열식 노(爐)와 오븐 8514.11 -- 열간 등압 성형기 8514.19 -- 기타	소호 +1
8514.30 - 그 밖의 노(爐)와 오븐	- 그 밖의 노(爐)와 오븐 8514.31 -- 전자 빔 노 8514.32 -- 플라즈마 · 진공 아크식 노 8514.39 -- 기타	소호 +2
8525.80 - 텔레비전 카메라 · 디지털 카메라 · 비디오카메라레코더	- 텔레비전 카메라 · 디지털 카메라 · 비디오카메라레코더 8525.81 --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계기된 고속 카메라 8525.82 -- 기타,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소호 +3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계기된 방사선 강화 · 내방사선 카메라 8525.83 -- 기타, 이 류의 소호주 제3호에 계기된 야간투시 카메라 8525.89 -- 기타	
9027.80 - 그 밖의 기기	- 그 밖의 기기 9027.81 -- 질량분석기(Mass spectrometer) 9027.89 -- 기타	소호 +1

군민양용 물품과 관련한 개정취지에 따르면 제8428.70 소호의 산업용 로봇은 폭발물이나 방사선 위험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로봇을 말하며 이들은 보통 원거리에서 리모콘을 통하여 작동되고 작업자에게 위험물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바로 아래 그림과 같은 모양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EOD(Explosive Ordnance Disposal) Robot>

위 그림과 같은 모델의 폭발물 처리 로봇을 우리나라에서는 제8479호에 분류한 사례가 있다.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3과-1823011('15.7.8)호) 2022년 HS 개정을 전후하여 이 결정사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8. 진단용 시약 등 의료용품과 관련한 개정

1) 2017년 HS 개정과 말라리아 퇴치용 물품

2011년 5월, 미국은 전 세계 각국,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말라리아로 인해 해마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말라리아의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되는 물품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고 이러한 물품에 대한 일관된 품목분류를 확보할 수 있도록 HS 개정을 제안하였다. HS 위원회는 몇 차례의 논의를 거쳐 제30류, 제38류, 제63류의 소호주 또는 소호 레벨에서 적절한 개정을 승인하였고 이는 2017년 HS에 반영되었다.

<말라리아 퇴치용 물품과 관련한 개정(HS 2017)>

구 분	내 용
제30류 소호주2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되는 유효성분에 대하여 규정
제3002.11호	'말라리아 진단용 키트' 소호 신설 
제3003.60호, 제3004.60호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되는 유효성분 제제 의약품 소호 신설
제38류 소호주2	말라리아 예방용 살충제 성분을 규정
제3808.6호	제38류 소호주2의 물품 분류를 위한 5단위 소호 신설
제60류 소호주1 (제63류 소호주1)	말라리아 퇴치용 약품을 침투·도포한 직물(방직용 섬유제품)에 대하여 규정
제6304.20호	말라리아 퇴치용 약품을 침투·도포한 방직용 베드네트 소호 신설

이에 따라 HS 2017 버전에서 제3002.10소호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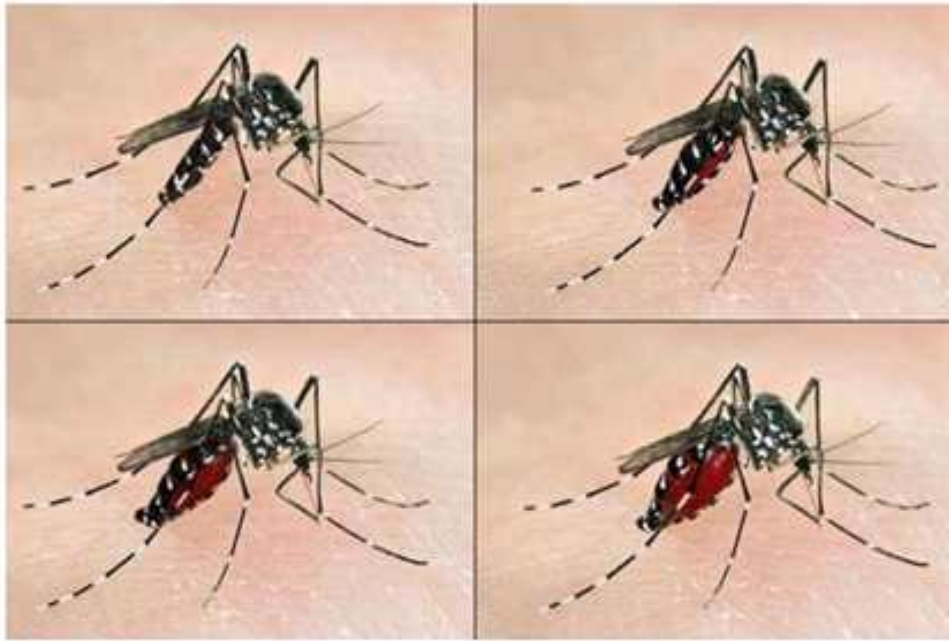
HS 2012	HS 2017	비고
3002.10 -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	-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소호 +5

HS 2012	HS 2017	비고
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3002.11 -- 말라리아 진단 테스트 키트 3002.12 --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 3002.13 -- 면역물품(혼합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 3002.14 -- 면역물품(혼합된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3002.15 --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정한다) 3002.19 -- 기타	

2) 의료용 체외진단키트와 관련한 2022년 HS 개정

제6차 HS Review-cycle에서 러시아는 5단위 소호인 제3002.1 소호의 6단위 세분류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제3002.1 소호에는 세 가지 그룹, 즉 ① 면역혈청, ② 그 밖의 혈액 분획물, ③ 면역물품이 포함되는데, 이들 중 ①, ②번 그룹은 제3002.12소호에, ③ 그룹은 제3002.13소호부터 제3002.15소호까지 각각 분류된다. (면역반응에 기초한 말라리아 진단 키트는 제3002.11소호가 없을 경우 분류체계상 제3002.15소호에 분류 가능하다.) 그렇다면 잔여 소호인 제3002.19소호에는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이 없게 된다. 러시아는 이 세분류 체계의 오류를 지적하고 제3002.19소호를 삭제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남미지역의 지카(Zika)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브라질은 지카 열병을 포함하여 모기로부터 전염되는 질병의 진단키트를 제3002호에 특개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말라리아, 뎅기열, 지카 열병 등은 모기로부터 전염된다.>

이 제안에 대하여 검토소위원회는 바이러스성 질병의 특성상 당장의 유행에 따라 특정 질병을 검사하기 위한 진단키트를 그때그때 특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좀 더 포괄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의료용 진단키트나 시약의 경우 그 검사원리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HS 위원회는 몇 가지 체외 진단키트의 품목분류를 검토하여 1) 면역반응에 기초한 진단키트는 제3002호에 분류되며, 2) DNA를 증폭시키는 실시간 폴리메라제 연쇄반응¹²⁾에 기초한 진단키트는 제3822호에 분류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검토소위원회는 의료용의 진단키트를 그 검사원리나 특성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는 것보다는 HS 개정을 통하여 하나의 호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으며, 그에 따라 제3822호에 이러한 진단키트를 통합하여 분류토록 하는 개정안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제3002호에 분류되던 말라리아 진단 키트와 제3006호에 분류되던 혈액형 분류용 시약은 2022년 HS에서는 모두 제3822호로 이동하게 되었다.

6차 Review-cycle에서는 그 밖에도 호주의 제안에 따라 제30류에서 플라시보와 맹검(blind test) 키트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플라시보와 이중 맹검은 임상실험에 자주 사용되는 수단이며 이들은 그 외형은 일반적인 의약품의 형상을 띠고 있지만 정상적인 활성 의약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테스트의 목적상 대상질병과는 무관하거나 반대되는 의약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12) RT-PCR, : 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은 의료용 활성성분을 함유한 소매용의 의약품으로서 제3004호에 분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토소위원회는 이러한 물품이 그 함유성분이나 최종 목적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는 불일치를 피하고 품목분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들 물품이 의약품성분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3006호에 포함시키도록 소호를 신설하였다.

이 분야의 2022년 HS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제30류 주1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아. (생략) <신설>	가~아. (생략) 자. 제3822호의 진단용 시약	
제30류 주4 마목 4. 다음 각 목의 물품은 제3006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마. 혈액형 분류용 시약	마. 공인된 임상실험에 사용되는 플라시보와 맹검(이중맹검) 키트(일정 투여량으로 포장된 것으로 활성의료성분을 포함했는지 여부에 관계없다)	
30.02 -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30.02 -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포배양체(변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3002.11 -- 말라리아 진단 테스트 키트 3002.12 --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 3002.13 -- 면역물품(혼합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삭제> 3002.12 --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 3002.13 -- 면역물품(혼합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소호 -2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 3002.14 -- 면역물품(혼합된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3002.15 --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정한다) 3002.19 -- 기타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 3002.14 -- 면역물품(혼합된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3002.15 --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정한다) <삭제>	
3002.20 - 백신(인체의약용으로 한정한다) 3002.30 - 백신(동물의약용으로 한정한다)	- 백신, 독소, 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3002.41 -- 백신(인체의약용으로 한정한다) 3002.42 -- 백신(동물의약용으로 한정한다) 3002.49 -- 기타	소호 +1
<신설>	- 세포배양체(변성된 것인지에 상관 없다) 3002.51 -- 세포요법용 제품 3002.59 -- 기타	소호 +2
3006.20 - 혈액형 분류용 시약	<삭제>	소호 -1
<신설>	3006.93 -- 공인된 임상실험에 사용되는 플라시보와 맹검(이중맹검) 키트 (일정 투여량으로 포장된 것)	소호 +1
38.22 -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	38.22 -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를, 키트상태로 포장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 -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를, 키트상태로 포장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822.11 -- 말라리아용 3822.12 -- 지카와 그 밖에 Aedes 속의 모기로부터 전염되는 질병용 3822.13 -- 혈액형 분류용 3822.19 -- 기타	소호 +4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3822.90 - 기타	

9. 내화성 세라믹과 관련한 개정

제6815호에는 제68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는 석제품이나 광물성 재료의 제품으로서 제69류의 도자제품이 아닌 물품이 분류된다. 제69류에는 점토나 규산질 재료와 같은 광물질을 사전에 성형하여 이를 건조 후 소성(firing)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도자제품이 분류된다. 제69류 해설서 총설은 소성(firing)에 대하여 섭씨 800 °C 이상으로 가열(heating)하는 것으로 설명하며 800 °C 미만의 열처리(수지의 경화나 수분 제거의 목적)만을 한 것은 69류에서 제외토록 해설하고 있다. 맥락상 이러한 물품은 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지 않는 한 제6815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EU는 제53차 HS 검토소위원회(‘17.11월)에서 내화성 세라믹 제품의 품목분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 1) 백운석 래밍 믹스(제2518호에 특제)는 그 물품의 용도나 성격상 25류의 광물의 가공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제3816호의 내화성 콘크리트와 유사한 혼합물로 보아야 하며, 2) 800 °C 미만으로 열처리된 광물성 재료의 제품은 제6815호(제6815.91 소호)에 포함된다는 것을 legal text에서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이 호의 물품을 구성하는 재료를 소호의 용어에 추가하고, 3) 기술발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내화성 도자제품을 제6903호의 용어에 추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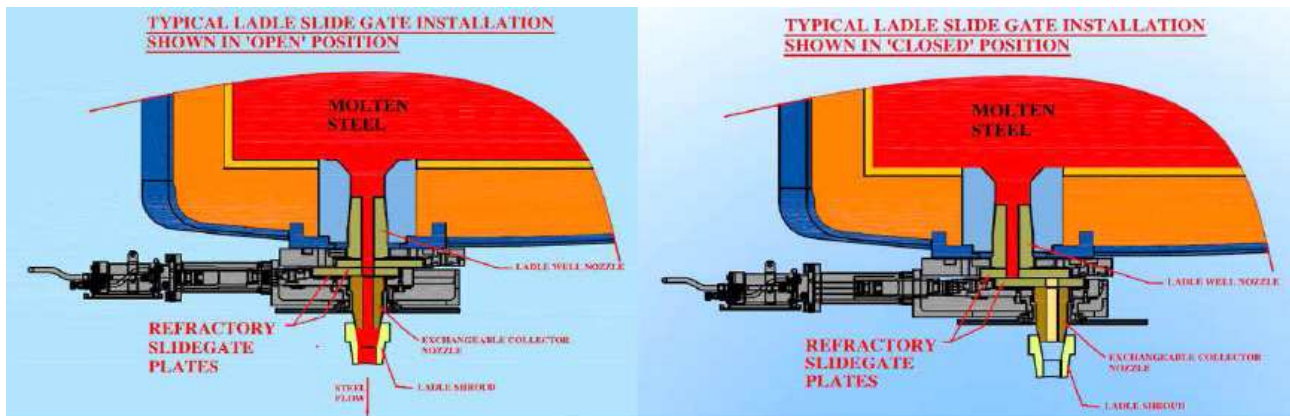
검토소위원회와 HS 위원회는 열처리 온도 기준(800 °C)을 소호의 용어에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EU 제안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2022년 HS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제25류 주2 마목 신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라. (생략) <신설> 마~자. (생략)	제25류 주2 마목 신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라. (생략) 마. 백운석 래밍믹스(ramming mix)(제 3816호) 바~차.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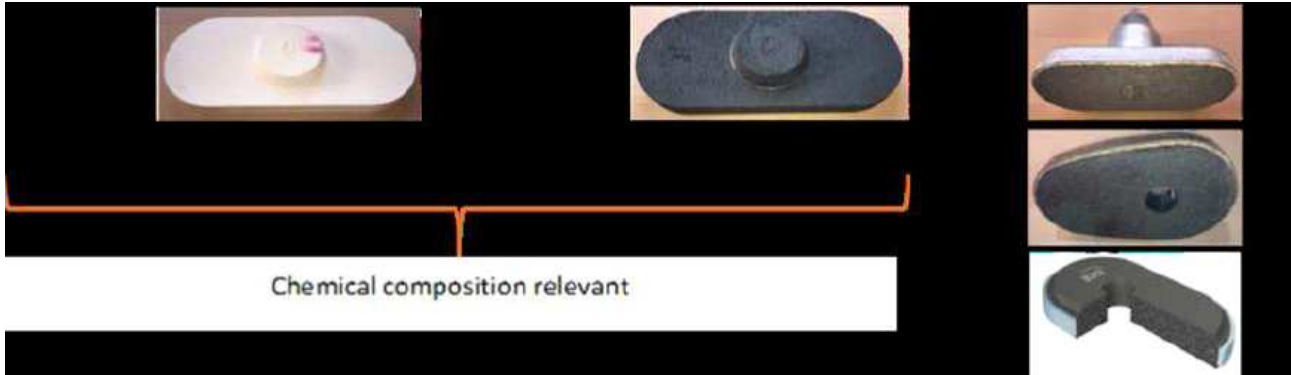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25.18 - 백운석(白雲石)[하소(煨燒)한 것인지 또는 소결(燒結)한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과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 2518.10 - 하소(煨燒)하지 않거나 소결(燒結)하지 않은 백운석(白雲石) 2518.20 - 하소(煨燒)하거나 소결(燒結)한 백운석(白雲石) 2518.30 -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	25.18 - 백운석(白雲石)[하소(煨燒)한 것인지 또는 소결(燒結)한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 2518.10 - 하소(煨燒)하지 않거나 소결(燒結)하지 않은 백운석(白雲石) 2518.20 - 하소(煨燒)하거나 소결(燒結)한 백운석(白雲石) <삭제>	소호 -1
38.16 - 내화시멘트 · 내화모르타르 · 내화콘크리트와 이와 유사한 혼합물(제3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8.16 - 내화시멘트 · 내화모르타르 · 내화콘크리트와 이와 유사한 혼합물(백운성 래밍 믹스를 포함하고 제3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815.91 -- 마그네사이트 · 백운석 · 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6815.91 -- 마그네사이트 · 천연상태의 마그네시아 · 백운석(dolime 상태의 백운석을 포함한다) · 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제69류 주1 1.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 제6904호부터 제6914호까지는 제6901호부터 제6903호까지로 분류되는 것 외의 제품에만 적용한다.	1.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 가. 제6904호부터 제6914호까지는 제6901호부터 제6903호까지로 분류되는 것 외의 제품에만 적용한다. 나. 수지의 경화 · 수화작용의 촉진 · 물이나 그 밖의 휘발성분의 제거 등의 목적으로 섭씨 800도 미만의 온도로 가열한 제품은 소성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품은 제69류에서 제외한다. 다. 도자제품은 조제된 무기물 · 비철금속 재료를 보통 실온(室溫)에서 사전에 성형하여 구워 만든 방법으로 얻어진다. 원료는 점토 · 용융 실리카를 포함한 규산질의 재료 · 녹는점이 높은 재료(예 : 산화물 · 탄화물 · 질화물 · 흑연이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나 그 밖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때로는 내화점토나 인산염과 같은 결합제(binders)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	
69.03 - 그 밖의 내화성 도자제품[예: 레토르트(retort) · 도가니 · 머플 · 노즐 · 플러그 · 서포트 · 큐펠(cupel) · 관(管) · 쉬드(sheath) · 막대(rod)](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69.03 - 그 밖의 내화성 도자제품[예: 레토르트(retort) · 도가니 · 머플 · 노즐 · 플러그 · 서포트 · 큐펠(cupel) · 관(管) · 쉬드(sheath) · 막대(rod) · 슬라이드 게이트(slide gate)](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6903.10 -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 또는 이들 혼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6903.10 - 유리탄소(free carbon)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제6903호의 용어에 추가된 slide gate란 보통 주조공정에서 용융된 쇳물이 레이드와 basket 사이를 이동하거나 basket과 몰드 사이를 이동할 때 그 흐름을 조절해주는 장치를 말한다. 당연히 이 설비는 고온을 견딜 수 있는 내화재료로 만들어져야 하며 플레이트와 노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슬라이드 게이트>



<슬라이드 게이트용 플레이트와 노즐>

10. 유리섬유 및 그 제품에 관한 개정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와 그 제품이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제11부(특히 제50류부터 제55류)에서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종류별로 섬유, 실, 직물 등이 동일한 류의 각기 다른 호에 분류되고 있지만 유리섬유와 그 제품의 경우 제7019호에 함께 분류되고 있다. 제53차 검토소위원회(‘17.11월)에서 EU는 유리섬유 제품의 품목분류를 명확히 하고자 제7019호의 소호 분류체계 개정을 제안하였다. EU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범주의 개정안을 제시하며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i) 화학적으로 접착된 매트와 기계적으로 접착된 매트의 구분 : 이들 매트는 유리 가닥줄(strand, 이 strand는 보통 수백 개의 필라멘트가 무작위로 배열되어 만들어짐)로 제조된다. (EU의 설명에 따르면) 화학적으로 접착된 매트는 결합제를 이용하여 접착되고 보통 보강용으로 사용된다. 반면 기계적으로 접착된 매트는 보통 폴리아미드 사(yarn)를 이용하여 유리 strand를 박음질이나 바느질하여 결속하며, 단열재로 사용된다.

ii) 화학적으로 접착된 직물과 기계적으로 접착된 직물의 구분 : 현재의 제7019호는 유리섬유의 제1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소호 분류가 되어 있어 지난 20여년간 이루어진 기술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리섬유로 제조된 직물(fabric)을 크게 화학적인 결속방식과 기계적인 결속방식으로 구분하고 다시 이를 성기계(open) 짠 것과 촘촘하게(closed) 짠 것으로 구분해야 한다. 이들은 별다른 분석 없이 육안으로 구분가능하다.

iii) 글라스 울(glass wool)의 소호 신설 : 방직용의 유리섬유(textile glass fiber)와 글라스 울은 제조공정, 용도 및 추가가공 등의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물품이다. 그 특성상 글라스 울은 화학적 또는 기계적으로 접착된 형태가 아니라 롤상, 패널상 또는 보드상으로 절단될 수만 있다.

제6차 Review-cycle에서 최종 합의된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70.19 -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 · 직물) - 슬리버(slider) · 로빙(roving) · 실 · 단연사	70.19 -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 · 로빙(roving) · 직물) - 슬리버(slider) · 로빙(roving) · 실 · 단연사와 이들의 매트(mat)	소호 +7
7019.11 -- 단연사(길이 5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7019.11 -- 단연사(길이 5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7019.12 -- 로빙(roving)	7019.12 -- 로빙(roving)	
7019.19 -- 기타 - 얇은 시트(sheet)(보일) · 웹(web) · 매트(mat) · 매트리스(mattress) · 보드와 이와 유사한 부직포	7019.13 -- 그 밖의 실, 슬리버 7019.14 -- 기계적으로 접착한 매트 7019.15 -- 화학적으로 접착한 매트 7019.19 -- 기타	
7019.31 -- 매트(mat)	- 기계적으로 접착한 직물 :	
7019.32 -- 얇은 시트(sheet)(보일)	7019.61 -- 촘촘한 로빙 직물(직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7019.39 -- 기타	7019.62 -- 그 밖의 촘촘한 로빙 직물	
7019.40 - 로빙(roving) 직물 - 그 밖의 직물	7019.63 -- 촘촘한 직조 직물[실의 평직물로 도포 · 적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19.51 --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	7019.64 -- 촘촘한 직조 직물[실의 평직물로 도포 ·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7019.52 -- 폭이 30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으로 한정한다)	7019.65 -- 성긴 직조직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7019.59 -- 기타	7019.66 -- 성긴 직조직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019.90 - 기타	7019.69 -- 기타 - 화학적으로 접착한 직물 :	
	7019.71 -- 베일(얇은 시트)	
	7019.72 -- 그 밖의 촘촘한 직물	
	7019.73 -- 그 밖의 성긴 직물	
	7019.80 - 글라스 울과 글라스 울의 제품	
	7019.90 - 기타	

제7019호는 HS 1996 버전에서 개정된 이후 별다른 개정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최근의 기술발전과 시장 동향에 따라 유리섬유 제품의 구분 기준을 추가하고 소호를 세분화한 것은 HS 품목분류표의 취지에 맞는 것일 수는 있다. 그러나 실무적인

차원에서 화학적인 접착과 기계적인 접착의 구분, 촘촘한(closed) 직물과 성긴(open) 직물의 구분 기준은 해설서에서 충분히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U의 개정 취지로 보건대 성긴 직물에는 주로 필터링, 보강용으로 사용되는 메쉬(mesh)나 클로스(cloth) 형태의 물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촘촘한 직물에는 주로 단열, 밀폐용도에 적합한 직조한 직물 혹은 로빙 직물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구분을 위한 해설서는 가능한 한 상세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11. 비금속(卑金屬)제의 봉 등에 관한 개정

제52차 HS 위원회('13.9월)에서 WCO 사무국은 제78류(납과 그 제품), 제79류(아연과 그 제품), 제80류(주석과 그 제품)에서 불필요한 주 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들 류의 일부 주에서 봉, 프로파일, 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2007년 HS 개정 시 이러한 물품의 국제거래량 감소에 따라 관련된 호가 모두 삭제되어 사실상 주의 규정이 불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주(Notes)	관련 호	
	HS 2002	HS 2007
제78류 주 제1호 가목(봉) 나목(프로파일) 다목(선)	78.03 - 납의 봉, 프로파일과 선 (wire)	<삭제>
제78류 주 제1호 마목(관)	78.05 - 납으로 만든 관과 연결구류	<삭제>
제79류 주 제1호 마목(관)	79.06 - 아연으로 만든 관과 연결구류	<삭제>
제80류 주 제1호 라목(판, 시트, 스트립, 박(foil))	80.04 - 주석으로 만든 판, 시트, 스트립	<삭제>
	80.05 - 주석으로 만든 박(foil)	<삭제>
제80류 주 제1호 마목(관)	80.06 - 주석으로 만든 관과 연결구류	<삭제>

HS 분류체계상 관련 호가 삭제되었다면 이들 물품은 통상 해당 류의 잔여 호(기타 제품이 분류)에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잔여 호의 용어나 소호 용어에서 주에서 정의한 물품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국제공통의 품목분류 레벨에서는 주의 규정이 유명무실해지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호주 등 몇몇 회원국은 비록 이들 주의 규정이 국제적인 레벨에서는 의미가

없지만 자국의 국내 세분류 체계에서는 여전히 봉, 프로파일, 관, 플레이트 등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국내 품목분류시 분쟁 방지를 위하여 이러한 규정이 남아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결국 보다 실용적인 접근으로 제74류(구리와 그 제품)부터 제81류(기타의 비금속 제품)까지 모든 류에서(제77류 제외) 봉, 프로파일, 관, 플레이트 등에 관한 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제15부 주로 승격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검토소위원회는 제15부 주8(‘웨이스트와 스크랩’, ‘가루’에 대하여 정의)에 봉과 관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시키는 방안과 제15부 주를 새로 신설하여 이를 규정하는 방안 중 후자를 택하여 이 개정내용이 제72류(철강)와 제73류(철강제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이 개정은 류의 주를 부의 주로 승격시키고 관련된 참조사항을 정리한 것일 뿐 특정 류나 호의 범위가 변경되는 개정사항은 아니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제15부 주9 신설 <신설>	9. 제74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 다음 각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봉 “봉”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단조(鍛造)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 아니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며 다른 두 변은 직선이고 길이가 같으며, 평행한 “편평 모양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한 주조나 소결(燒結)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trimming)이나 스케일 제거(de-scaling)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위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와 동일한 모양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제74류의 와이어바(wire-bar)와 빌릿(billet)으로 선재[와이어로드(wire-rod)]나 관(管) 등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가공을 용이하게 하도록 단순히 끝을 가늘게 하거나 그 밖의 가공을 한 제7403호의 구리의 괴(塊)로 본다. 이 규정은 제81류 물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프로파일 “프로파일(profile)”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단조(鍛造)·형조(形造)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선·판·시트(sheet)·스트립·박(箔)·관(管)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조나 소결(燒結)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trimming)이나 스케일 제거(de-scaling)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위와 동일한 모양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다. 선(線) “선(線)”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 모양인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라.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8001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 분류되는 호에는 특히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 홈·리브(rib)·체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것에 구멍을 뚫은 것·물결 모양으로 한 것·연마한 것·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없는 것에 적용한다. 마. 관(管) “관(管)”이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모양으로서 그 관(管)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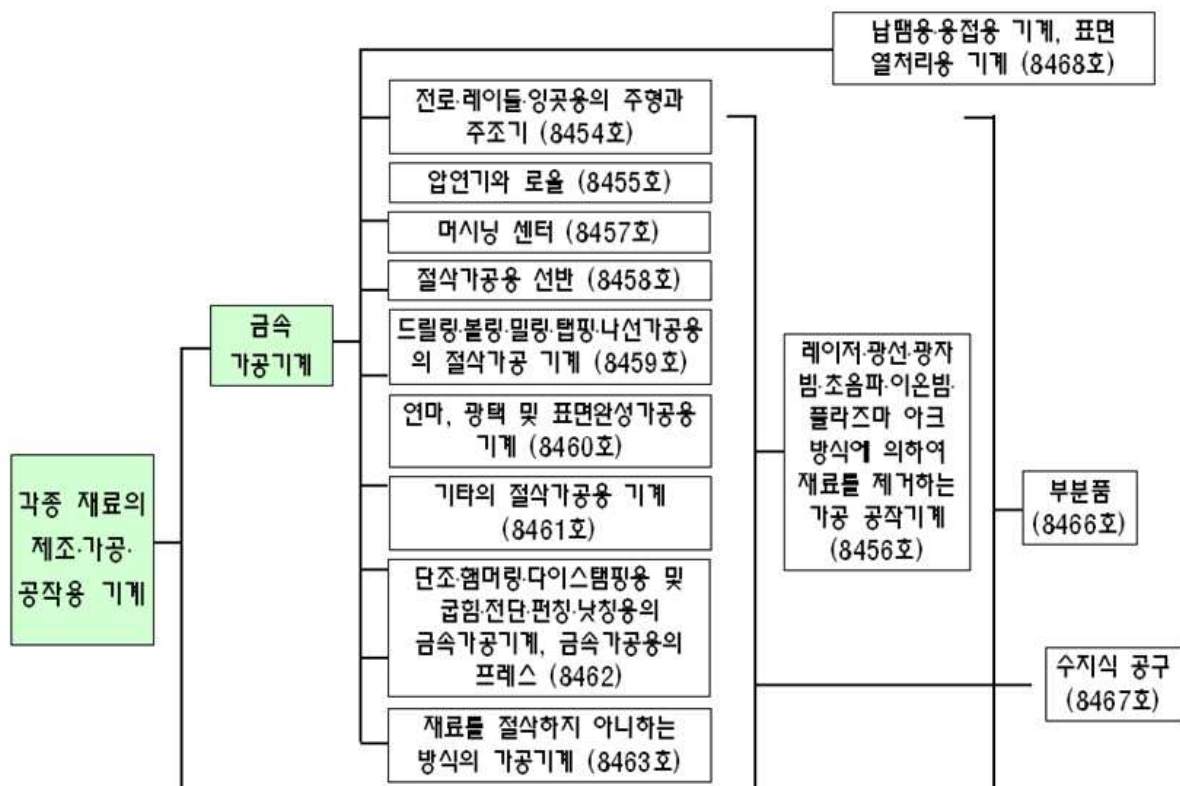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 이등변 삼각형 · 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同心)이며 위와 동일한 모양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管)으로 본다.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管)들은 연마한 것, 도포한 것, 구부린 것, 나선가공한 것, 구멍을 뚫은 것, 웨이스트한(waisted) 것, 익스팬디드한(expanded) 것, 원추형으로 한 것, 플랜지(flange) · 고리 · 링을 붙인 것도 있다.	
제74류 주1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다. (생략) 라. 봉 (생략) 마. 프로파일(profile) (생략) 바. 선(線) (생략) 사. 판 · 시트 · 스트립 · 박(箔) (생략) 아. 관(管) (생략)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다. (생략)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7419.10 - 체인과 그 부분품	<삭제>	소호 -1
- 기타 7419.91 -- 주조 · 주형 · 압착 · 단조(鍛造)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419.99 -- 기타	7419.20 - 주조 · 주형 · 압착 · 단조(鍛造)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419.80 - 기타	
제75류 주1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봉(생략) 나. 프로파일(생략) 다. 선(線)(생략) 라. 판 · 시트 · 스트립 · 박(箔)(생략) 마. 관(管)(생략)	<삭제>	
제75류 소호주2 2. 이 류의 주 제1호다목에 불구하고 소호 제7508.10호의 "선(線)"이라는 용어는 횡단면의 치수가 6밀리미터 이하인 제품	2. 제15부 주 제9호다목에 불구하고 소호 제7508.10호의 "선(線)"이라는 용어는 횡단면의 치수가 6밀리미터 이하인 제품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코일 모양인지와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 없다)에만 적용한다.	(코일 모양인지와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 없다)에만 적용한다.	
제76류 주1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봉(生략) 나. 프로파일(生략) 다. 선(線)(生략) 라. 판·시트·스트립·박(箔)(生략) 마. 관(管)(生략)	<삭제>	
2. 이 류의 주 제1호다목에 불구하고 소호 제7616.91호의 "선(線)"이라는 용어는 횡단면의 치수가 6밀리미터 이하인 제품 (코일 모양인지와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 없다)에만 적용한다	2. 제15부 주 제9호다목에 불구하고 소호 제7616.91호의 "선(線)"이라는 용어는 횡단면의 치수가 6밀리미터 이하인 제품 (코일 모양인지와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 없다)에만 적용한다	
제78류 주1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봉(生략) 나. 프로파일(生략) 다. 선(線)(生략) 라. 판·시트·스트립·박(箔)(生략) 마. 관(管)(生략)	<삭제>	
제79류 주1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봉(生략) 나. 프로파일(生략) 다. 선(線)(生략) 라. 판·시트·스트립·박(箔)(生략) 마. 관(管)(生략)	<삭제>	
제80류 주1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봉(生략) 나. 프로파일(生략) 다. 선(線)(生략) 라. 판·시트·스트립·박(箔)(生략) 마. 관(管)(生략)	<삭제>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제81류 주1 1. 제74류의 주 제1호의 "봉", "프로파일(profile)", "선(線)"과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의 규정은 이 류에 준용한다.	<삭제>	

12. 금속가공용 단조기와 관련한 제8462호의 개정

제84류에서 금속 가공기계의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다. 용광로로부터 나온 용융된 쇳물을 받아내거나 이를 정제하는데 사용되는 레이들과 전로, 그리고 용융된 쇳물을 주조하여 잉곳이나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계는 제8454호에 분류되며, 압연 방식으로 기초적인 재료(빌렛, 슬래브, 관, 판, 스트립 등)를 생산해내는 기계는 제8455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기초적인 재료나 반제품을 변형시키는 가공기계는 제8456호부터 제8463호에 분류되는데, 기능적인 관점에서 공구(tool)를 이용하여 재료를 깎아 내거나 구멍을 뚫거나 잘라내는 기계들은 제8457호부터 제8462호에 분류되는데, 제8457호의 머시닝 센터와 제8458호의 선반은 다른 호에 우선하여 분류된다. 제8457호와 제8458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가공방법에 따라 드릴링, 보링, 밀링 방식의 공구(tool)를 이용하는 기계는 제8459호에, 연마, 광택, 샤프닝 등 표면을 완성가공하는 기계는 제8460호에, 튕질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는 기계는 제8461호에 분류되는데, 각 호의 용어에서 그 해당되는 가공범위를 정하고 있다. 제8462호에는 보통 물리적인 타격을 수반하여 재료를 잘라내거나 성형하는 단조기와 프레스가 분류되며, 그리고 재료를 제거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는 기타의 가공기계는 제8463호에 분류된다. 제8456호에는 레이저, 이온빔, 초음파, 플라즈마 등의 방식으로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의 기계가 분류되는데, 이 호에는 금속만이 아니라 다른 재료의 가공기계까지 포함한다.



<제84류에서 금속 가공용 기계의 분류체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제8462호의 범위에는 통상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재료를 변형(재료의 제거 포함)하는 형태의 기계가 분류되는데, 제84류의 금속 가공기계 그룹 중 가장 다양한 종류의 기계를 포함하고 있다. 제53차 검토소위원회('17.11월)에서 EU는 품목분류상 제8462호에 포함되는 기계분야에서의 기술발전과 신상품 개발 동향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검토소위원회와 HS위원회는 큰 틀에서 EU의 개정안을 수용하되 일부 수정을 거쳐 제8462호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제84류 주5 신설 <신설>	5. 제8462호에서 평판제품용의 "슬리팅 라인(slitting line)"이란 코일 푸는 기계·코일 평평하게 하는 기계·슬리터(slitter)·코일 감는 기계로 구성된 가공설비를 말한다. 평평한 제품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는 설비(Cut-to-length line)"란 코일 푸는 기계·코일 평평하게 하는 기계·전단기(shear)로 구성된 가공설비를 말한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5~8. (생략)	6~9. (생략)	
84.62 - 단조(鍛造)용 · 해머링(hammering)용 · 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 · 접음용 · 교정용 · 펼침용 · 전단용 · 편칭용 · 낫칭(notch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 방법에 의한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가공용 프레스	84.62 - 단조(鍛造)용 · 해머링(hammering)용 · 다이포징(die-forging)용(롤링 밀은 제외한다)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 · 접음용 · 교정용 · 펼침용 · 전단용 · 편칭용 · 낫칭(notching)용 · 니블링(nibbling)용(인발 벤치를 제외한다)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 · 슬리팅 라인(slitting line) ·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는 설비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의한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가공용 프레스	소호 +11
8462.10 - 단조기(鍛造機) · 다이스탬핑기(die-stamping machine)(프레스를 포함한다)와 해머	- 단조용 · 다이포징용 열간 성형기(프레스를 포함한다)와 열간 해머	
- 굽힘기 · 접음기 · 교정기 · 펼침기(프레스를 포함한다)	8462.11 -- 밀폐단조기	
8462.21 -- 수치제어식	8462.19 -- 기타	
8462.29 -- 기타	- 평판제품용 굽힘기 · 접음기 · 교정기 · 펼침기(프레스 브레이크를 포함한다)	
- 전단기(프레스를 포함하며, 편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8462.22 -- 프로파일 성형기	
8462.31 -- 수치제어식	8462.23 -- 수치제어식 프레스 브레이크	
8462.39 -- 기타	8462.24 -- 수치제어식 패널 굽힘기	
- 편칭기나 낫칭기(notching machine)(프레스를 포함하며, 편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462.25 -- 수치제어식 롤 성형기	
	8462.26 -- 그 밖의 수치제어식 굽힘기 · 접음기 · 교정기 · 펼침기	
	8462.29 -- 기타	
	- 평판제품용 슬리팅 라인(slitting line) ·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는 설비 · 그 밖의 전단기(프레스를 제외하며, 편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제외한다)	
	8462.32 -- 슬리팅 라인(slitting line) ·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는 설비	
	8462.33 -- 수치제어식 전단기	
	8462.39 -- Other	
	- 평판제품용 편칭기 · 낫칭기(notching machine)나 니블링기(nibbling machine)(프레스를 제외한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함한다) 8462.41 -- 수치제어식 8462.49 -- 기타 - 기타 8462.91 -- 액압 프레스 8462.99 -- 기타	외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 된 것을 포함한다) 8462.42 -- 수치제어식 8462.49 -- 기타 - 관·중공이 있는 형강·봉 가공 용의 기계(프레스를 제외한다) 8462.51 -- 수치제어식 8462.59 -- 기타 - 냉간 금속가공용 프레스 8462.61 -- 액압프레스 8462.62 -- 기계식 프레스 8462.63 -- 서보프레스 8462.69 -- 기타 8462.90 - 기타	

개정된 제8462호의 소호 체계에서는 우선 열간성형과 냉간성형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가공대상물에 따라 평평한 재료(패널, 시트, 플레이트, 스트립 등)를 가공하는 기계와 그 밖의 재료(관, 중공형강, 봉 등)를 가공하는 기계를 5단위 소호 레벨에서 구분하였다. 또한 평판제품을 세로 방향으로 길게 자르거나 양쪽의 모서리를 제거하기 위한 설비(slitting line)와, 일정한 길이 단위로 가로로 절단하는 설비(cut-to-length line)를 6단위 소호에서 특개하였다. 그 밖에도 평판 프로파일 성형기, 프레스 브레이크, 서보프레스 등의 물품이 특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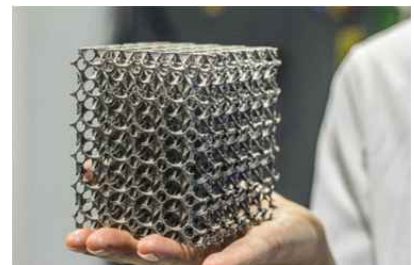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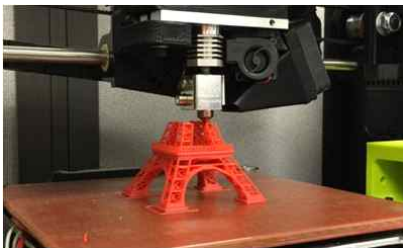
13. 3D 프린터와 관련한 개정

3D 프린터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입체적인 대상을 3차원 공간에서 성형하는 물품을 말한다. 만들고자 하는 대상을 디지털 모델화하고 이 3차원 모델을 수많은 단면으로 분할하여 가장 밑바닥의 단면(layer)부터 한층한층 쌓아올리듯 완성해나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3D 프린팅 방식이다.

HS 2017 버전에서 3D 프린터는 사용하는 재료의 재질에 따라 각기 다른 호에 분류된다. 금속을 재료로 한다면 제8463호에, 유리를 재료로 한다면 제8475호에, 고무나 플라스틱을 재료로 한다면 제8477호에 분류되며, 여러 가지 재료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제8479호에 분류가능하다.

제6차 Review-cycle에서는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과 이 분야의 다양한 신상품 등장 추세를 반영하여 제8485호를 신설하여 3D 프린터를 통합하여 분류하는 동시에 제84류 주에서 이러한 3D 프린팅(“부가제조”, additive manufacturing¹³⁾)의 개념에 대하여 정의하였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제84류 주10 신설 <신설>	10. 제8485호에서 “부가제조”(3D 프린팅이라고도 한다)라 함은 디지털 모델을 바탕으로 재료(예 : 금속·플라스틱이나 세라믹)를 연속적으로 부가·적층하고 경화·응고시켜 물리적인 대상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16부 주 제1호와 제84류 주 제1호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5호의 설명에 부합하는 기계는 이 호에 분류하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다.	
<신설>	84.85 - 부가제조방식의 기계 8485.10 - 금속용 8485.20 - 플라스틱이나 고무용 8485.30 - 플라스터·시멘트·세라믹이나 유리용 8485.80 - 기타 8485.90 - 부분품	호 +1 소호 +5



<3D 프린터와 그 가공물>

13) 제8456호에서 제8465호에 해당하는 공작기계(machine-tool)는 보통 특정한 재료의 가공물을 제조하면서 보통 재료를 제거(드릴링, 보링, 커팅, 절단, 연마 등 - 제8463호 제외)하거나 변형(인발, 구부림, 접음, 교정 등)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데 비하여 3D 프린팅은 3차원으로 재료를 계속 쌓거나 덧붙이면서 가공하기 때문에 부가제조란 표현으로 정의하였음.

이 개정에 따라 사용하는 재료에 관계없이 모든 3D 프린터는 제8485호에 분류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신설된 제84류 주 제10호의 요건을 적용할 경우 3D 프린팅 펜이라 불리는 수지식 기기(HS 2017 버전에서 3D 프린팅 펜은 보통의 3D 프린터와 마찬가지로 가공대상 재료에 따라 분류)는 제8485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3D 프린팅 펜>

제55차 검토소위원회('18.11월)는 3D 프린팅 펜이 디지털 모델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손재주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므로 신설되는 주 제10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제8485호로 분류될 수 없으며, 향후 이를 제8485호로 분류하고자 한다면 주의 개정이나 호의 용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14. 태양에너지 제품과 관련한 개정

제52차 검토소위원회('17.5월)에서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는 태양에너지 제품과 관련한 HS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IRENA는 재생에너지 사용의 확대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라는 취지에서 태양에너지 관련 제품의 품목분류를 명확히 하고 사용확대를 촉진하고자 관련 제품의 HS 개정을 제안하였다. 검토소위원회는 IRENA의 취지에 공감하고 IRENA의 제안에 약간의 수정을 거쳐 HS 개정안을 완성하였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신설>	8419.12 - 태양열 물 가열기	소호 +1
8501.3 - 그 밖의 직류전동기와 직류 발전기	8501.3 - 그 밖의 직류전동기와 직류 발전기(태양광 발전기를 제외한다)	
8501.6 - 교류 발전기	8501.6 - 교류 발전기(태양광 발전기를 제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외한다)	
<신설>	- 태양광 직류 발전기 8501.71 -- 출력이 50와트 이하인 것 8501.72 -- 출력이 50와트를 초과하는 것 8501.80 - 태양광 교류 발전기	소호 +3
9405.40 -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 그 밖의 전기식 조명기구 9405.41 -- 태양전지를 사용하는 것(발광다이오드(LED)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9405.42 -- 기타(발광다이오드(LED)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9405.49 -- 기타	소호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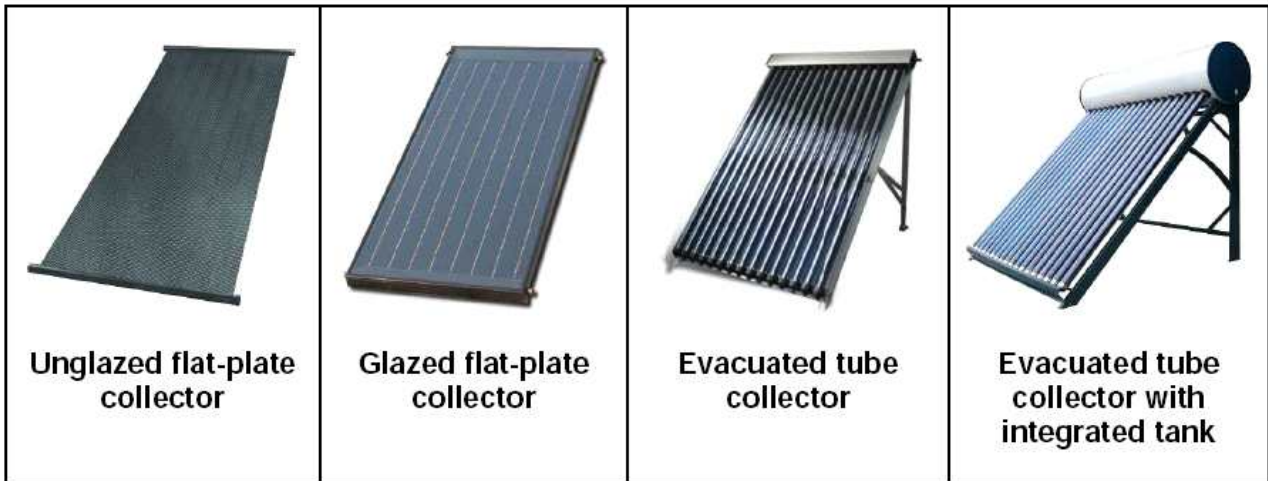
IRENA의 제안에 영향을 받는 호는 제8419호, 제8501호, 제8541호¹⁴⁾, 제9405호 등이다. 영문 표현으로는 태양에너지를 포괄적으로 의미할 때는 solar energy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여기에는 태양열과 태양광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전기적인 의미에서 태양광에서 비롯된 전기에너지나 광전지를 의미할 때는 photovoltaic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¹⁵⁾.

따라서 제8419호의 태양열 물 가열기(solar water heater)에서는 solar라는 표현이, 나머지 호에서는 photovoltaic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제8419.12호의 태양열 물 가열기는 태양광 발전을 이용하거나 전기적으로 가열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태양열에 의하여 물을 데우는 기기이다.

주로 열 전도성이 뛰어난 금속재료의 플레이트나 관 구조로 이루어져 내부로 물이 순환하면서 태양열에 의하여 물이 데워지도록 만들어진 물품이며, 이는 제8419호의 범위(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기)에 포함된다.

14) 17. LED 제품과 조명기구에 관한 개정 참조

15) 제8541호의 반도체 디바이스중 태양전지를 가리킬 때 시장에서는 solar cell(또는 solar panel)과 photovoltaic cell을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HS 품목분류표는 일관되게 photovoltaic cell로 표현한다.



<태양열 물 가열기>

15. 스마트폰과 제8517호의 개정

휴대폰의 역사를 처음 시작한 M사에서 무전기 크기의 휴대폰을 출시했을 때만 해도 1센티미터도 안 되는 두께에 손바닥만한 크기(그러나 기술적으로 작게 만들려고만 하면 훨씬 더 작은 크기도 가능한)의 전화기에 TV와 같은 디스플레이가 탑재되고 화면 터치로 조작되는 물론 인터넷이나 고화질 카메라 기능을 갖춘 지금과 같은 스마트폰이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그 기능은 전화기, TV, 카메라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게임기, 모바일 결제나 बैं킹, 컴퓨터에 버금가는 수준의 OA 기능까지도 가능하다.

스마트폰이 지금과 같은 형태를 띠기 훨씬 오래전부터 스마트폰이라는 용어 자체는 사용되고 있었다. 초창기에는 통신기능만 가능한 휴대폰에 비해 계산기, 주소록, 이메일, 음성녹음 등 초보적인 부가기능을 갖춘 정도만으로도 스마트폰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는 카메라, GPS, DMB TV, 비디오 게임 등 좀 더 강력해진 부가기능을 갖춘 물품들이 등장하였다. 또한 휴대형 기기의 발전과정에서 팜탑(palm top) 형태의 모바일 컴퓨터에 전화기 기능을 채용하거나 반대로 휴대폰에서 컴퓨터의 기능을 채용하는 형태의 cross over가 이어졌고, MP3 플레이어나 PMP 등 개인용 휴대형 음성·영상 재생기기가 등장했다가 이러한 기능들이 스마트폰에 통합되기도 하였다.

WCO HS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휴대용 통신기기와 관련한 두 차례의 중요한 논의가 있었다. 첫 번째는 제43차 HS 위원회('09.3월)에서의 한국산 DMB 폰(DMB 방송 수신 가능한 휴대폰) 품목분류 논의였다. 당시 EU측은 한국산 DMB 폰에 대하여 전화기에 TV 방송 수신기능이 추가된 복합·다기능 기계로서 그 주기능이 제8517호의 전화기에 있는지 제8528호의 TV 수신기에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통칙 제3호 다

목을 적용하여 제8528호의 텔레비전 수신기로 분류한 바 있다¹⁶⁾.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이 물품이 휴대용 TV에 전화기능을 부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상용화되고 완성된 모델의 전화기에 TV 기능을 추가했다는 점, TV를 포함한 부가기능 사용중에도 전화기는 대기상태이며 전화수신시 모든 기능이 중단되고 전화수신 모드로 전환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이 물품의 주기능이 전화기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 안건은 HS 위원회에서 논의되기 전에 EU측에서 한국의 견해를 받아들여 자체적으로 품목분류 결정을 변경함으로써 HS 위원회에서는 더 논의되지 않았다. EU는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결정을 변경함과 동시에 제8517호의 EU 해설서에도 그 같은 취지를 명시하였다.¹⁷⁾

두 번째는 제49차 HS 위원회(12.3월)에서의 태블릿 컴퓨터 품목분류 결정이었다. 태블릿 컴퓨터는 제84류 주5에서 규정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요건을 충족하며, 동시에 휴대폰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모델에 따라서는 휴대폰에서 사용되는 SIM(Subscriber Identity Module) 카드를 장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HS 위원회는 한국, 미국, 대만산 세 가지 모델의 태블릿 컴퓨터에 대한 품목분류를 검토하여 이들 모두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분류하였다.

제6차 Review-cycle에서 WCO 사무국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제는 개인용 휴대기기의 대세가 된 스마트폰을 품목분류표에서 보다 명확히 정의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스마트폰의 정의를 규정하는 제85류 주 제5호를 신설하고, 제8517호에는 스마트폰을 위한 별도의 소호가 신설되었다. 그 밖에 중국과 브라질의 제안에 따라 제8517.7 소호에 통신기기의 부분품으로서 안테나를 특제하도록 하였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제85류 주5 신설 <신설>	5. 제8517호에서 "스마트폰"이라 함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능(예 : 제3자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수의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동시에 실행)을 수행하도록 고안된 휴대기기용 운영체제를 갖춘 셀룰러 통신망용 전화기로서 디지털 카메라	

16) EU는 같은 시기에 동일한 논리로 한국산 GPS 폰에 대하여 제8526호의 항행용 무선기기로 분류한 바 있다.

17) 제8517.12호의 EU 해설서 : 'Mobile phones' may also have other feature such as SMS and MMS messages; emails; internet access; PDA; GPS; VOIP; gaming; receiving TV signals; capturing, recording and reproducing sound and images. Irrespective of such additional features, the mobile telephony function is generally the principal function for mobile phones that meet all the above characteristics. This is the case, for example, when the telephony function takes precedence over all functions, including when incoming calls are normally notified to the user regardless of secondary functions used.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나 네비게이션 시스템 등 다른 기능을 장착했는지에 상관없다.	
85.17 - 전화기(<u>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u>)와 음성·영상이나.....	85.17 - 전화기(<u>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로 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을 포함한다</u>)와 음성·영상이나.....	
-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8517.11 -- 유선전화기[무선 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517.12 --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8517.18 -- 기타	- 전화기(<u>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로 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을 포함한다</u>) 8517.11 -- 유선전화기[무선 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517.13 -- 스마트폰 8517.14 -- 그 밖의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8517.18 -- 기타	소호 +1
8517.70 - 부분품	- 부분품 8517.71 --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 8517.79 -- 기타	소호 +1

기술발전과 시장 동향에 발맞추어 제8517호에 스마트폰을 특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제8471호의 휴대용의 자동자료처리기계(태블릿 컴퓨터)와 제8517호의 스마트 폰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짐에 따라 향후 이 분야에 대한 품목분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이미 전화기(phone)와 태블릿 컴퓨터의 융복합을 의미하는 패블릿(phablet)이라는 용어가 등장한지 오래다.

16.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을 위한 4단위 호(제8524호) 신설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이란 액정(liquid crystal), OLED, 플라즈마 등 평판(flat panel) 기술을 적용, 영상 출력장치를 포함한 여러 가지 기기에 결합되어 영상 또는 시각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중간제품으로 스크린과 기타 부품(신호처리를 위한 구동 IC, 프레임 구조를 완성하기 위한 bezel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을 말한다. 과거 음극선관이 텔레비전이나 모니터의 기본적인 영상표시용 부품이었듯이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 또한 이러한 영상 디스플레이용 기기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된다.



<여러 가지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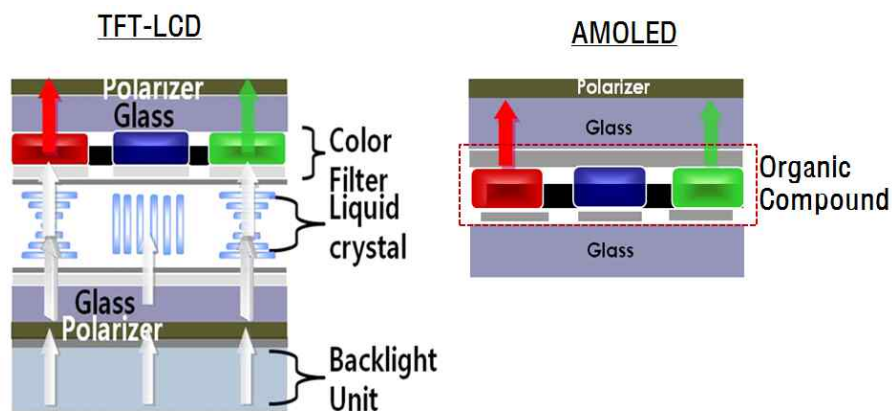
영상 디스플레이의 용도는 텔레비전, 컴퓨터 모니터 등 전통적인 역할에 한정되지 않고 전화기와 통신장비, 비디오 게임용구, 제어기기, 의료기기, 측정기기, 수술기기, 홈 오토메이션, Kiosk 등 일상생활과 산업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완성된 디스플레이 제품 또는 디스플레이가 결합된 기기는 제84류, 제85류, 제17부, 제90류, 제95류의 다양한 호에 분류될 것이지만 이들 기기에 결합되기 위한 중간제품 형태의 디스플레이 모듈은 현재 품목분류표 기준으로는 그 구조나 제조단계, 용도, 기능 등에 따라 여러 호에 분류가능하다. 예를 들어, 두 장의 유리기판 사이에 액정이 주입된 상태의 액정 디바이스는 제9013호에, 간단한 신호나 정보만을 표시하도록 만들어진 시각신호용 표시반은 제8531호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자동차용의 표시반으로 사용되는 형태를 제8512호에 분류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디스플레이 모듈은 그러한 모듈이 최종적으로 결합되는 완제품의 종류에 따라 그 부분품으로서 적절한 호(예를 들어, 제8473호, 제8517호, 제8529호 등)에 분류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의 차원에서 완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불완전미완성 물품으로 이해될 가능성도 있다. 그에 따라 디스플레이 모듈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각국의 분류사례가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

HS 2017 버전에서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의 분류상 쟁점이 될만한 호는 다음과 같다.

HS	LCD 모듈	OLED 모듈
제8512호	시각적 신호를 출력하는 표시반으로서 자동차에 전용되는 것	
제8528호	완성된 모니터나 텔레비전 수상기 형태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통칙 제2호 가목의 맥락에서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8529호	모니터나 텔레비전 수상기의 부분품	
제8531호	시각적 신호를 출력하는 표시반	
제8537호	터치방식의 제어가 가능한 제어반	
부분품	완성된 영상출력용 기기의 부분품(제8473호, 제8517호 등)	
제8548호	범용성 디스플레이 모듈	
제9013호	액정 디바이스	해당없음

CRT가 그 운을 다하던 무렵 이후 최근 20여년간 LCD, PDP, OLED, FED, 전자종이 등 다양한 평판디스플레이 기술이 등장했지만 현재 시장에서 평판 디스플레이 제품의 대세를 이루는 것은 LCD(Liquid Crystal Display)와 OLED(Organic Light-Emitting Diode)이다. LCD는 액체와 고체의 중간성질을 지닌 액정(liquid crystal)의 특징을 이용하여 화면을 통과하는 빛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정보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이다. LCD는 CRT와 달리 자체적으로 발광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적인 광원(Backlight unit)이 필요하다. 반면 OLED는 나노미터 단위의 박막으로 된 유기물 층에 전압을 인가하여 빛을 발생함으로써 화면에 정보를 표시하는 자체 발광성의 디스플레이 장치로서 보조 광원이 필요 없다. 이 두 가지 장치는 디스플레이 기본단위인 화소(pixel)를 제어하기 위한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TFT(박막트랜지스터) 층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LCD와 OLED 모듈의 구조 차이>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품목분류 관점에서 LCD와 OLED의 차이는 없다. 다만, LCD의 경우 그 제조단계와 구성형태에 따라 제9013호의 액정 디바이스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HS 제9013호 해설서는 액정 디스플레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액정 디바이스 :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기접속자를 부착했는지에 상관없으며, 조각이나 특정 모양으로 절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된 물품을 구성하지 않는 것

LCD 모듈은 그 구조나 제조단계에 따라 제9013호의 액정 디바이스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나, OLED 모듈의 경우에는 액정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제9013호에는 분류될 수 없다.

디스플레이 모듈의 전 세계적인 품목분류 불일치, 다양한 논쟁의 소지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경 우리나라는 HS 2017 버전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WCO의 HS 검토 소위원회에 HS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현재 기준으로서는 동일한 물품이라도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도나 규격에 관계없이 모든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을 동일한 호에 분류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몇몇 회원국을 제외하고는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이라는 물품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며, 개정안의 난이도와 파급효과 또한 적지 않아 2017년 HS 개정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이후 WCO에서의 7년 가까운 논의를 거쳐 2022년 HS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제16부 주2 나목 2. 기계의 부분품은... (중략)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중략)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	제16부 주2 나목 2. 기계의 부분품은... (중략)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중략)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하고 제8524호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	
제85류 주7 신설 <신설>	7. 제8524호에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라 함은 최소한 표시화면을 장착하여 정보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나 기기를 말하며, 사용하기 전에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결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다.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표시화면은 평평한 것, 곡선형인 것, 구부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러지는 것, 접거나 늘일 수 있는 형태를 포함하나 이들 형태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은 영상신호를 수신하고 이들 신호를 화면의 픽셀에 할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가요소를 결합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8524호에는 영상신호를 변환하는 부품(예 : 스케일러 IC, 복조 IC나 응용프로그램 처리기)을 장착하였거나 다른 호의 물품의 특성을 가진 디스플레이 모듈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85.24 -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구동 또는 제어회로가 없는 것 8524.11 -- 액정의 것 8524.12 --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것 8524.19 -- 기타 - 기타 8524.91 -- 액정의 것 8524.92 --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것 8524.99 -- 기타	호+1 소호 +6
85.29 -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9 - 부분품(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90.13 - <u>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u> ,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13 -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HS 2017 버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제8524호에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을 분류하되, 모듈의 제조단계에 따라 구동 또는 제어회로가 없는 것과 있는 것을 5단위에서 구분하였으며, 그 아래 6단위에서는 이를 다시 액정, OLED, 기타의 그룹으로 세분하였다. 이 호에 분류되는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의 범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5류에 주7을 신설하여 해당 물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토록 하였다. 그리고 제8524호의 신설에 따라 제9013호에 분류되던 액정 디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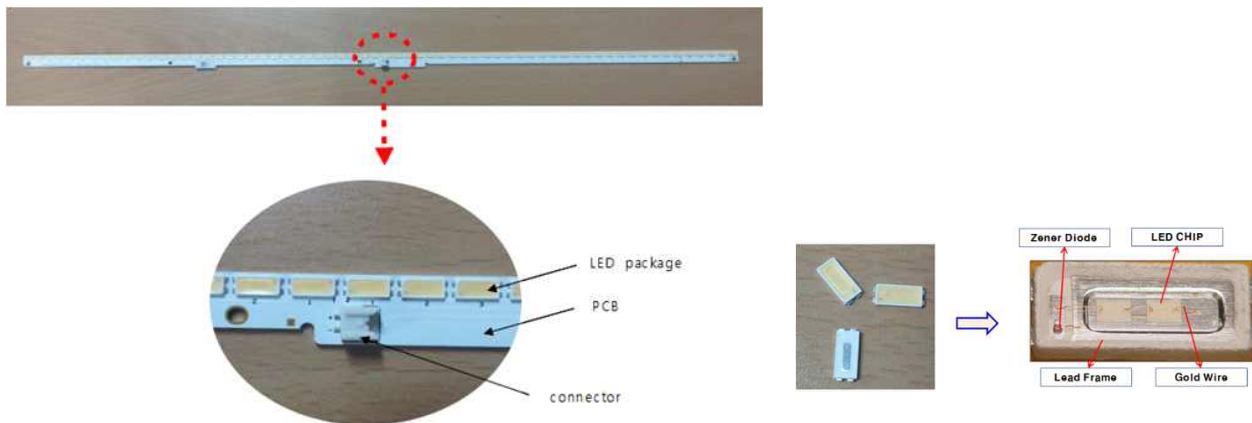
이스가 이 호로 옮겨지도록 제9013호의 용어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안은 2022년 HS에서 가장 큰 폭의 개정을 가져오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될 것이다. 아울러 평판 디스플레이의 품목분류와 관련한 국제분쟁이나 품목분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업계의 불편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즉, 평판 디스플레이의 HS 4단위 품목분류에 따르는 국제적인 논쟁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17. LED 제품 · 조명기구 및 제8541호에 대한 개정

1) LED 제품의 품목분류 경과와 HS 개정

제54차 HS 위원회('14.9월)는 기판 위에 장착된 62개의 LED 패키지(각 패키지는 LED 칩 2개와 제너다이오드 1개로 구성)로 이루어진 텔레비전용 LED 백라이트를 제8541호의 발광다이오드(LED)로 분류한 바 있다. 이 결정은 LED가 모듈화된 물품이라도 제8541호의 물품(다이오드, 트랜지스터, LED 등) 이외의 다른 구성요소가 없는 물품이라면 제8541호에 분류할 수 있다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LED 모듈(왼쪽)과 LED 패키지(오른쪽)(제54차 HSC)>

그리고 그보다 2년 전, 제50차 HS 위원회('12.9월)는 LED 램프의 품목분류 문제를 논의하였다. 논의된 물품은 bi-pin 커넥터나 에디슨 screw를 갖추고 독립된 하우징이나 벌브(bulb)형 외피를 갖춘 LED 전기램프로 가정용의 조명기구나 소켓에 삽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이다. LED 기술의 발전으로 LED 램프가 종래의 가정용 형광등이나 백열등을 대체해 가던 시점에 등장한 물품이다.



〈LED 램프(제50차 HSC)〉

이들은 벌브나 하우스형의 용기 안에 전기적 에너지를 광선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요소로 이루어졌고, 램프 홀더나 소켓에 고정시키기 위한 삽입식의 커넥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그 형상과 기능이 제8539호에 분류되는 전기램프와 같다. 문제는 2012년 HS 적용 당시 제8539호의 용어는 특정 종류의 램프만을 한정하고 있고, 열거된 램프 이외에 LED 램프 등 다른 종류의 램프가 분류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예를 들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램프’라는 표현도 없음) 이들 물품을 제8539호에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제8539호 호의 용어(HS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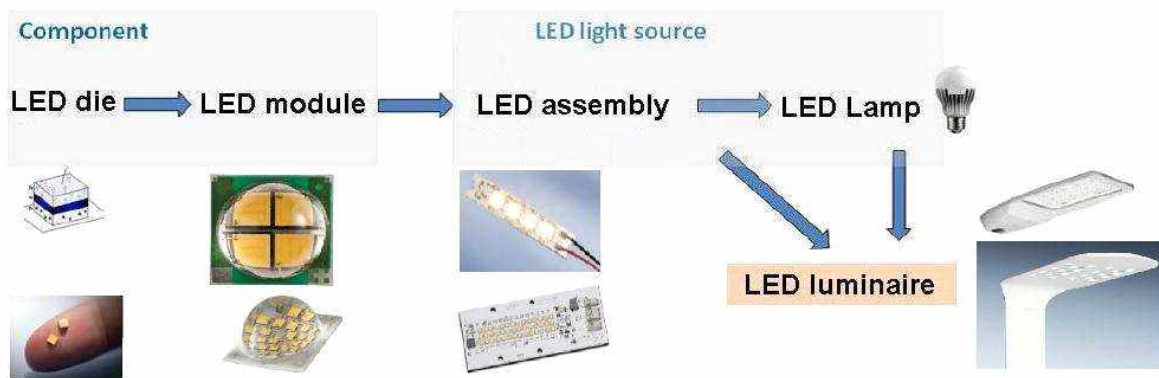
85.39 -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 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2012년 당시 HS 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이들 물품을 제8543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¹⁸⁾ 이후 제51차 HS 위원회(‘13.3월)는 제8539호에 LED 램프가 분류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2017년 HS 개정안을 검토, 채택하였고 이 개정안은 이후 ‘14.7월 WCO 총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었다.

HS 2012	HS 2017	비고
85.39 -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85.39 -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램프	

18) 이 물품이 호의 용어상 제8539호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에는 HS 위원회가 공감하였으나, 분류의견은 통일되지 않았다. EU는 이 물품이 제85류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전기기기라는 입장으로 제8539호를 제시하였고, 우리나라, 미국 등은 (제85류의 특정 호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램프와 조명기구’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소수의견으로 제8541호의 LED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제51차 HS 위원회는 투표를 거쳐 이들 물품을 제8543호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개정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제45차 검토소위원회(‘13.5월)에서 EU는 LED 제품의 종류와 거래단계가 다양함을 들어 이들 LED 제품을 품목분류표에 적절히 특계하기 위한 개정안을 새로이 제안하였다. LED는 제8541호의 반도체 디바이스(칩 또는 패키지)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듈, 어셈블리 등 다양한 단계로 거래되고 있다.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LED 또한 가정용의 소켓에 직접 갈아 끼울 수 있는 램프의 형상보다는 조명기구를 완성하기 위한 중간단계 부품인 모듈 형태로 훨씬 더 많이 거래된다. 그 뿐 아니라 상들리에, 전기스탠드 램프, 가로등, 서치라이트 등 완성된 조명기구로서도 폭넓게 거래된다.



<다양한 거래단계의 LED 제품>

EU는 이러한 물품들의 품목분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차원의 HS 개정안을 추가로 제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i) LED 램프와 모듈(또는 어셈블리)을 모두 포함하도록 제 8539호 개정, ii) 발광다이오드(LED)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85류 주 규정 신설 및 LED를 소호 레벨에서 특계하기 위한 제8541호 개정, iii) LED만을 사용하는 조명기구와 그 밖의 조명기구를 6단위 소호 레벨에서 구분하기 위한 제9405호의 개정 등이다.



<LED 램프(제8539호)>



<휴대용 LED
램프(제8513호)>



<LED 서치라이트(제9405호)>



<다양한 형태의 LED 모듈(?)>

EU의 개정안에서 가장 초점이 되는 부분은 여러 개의 LED 칩이 조립된 모듈(또는 어셈블리)의 분류문제이다. 이러한 모듈은 완성된 램프나 조명기구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8513호, 제8539호나 제9405호에 분류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모듈의 기판 위에는 LED와 다이오드만이 아니라 전기제어를 위한 변환회로, IC, 커패시터 등 다양한 구성 부품이 추가되어 있어 제8541호에 분류할 수도 없다. EU는 이러한 모듈을 제8539호에 포함시키도록 제8539호의 용어와 소호 체계 개정을 제안한 것이다.

검토소위원회는 EU의 제안에 큰 틀에서 동의하면서도 그 전에 선결되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 제8541호, 제8539호, 제9405호 등에 분류되는 LED 제품의 구분(특히 제8541호에 포함되는 LED 제품의 범위)
- 패키지, 모듈, 어셈블리 등 용어의 정의
- 모듈과 램프의 범위가 중복되는 문제
- LED의 정의와 관련한 용어 사용의 문제
- OLED나 PhLED 등도 LED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2) 반도체 기반 변환기(transducer) 개념과 제8541호의 확대

EU 개정안에 대한 검토소위원회에서의 토론은 제8541호의 범위 문제까지 확대되었다. 검토소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개정안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던 EU는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transducer)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 물품을 제8541호 호의 용어에 포함시키도록 개정안을 확대하였다. EU는 이 트랜스듀서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는 반도체 기반 센서·반도체 기반 액추에이터·반도체 기반 공진기·반도체 기반 오실레이터를 말하며 개별 반도체 기반의 디바이스로 어떠한 종류의 물리적·화학적 현상·활동도 전기적 신호로 바꾸거나 전기적 신호를 물리적인 현상·활동으로 바꾸는 기능을 본질적으로 수행하는 디바이스를 말한다.

현재 제8542호의 복합부품 집적회로(MCO IC)의 정의에서 위 설명과 유사한 문구를 발견할 수 있다.

제85류 주 9 (HS 2017)

9. 제8541호와 제8542호에서 (중략)

나. "전자집적회로"란 다음 물품을 말한다. (중략)

4)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 하나 이상의 모노리식, 하이브리드 또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다음 구성부품을 최소한 하나 이상 결합한 것이다 :

실리콘 기반 센서·액추에이터(actuators)·오실레이터(oscillators)·공진기(resonators) 및 이들의 결합물, 또는 제8532호·제8533호·제8541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 또는 제8504 호에 분류되는 유도자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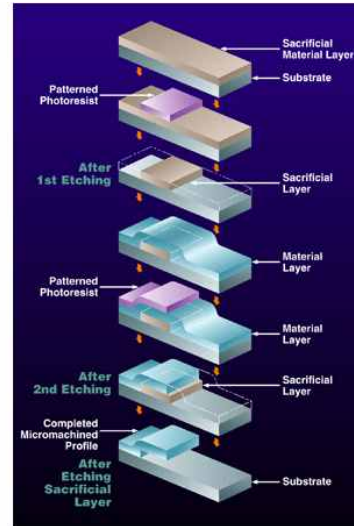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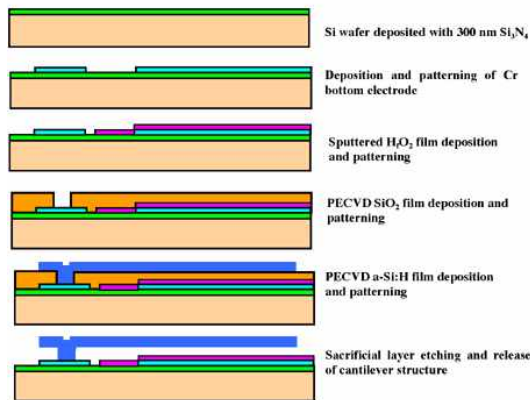
이 정의에서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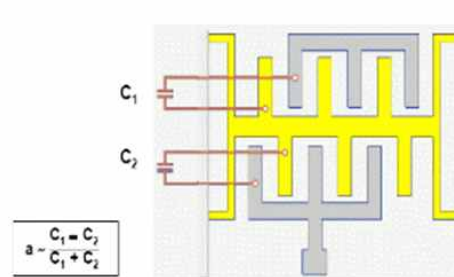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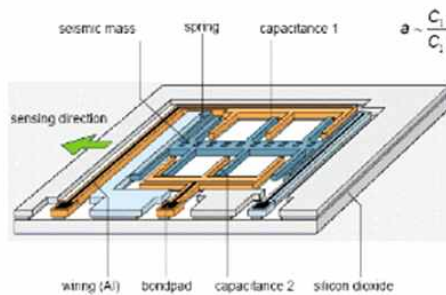
나) "실리콘 기반"이란 실리콘 기판 위에 조립되었거나, 실리콘 재료로 제작되었거나 또는 집적회로 다이(die) 위에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 (1) "실리콘 기반 센서"는 마이크로전자 또는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것으로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지고, **물리적·화학적 양을 감지해 이를 전기신호(전기적 속성의 변화 또는 기계구조 변위의 결과로 발생)로 변환하는 기능**을 한다. "물리적 또는 화학적 양"은 압력, 음파, 가속, 진동, 운동, 방위, 왜력, 자기장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 빛, 방사능, 습도, 흐름, 화학물질의 농도 등 실제 현상과 관련된 것이다.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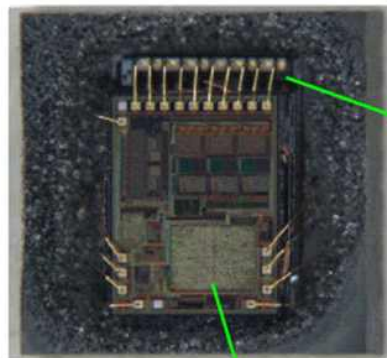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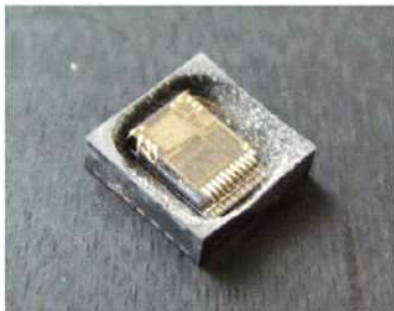
제85류 주9(HS 2017)에서 언급한 복합부품 집적회로의 구성요소 중 실리콘 기반의 센서, 액추에이터, 오실레이터, 공진기 등이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에 해당하는 것일 수 있다. 흔히 MEMS(Micro Electro-Mechanical System) chip이라 불리는 이들 물품은 반도체 기술(증착, 노광, 식각 등)을 이용하여 실리콘 다이 위에 초미세 규모로 적층된 기계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보통 정전용량의 변화에 의하여 외부의 물리적·화학적 현상을 감지하고 출력하는 물품이다.



<MEMS chip 제조공정>



<MEMS chip 작동원리 다이어그램(3축 가속도 센서)>

하단 칩
(MEMS chip)

상단 칩(ASIC IC)

<MEMS chip(3축 가속도 센서)이 결합된 MCO IC>

이들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는 현재의 기준으로는 제8541호의 반도체 디바이스에도 해당하지 않고 제8542호의 모노리식 집적회로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검출하는 대상(온도, 압력, 가속도 등)에 따라 제90류의 해당 호에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22년 HS에서는 제8541호에 이러한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가 분류될 수 있

도록 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현재 기준으로는 제90류에 분류가능한 센서의 상당수가 제8541호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제8541호는 그 밖에도 LED를 6단위 소호에서 특제하는 한편, IRENA(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 요청에 따라 광전지와 광전지 모듈을 6단위 소호에서 특제하는 개정까지 함께 반영하였다.

3) 조명기구에 관한 제9405호의 개정

EU의 최초 개정안은 제9405호의 각 5단위 소호 내에서 LED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조명기구와 그 밖의 조명기구를 구분하는 6단위 소호를 신설하는 것만 포함하였다. 그러나 논의과정에서 제9405호(램프와 조명기구)의 영문판 용어와 불문판 용어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까지 발견되었다. 영문판 호의 용어는 “lamps and lighting fittings”인 반면, 불문판은 “appareils d’éclairage”¹⁹⁾로 되어 불문판에서는 ‘램프(lamp)’라는 단어가 호의 용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결국 검토소위원회는 제9405호의 영문용어를 “램프와 조명기구 (lamps and lighting fittings)”에서 “조명기구(luminaires and lighting fittings)”로 변경하는 것까지 개정폭을 확대하였고 이 개정으로 인하여 품목분류표 전반에 걸쳐 제9405호를 참조하는 주 규정²⁰⁾을 모두 개정하는 것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 밖에도 제9405호는 IRENA(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 요청에 따라 광전지를 사용하는 조명기구를 제9405.41소호에 특제하였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제85류 주11 신설	11. 제8539호에서 “발광다이오드(LED) 광원”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발광다이오드(LED) 모듈”은 전기회로 내에 정렬된 발광다이오드를 기반으로 하며 전기·기계·열·광학 부품과 같은 추가적인 부품을 포함하는 광원을 말한다. 이들은 또한 전력의 공급이나 제어를 위하여 개별능동부품, 개별수동부품 또는 제8536호나 제8542호의 물품을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모듈	

19) 영어로는 “lighting appliances”에 해당함

20) 예를 들어, 제68류 주 제1호 차목에서는 이 류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 “차. 제94류의 물품(예: 가구·램프와 조명기구 (lamps and lighting fittings)·조립식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은 기계적 전기적 접촉을 원활히 하고 조명기구에 쉽게 갈아끼울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캡을 갖추고 있지 않다. 나. “발광다이오드(LED) 램프”는 전기·기계·열·광학 부품과 같은 추가적인 부품을 결합한 하나 이상의 LED 모듈을 포함하는 광원을 말한다. 발광다이오드 모듈과 발광다이오드 램프의 차이점은 램프는 기계적 전기적 접촉을 원활히 하고 조명기구에 쉽게 갈아끼울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캡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제85류 주12(현행의 주9) 가목 9. 제8541호와 제8542호에서 가.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電界)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디바이스를 말한다.	12. 제8541호와 제8542호에서 가. 1)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電界)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디바이스나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를 말한다. 반도체 디바이스는 보조적 기능을 하는 능동·수동부품을 장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수 부품의 조립품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 정의에서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는 반도체 기반 센서·반도체 기반 액추에이터·반도체 기반 공진기·반도체 기반 오실레이터를 말하며 개별 반도체 기반의 디바이스로 어떠한 종류의 물리적·화학적 현상·활동도 전기적 신호로 바꾸거나 전기적 신호를 물리적인 현상·활동으로 바꾸는 기능을 본질적으로 수행하는 디바이스를 말한다.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의 모든 부품은 분리불가능하게 결합되어 있고 이들의 구성이나 기능을 가능하게 하도록 분리불가능하게 부가된 필수적인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다음의 각 표현은 아래의 설명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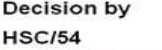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가) “반도체 기반”이란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제조되었거나 반도체 재료로 만들어졌거나 반도체 기술로 제조되어 반도체 기판이나 재료가 트랜스듀서 기능과 성능에 핵심적이고 대체불가능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작동은 물리적·전기적·화학적·광학적 특성을 포함한 반도체 특성에 기인한다. 나) “물리적 또는 화학적 현상”은 압력, 음파, 가속, 진동, 운동, 방위, 왜력, 자기장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 빛, 방사능, 습도, 흐름, 화학물질의 농도 등의 현상과 관련된 것이다. 다) “반도체 기반 센서”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한 형태로 마이크로전자 또는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것으로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지고, 물리적·화학적 양을 감지해 이를 전기신호(전기적 속성의 변화 또는 기계구조 변위의 결과로 발생)로 변환하는 기능을 한다. 라) “반도체 기반 액추에이터”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한 형태로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지고, 전기적 신호를 물리적인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전자와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부품이다. 마) “반도체 기반 공진기”란 반도체 디바이스의 한 형태로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지고, 외부 신호에 반응하여 구조물의 물리적인 기하학적 성질에 의해 미리 규정된 주파수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진동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전자와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부품을 말한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바) “반도체 기반 오실레이터(oscillators)”란 반도체 디바이스의 한 형태로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지고, 구조물의 물리적인 기하학적 성질에 의해 미리 규정된 주파수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진동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전자와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능동 부품을 말한다. 2) “발광다이오드(LED)”란 반도체 물질에 기반하여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적외선·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반도체 디바이스로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되었는지에 관계없으며 보호용의 다이오드를 결합하였는지도 관계없다. 제8541호의 발광다이오드는 전력공급이나 제어를 위한 부품을 장착하고 있지 않다.	
제85류 주12(현행의 주9) 나목 4)다)(1) 나. “전자집적회로”란 다음 물품을 말한다. (중략) 4)다)(1) “실리콘 기반 센서”는 마이크로 전자 또는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것으로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지고, 물리적·화학적 양을 감지해 이를 전기신호(전기적 속성의 변화 또는 기계구조 변위의 결과로 발생)로 변환하는 기능을 한다. “<u>물리적 또는 화학적 양</u>”은 압력, 음파, 가속, 진동, 운동, 방위, 왜력, 자기장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 빛, 방사능, 습도, 흐름, 화학물질의 농도 등 실제 현상과 관련된 것이다.	4)다)(1) “실리콘 기반 센서”는 마이크로 전자 또는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것으로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지고, 물리적·화학적 현상을 감지해 이를 전기신호(전기적 속성의 변화 또는 기계구조 변위의 결과로 발생)로 변환하는 기능을 한다. “<u>물리적 또는 화학적 현상</u>”은 압력, 음파, 가속, 진동, 운동, 방위, 왜력, 자기장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 빛, 방사능, 습도, 흐름, 화학물질의 농도 등의 현상과 관련된 것이다.	
85.39 -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램프	85.39 -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	
8539.50 -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램프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	소호 +1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8539.51 - 발광다이오드(LED) 모듈 8539.52 - 발광다이오드(LED) 램프	
85.41 -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 - 반도체 디바이스(예 : 다이오드·트랜지스터·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다른 발광다이오드와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40 -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와 발광다이오드	-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와 발광다이오드 8541.41 -- 발광다이오드 8541.42 -- 광전지(모듈에 조립되지 않고 패널로 구성되지도 않은 것) 8541.43 -- 광전지(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된 것) 8541.49 -- 기타	
8541.50 -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	-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 8541.51 --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8541.59 -- 기타	
94.05 - 램프·조명기구(lamps and lighting fitting)[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생략)]	94.05 - 조명기구(luminaires and lighting fitting)[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생략)]	
9405.10 - 샹들리에(chandelier)와 그 밖의 천장용·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공공공지(公共空地)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 샹들리에(chandelier)와 그 밖의 천장용·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공공공지(公共空地)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9405.11 -- 발광다이오드(LED)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 9405.19 -- 기타	소호 +6
9405.20 - 전기식의 테이블·책상·침대·마루스탠드 램프	- 전기식의 테이블·책상·침대·마루스탠드 조명 9405.21 -- 발광다이오드(LED)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 9405.29 -- 기타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9405.30 -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세트	-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스트링 9405.31 -- 발광다이오드(LED) 광원에 전용 되도록 설계제작된 것 9405.39 -- 기타	
9405.40 -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 그 밖의 전기식 조명기구 9405.41 -- 태양전지를 사용하는 것(발광다이오드(LED)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9405.42 -- 기타(발광다이오드(LED)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9405.49 -- 기타	
9405.50 -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9405.50 -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9405.60 -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9405.61 -- 발광다이오드(LED)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 9405.69 -- 기타	

2022년 개정에 따라 HS에서 LED 제품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종전의 HS에서도 이미 제8541호에 포함되던 개별 부품으로서의 반도체 칩은 시스템 내에서의 신호 표시를 위한 것이든 조명기구나 램프의 최소 element로 만들어진 것이든 상관없이 제8541호에 분류된다. 제8541호에는 개별 LED 칩만이 아니라 LED를 두 개 이상 모듈화 한 것을 포함하는데, 여기에는 보호용 다이오드가 결합된 것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이들 모듈에 제어회로(제8504호나 제8542호의 물품 포함되어 전력변환이나 안정용의 회로를 구성)가 포함된 경우 제8541호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이러한 상태의 모듈은 보통 제8539.51 소호의 LED 모듈을 구성하게 되며, 이 상태에서 전구나 튜브 등 하우징에 장착되어 가정용의 전원이나 소켓이 꽂을 수 있는 독립된 램프 형상으로 만들어지면 제8539.52소호의 LED 램프가 된다. LED 모듈이나 LED 램프가 실내, 옥외, 도로 등에서 사용되는 조명기구를 구성하여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9405호에 분류된다.

LED Product	  	 	 	 	 
	LEDs Including assembled articles without control circuitry 85.41		LED Light source LED module LED lamp with control circuitry 85.39		LED Luminaire 94.05

<2022년 HS에서 LED 제품의 품목분류>

2022년 HS는 제9405호의 각 5단위 호에서 조명기구들을 LED 광원만을 사용하는 것과 그 밖의 것을 구분함으로써 LED를 기반으로 한 제품의 사용과 거래가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문제는 실무적인 레벨에서 LED 광원만을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일 텐데, 제9405.1 소호의 상들리에의 경우 디자인 측면에서 LED 광원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제품과 종래의 상들리에를 구분하는 것은 크게 어려워보이지 않는다. 보통 전구나 튜브 형상의 램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조명기구는 LED만이 아니라 다른 광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LED 광원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보드나 바(bar) 타입의 LED 모듈만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전통적 형태의 상들리에(왼쪽)와 LED 광원에 전용되는 새로운 형태의 상들리에>

18. 제17부 수송기기에 관한 개정

1) 전기차 관련 제87류 개정과 “왕복식(reciprocating)” 피스톤 엔진의 문제

제5차 Review-cycle(2017년 HS)에서는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발전 동향을 반영하여 제8702호(10인승 이상 자동차), 제8703호(10인승 미만 승용차), 제8711호(모터사이클 등)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을 위한 소호를 대폭 신설하였다. 제53차 검토소위원회(‘13.11월)에서 EU는 승용차나 모터사이클뿐 아니라 트랙터(제8701호)와 화물차(제8704호) 분야에도 경량 차량의 경우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관련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검토소위원회는 대체로 EU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접근하였고, EU의 제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EU의 개정안 중 일부 소호의 용어에서 엔진의 형태를 명시할 때 표현상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U가 제안한 제8704호 개정안 중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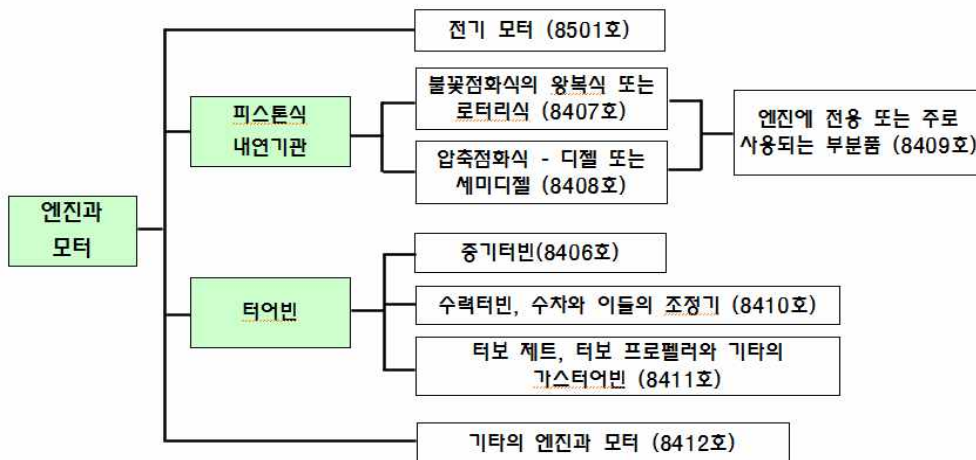
8704.3 - 기타,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

8704.5 - 기타, 불꽃점화식 **왕복(reciprocating)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즉, 불꽃점화식(가솔린) 피스톤 내연기관을 표현할 때, “왕복식(reciprocating)”이라는 표현을 어느 소호에서는 포함시키고 어느 소호에서는 제외한 비일관성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논의과정에서 이 표현은 제87류 여러 호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사전적 정의로, 엔진(또는 모터)이란 특정형태의 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꾸어주는 기계를 말하며, 그 종류로는 내연기관과 외연기관을 포함한 열 엔진, 전기 모터, 공기 압식 엔진이나 액압식 엔진 등이 있다.²¹⁾ HS 품목분류표에서 엔진의 분류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21) An engine or motor is a machine designed to convert one form of energy into mechanical energy. Heat engines, including internal combustion engines and external combustion engines (such as steam engines), burn a fuel to create heat, which then creates a force. Electric motors convert electrical energy into mechanical motion; pneumatic motors use compressed air and others such as clockwork motors in wind-up toys use elastic energy. In biological systems, molecular motors, like myosins in muscles, use chemical energy to create forces and eventually motion. -Wikipedia



<엔진 또는 모터의 분류체계>

이들 중 자동차에 주로 사용되는 핵심적인 엔진은 제8407호의 불꽃점화식(가솔린) 내연기관과 제8408호의 압축점화식(디젤) 내연기관이다. 제8407호와 제8408호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84.07 -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Spark-ignition **reciprocating or rotary**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s)

84.08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Compression-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

정리하자면, HS 품목분류표에서 피스톤식 내연기관은 두 개의 호(제8407호(가솔린)와 제8408호(디젤))에 나뉘어 분류되며, 제8407호의 피스톤 엔진의 경우 로터리식(시장에서는 보통 반켈(wankel) 엔진²²⁾이라고 표현)과 왕복식 두 가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제8407호의 용어는 제87류의 관련 소호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자동차 업계에서 사용하는 가솔린 내연기관은 거의 대부분 왕복식 엔진이며, 로터리식 엔진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은 가솔린 내연기관을 언급하면서 굳이 “왕복식(reciprocating)”이라는 제한을 둘 필요가 없음을 지적하였고 한국의 지적에 따라 검토소위원회는 EU의 제안에서 이 표현을 삭제하는 한편, 제87류의 몇몇 소호에 있던 표현도 함께 삭제하기로 하였다.

22) 그러나 시장에서는 wankel 엔진은 간단히 로터리 엔진이라고 표현하지 로터리식 피스톤 엔진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즉, wankel 엔진에 사용되는 삼각형 디스크를 피스톤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제8407호 호의 용어는 시장의 분류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2) 자동차용 유리의 품목분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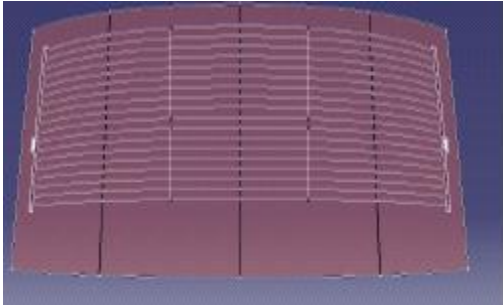
HS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와 접합유리)가 분류되며, 제7007.11 소호와 제7007.21 소호에는 “차량·항공기·우주선·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호 해설서는 “이 유리는 자동차의 방풍유리와 창유리·문 유리·선박의 선창용 유리 등에 사용”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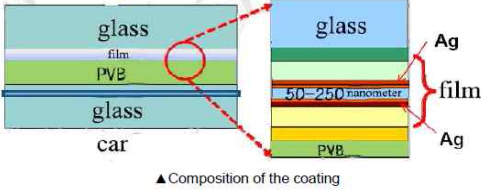
반면, 제8708호 해설서는 자동차용 부분품으로서 틀을 붙인 창(framed window)을 예시하고 있으며, 제8803호 해설서 또한 항공기 등의 부분품으로서 창(window)을 예시하고 있다.

해설서의 맥락으로 보자면 차량 등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으로 절단·절곡되고 가장자리 연마 등 마감처리된 유리까지는 제7007호에 남되, 이 유리를 틀에 장착하였거나 추가적인 부품을 결합한 것은 제17부에 분류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완성된 차량용의 유리(창문용 또는 전후방 윈드쉴드용)가 프레임에 장착되었거나 다른 구성부품을 추가한 것이 외형적으로 명백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유리에 단열이나 가열을 위한 추가적인 처리를 한 경우(예를 들면, 단열필름이나 반사시트를 적층하였거나 가열용 저항선을 도포 또는 인쇄한 경우 등)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제52차 검토소위원회(‘17.5월)에서 중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제60차 HS 위원회에 몇 가지 사례가 될 만한 자동차용 window의 품목분류 안건을 제출하였다. HS 위원회에서 품목분류 결정된 물품은 다음과 같다.

품명	형태 및 구성	HSC 분류결과
Coated Heating Automotive Window	 자동차 전방 윈드쉴드용 접합유리로 유리의 실내쪽 방향에 두께 50~250 nm의 메탈 필름이 적층되었고, 메탈 필름은 커넥터로 전원에 연결되어 저항가열체 역할을 함(유리표면의 서리와 눈 제거)	제8708.29호

품명	형태 및 구성	HSC 분류결과
Print Heating Automotive Window	 자동차 전방 윈드실드용 접합유리로 스크린 프린팅 기술로 실버 페이스트를 유리표면에 인쇄하였고, 실버 페이스트는 커넥터로 전원에 연결되어 저항가열체 역할을 함 (유리표면의 서리와 눈 제거)	제8708.29호
Automotive Window with Moulding Strip	 자동차 전방 윈드실드용 접합유리로 가장 자리에 고무 고무 스트립(프로파일)이 장착된 형태. 고무 스트립은 유리에 영구적으로 결합되어 차체에 함께 조립됨	제8708.29호
Automotive Glass with HUD (Head Up Display)	 자동차 전방 윈드실드용 접합유리로 두 장의 유리 사이에 반사필름 층이 들어있어 자동차의 HUD(Head Up Display)에서 출력된 정보를 보여주는 스크린 역할 수행 (전기적 기능은 없음)	제7007.21호
Automotive Glass with Coated Heat Reflection		제7007.21호

품명	형태 및 구성	HSC 분류결과
	 ▲ Composition of the coating 자동차 전방 윈드실드용 접합유리로 두 장의 유리 사이에 열반사필름 층이 들어있어 단열 및 선팅 기능 수행 (전기적 기능은 없음)	

HS 위원회의 분류결과에 따라 검토소위원회는 자동차용 유리에 전기적인 부품(인쇄된 저항체)이 함께 형성되어 있는 경우 틀에 끼운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8708호에 분류하도록 제8708.22소호와 이 소호에 대한 소호주(제84류 소호주 1)를 신설하는 개정안에 합의하였다.

3) 드론의 품목분류와 HS 개정

HS 제8802호에는 각종의 항공기, 우주선, 인공위성, 로켓 등이 분류되며, 이 호의 항공기에는 무인기(Unmanned aircraft)도 포함된다.



<정착용 무인기(왼쪽)와 전투용 무인기(오른쪽) - 제8802호>

앞서 제7절(7. 군민 양용(dual use) 품목과 관련한 개정)에서 언급하였듯이, 군민양용 물품에 대한 HS 개정차원에서 제8802호의 각 5단위 소호그룹에서 무인기와 기타 항공기를 구분하는 6단위 소호 개정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WCO 사무국은 드론에 대한 HS 개정문제를 보다 큰 틀에서 검토하여야 하다고 판단하여 검토소위원회에서 별도의 안건으로 논의되도록 하였다.

그 전에 제55차 HS 위원회('15.3월)는 디지털 카메라가 장착된 소형의 드론의 품목분류를 검토한 바 있다.



쟁점물품은 4개의 로터가 달린 쿼드콥터 형태의 드론으로 디지털 카메라가 영구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항공촬영 목적으로 전용되는 물품이다. 드론의 비행과 카메라 조작용 무선원격조절기에서 수행하며 카메라에 wifi 모듈이 장착되어 있어 카메라와 휴대폰을 연동하여 카메라에서 획득한 영상을 휴대폰 스크린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다. (크기 29 × 29 × 18 cm, 무게 1,160 그램)

HS 위원회는 제8525호의 디지털 카메라, 제8802호의 항공기, 제9503호의 완구를 쟁점세번으로 검토하여 투표를 거쳐 이 물품을 제8525호에 분류하였다. 이 결정의 문제점은 (제9503호에 분류되는 완구를 제외한다면) 상용화된 드론을 그 용도나 구성에 따라 각각 달리 분류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스파이 드론>



<배달용 드론>



<농업용(농약살포) 드론>

제6차 Review-Cycle에서는 이와 같은 드론을 용도에 관계없이 하나의 호에 통합할 수 있도록 제8806호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확정하고 전체 류의 체계상 기존의 제8803호를 삭제하고 제8807호를 신설하여 제88류의 항공기 부분품을 이 호에 분류토록 하였다.

드론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2022년 HS에 신설되는 제8806호의 무인기(Unmanned aircraft)란 조종사 없이(pilot-less) 원격조종이나 사전에 설정된 자동비행 프로그램에 의하여 조종되는 항공기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람이 타지 않는 항공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파일럿 없이 승객만을 태우는 항공기(Unmanned passenger aircraft)도 제8806호에 포함될 수 있다.



<Boeing사는 승객용 무인기의 시험비행에 성공하였다. ('19.1.23, 사진출처 : <https://southsoundbiz.com/>)>

4) 유람용의 선박(제8903호)에 대한 개정

제53차 검토소위원회('17.11월)에서 EU는 제8903호가 HS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면서 레저 목적으로 소형 선박 거래 규모가 확대되었음을 근거로 제8903호의 소호 분류체계를 세분화(각 그룹별로 중량과 선체의 길이에 따라 6단위 소호로 세분류)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EU의 제안한 개정안에는 인플래터블 보트의 범위 확대도 포함된다. 2017년 HS에서 제8903.10 소호에는 인플래터블식 보트가 분류되는데, 이는 구명용 또는 레저용의 고무 보트처럼 공기를 주입하여 탑승하는 보트를 말한다. 2022년 HS에서는 선체 자체는 (전체 또는 일부가) 단단한 재질로 만든 보통의 배의 형상을 띠더라도 안전을 위한 공기 주입식의 보강용 링(주로 선체의 상부를 구성)이 결합된 견고한 선체를 갖춘 인플래터블 보트(rigid hull inflatable boat)도 이 범주에 포함되도록 개정되었다.



<견고한 선체를 갖춘 인플래터블 (Rigid hull inflatable) 보트>

제17부 수송기기와 관련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제70류 주1 라목·마목 신설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다. (생략) <신설>	라. 제86류부터 제88류의 이동수단 (vehicle)용의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실드)·후방창문과 그 밖의 창문(틀에 끼운 것에 한한다) 마. 제86류부터 제88류의 이동수단 (vehicle)용의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실드)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드) · 후방창문과 그 밖의 창문(틀에 끼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가열장치나 그 밖의 전기·전자장치가 결합된 것에 한한다)	
제87류 소호주 신설 <신설>	소호주 1. 제8708.22소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기 적합한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가.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쉴드) · 후방창문과 그 밖의 창문(틀에 끼운 것에 한한다) 나.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쉴드) · 후방창문과 그 밖의 창문(틀에 끼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가열장치나 그 밖의 전기·전자장치가 결합된 것에 한한다)	
8701.20 -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8701.21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만을 갖춘 것 8701.22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8701.23 --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8701.24 -- 추진용 전동기만 갖춘 것 8701.29 -- 기타	소호 +4
8702.30 - 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 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8702.30 -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8703.2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 만을 갖춘 것)	8703.2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만을 갖춘 것)	
8703.40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 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8703.40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8703.60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 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8703.60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 그 밖의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의 것 8704.2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8704.22 --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 8704.23 --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 기타(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으로 한정한다) 8704.3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8704.32 -- 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 8704.90 - 기타	- 기타,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만을 갖춘 것 8704.2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8704.22 --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 8704.23 --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 기타,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 8704.3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8704.32 -- 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 - 기타,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8704.4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8704.42 --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 8704.43 --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 기타,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8704.5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8704.52 -- 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 8704.60 - 기타, 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소호 +5
<신설>	8708.22 -- 이 류의 소호주 1에 규정된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쉴드), 후방 창문 및 기타 창문.	소호 +1
8711.10 - 실린더용량이 50cc 이하인 왕	8711.10 - 실린더용량이 50cc 이하인 피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8711.20 -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초과 250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8711.30 - 실린더용량이 250시시 초과 500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8711.40 - 실린더용량이 500시시 초과 800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8711.50 - 실린더용량이 800시시를 초과하는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스톤 내연기관의 것 8711.20 -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초과 250시시 이하인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8711.30 - 실린더용량이 250시시 초과 500시시 이하인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8711.40 - 실린더용량이 500시시 초과 800시시 이하인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8711.50 - 실린더용량이 800시시를 초과하는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제88류 주1 신설	1. 이 류에서 “무인기”라 함은 제8801호의 것을 제외하고 기내의 조종사가 없이 비행하도록 설계제작된 모든 항공기를 말한다. 이들은 유료화물을 수송하도록 설계제작되었거나 비행중에 실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장착된 디지털 카메라나 기타의 장치를 갖추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인기”에는 오로지 유희의 목적으로만 설계제작된 날아다니는 완구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9503호)	
제88류 소호주2 신설	2. 제8806.21소호부터 제8806.24소호까지, 제8806.91소호부터 제8806.94소호까지에서 “최대이륙중량”이라 함은 적재중량, 장비와 연료를 포함하여 보통의 비행조건에서 이륙시의 최대 중량을 말한다.	
88.02 - 그 밖의 항공기(예: 헬리콥터·비행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서보비틀(suborbital), 우주선 운반로켓	88.02 - 제8806호의 무인기를 제외한 그 밖의 항공기(예: 헬리콥터·비행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서보비틀(suborbital), 우주선 운반로켓	
88.03 - 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8803.10 - 프로펠러·로터(rotor)와 이들의	<삭제>	호 -1 소호 -4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부분품 8803.20 - 기체 지지부와 그 부분품 8803.30 -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8803.90 - 기타		
<신설>	88.06 - 무인기 8806.10 - 승객을 수송하도록 설계제작된 것 - 기타, 원격조종 비행만 가능한 것 8806.21 -- 최대이륙중량이 250 그램 이하 인 것 8806.22 -- 최대이륙중량이 250 그램을 초 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것 8806.23 --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 킬로그램 이하인 것 8806.24 --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50 킬로그램 이하인 것 8806.29 -- 기타 - 기타 8806.91 -- 최대이륙중량이 250 그램 이하 인 것 8806.92 -- 최대이륙중량이 250 그램을 초 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것 8806.93 --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 킬로그램 이하인 것 8806.94 --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50 킬로그램 이하인 것 8806.99 -- 기타	호 +1 소호 +11
<신설>	88.07 - 제8801호 · 제8802호 · 제8806호 물품의 부분품 8807.10 - 프로펠러 · 로터(rotor)와 이들의 부분품 8807.20 - 기체 지지부와 그 부분품 8807.30 - 비행기 · 헬리콥터 · 무인기의 그 밖의 부분품	호 +1 소호 +4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8807.90 - 기타	
89.03 - 요트, 유람용이나 운동용 그 밖의 선박,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 8903.10 -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 기타 8903.91 -- 범선(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903.92 -- 모터보트[아웃보드 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는 제외한다] 8903.99 -- 기타	89.03 - 요트, 유람용이나 운동용 그 밖의 선박,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 - 인플랫터블(inflatable)식[견고한 선체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8903.11 -- 모터가 결합되었거나 결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짐을 싣지 않은 순중량(모터를 제외한다)이 100 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8903.12 -- 모터를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되지 않은 것[짐을 싣지 않은 순중량이 100 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8903.19 -- 기타 - 범선(인플랫터블식을 제외하며 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903.21 -- 길이가 7.5 미터 이하인 것 8903.22 -- 길이가 7.5 미터를 초과하고 24 미터 이하인 것 8903.23 -- 길이가 24 미터를 초과하는 것 - 모터보트[인플랫터블식을 제외하며 아웃보드 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를 제외한다] 8903.31 -- 길이가 7.5 미터 이하인 것 8903.32 -- 길이가 7.5 미터를 초과하고 24 미터 이하인 것 8903.33 -- 길이가 24 미터를 초과하는 것 - 기타 8903.93 -- 길이가 7.5 미터 이하인 것 8903.99 -- 기타	소호 +7

19. 임플란트용 스크루와 ‘범용성’ 부분품의 문제

2015.3월, 제55차 HS 위원회는 복합골절의 치료에 사용되는 아래의 티타늄 스크루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쟁점물품(티타늄 스크루)>

<쟁점물품의 적용 사례>

물품설명 : 나사산이 형성된 원통형의 견고한 제품으로 길이 약 12 mm 가량의 고강도의 착색 처리된 티타늄 합금으로 제조됨. 비대칭형으로 나선 가공된 몸통 부분의 지름은 전 길이에 걸쳐 3 mm로 일정하며 頭部(head)가 있음. 두부 역시 나선 가공이 되어 있어 오목한 소켓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고정 시스템의 플레이트에 고정시킬 수 있음. 쟁점물품은 임플란트 스크루에 관한 ISO/TC 150 표준에 부합하며 골절 회복을 위한 외상 수술 분야에서 사용함. 이 물품은 특정한 공구를 이용하여 신체 내에 삽입되도록 만들어짐. 수입될 때에는 멸균 포장된 상태로 제시됨. 상품에는 고유번호가 찍혀있어서 생산 및 사용 전과정에서 추적이 가능함.

논의대상 물품은 복합골절치료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전형적인 비금속제 스크루의 형상을 띠고 있다. 심각한 골절의 경우 단순한 깁스만으로는 뼈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외과수술로 이 물품을 인체내에 삽입하여 골절된 부위의 뼈를 고정시킴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물품의 제조 목적이나 사용상의 표준 요건 등을 감안하면 의료용으로만 사용되는 물품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다만, 그 형태로 본다면 제15부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으로서의 스크루와 차이가 없다. 사용방법 또한 보통의 스크루와 유사한 형태로, 스크루가 부품과 부품의 고정을 위하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삽입되듯이 이 물품 또한 부러진 뼈를 결합하기 위하여 공구를 이용하여 인체 내에 삽입된다. 유일한 차이는 범용성 부분품으로서의 스크루는 보통 기구, 기계, 장비, 가구, 건물 등에 사용되는 반면 이 물품은 인체 내에 임플란트용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제15부 주2 가목은 볼트나 스크루 등 범용성 부분품은 그 용도에 관계없이 제15부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0류 주 제1호 바목에서도 제15부의 범용성 부분품은 제90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15부 주에서는 범용성 부분품의 정의나 기능 등에 대한 사전적인 설명 없이, 관 연결구류, 와이어, 못, 볼트와 너트, 스크루, 체

인, 스프링 등이 범용성 부분품에 포함되는 것으로만 정의하고 있다.

제15부 주 제2호의 맥락에서 본다면 범용성 부분품(parts for general use)이란 반드시 말 그대로 범용(general use)의 성격을 가지는 물품이라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연결구류, 와이어, 못, 볼트와 너트, 스크루, 체인, 스프링” 등은 그 용도에 관계없이 제15부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특정 용도로만 전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연결구류, 와이어, 못, 볼트와 너트, 스크루, 체인, 스프링” 등의 형상과 기능을 갖춘 물품은 범용성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주의 맥락에 따른다면 (심지어 인체에 매립하기 위한 의료용의 물품이라든) 제15부 주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의 형상을 띠고 있는 것이라면 범용성 부분품으로 분류하는데 문제가 없다.

반면 제9021호 해설서는 다음과 같은 예시를 두고 있다.

이 호의 주 제1호 바목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 또한 이 호에는 관·못 등으로서 골절된 두 부분의 접합 또는 이와 유사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외과의가 인체의 내부에 삽입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범용성 부분품의 품목분류를 앞선 맥락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 것이라면 위 해설서 규정은 제15부와 90류 주(Note)의 규정(즉, 법적 근거가 되는 부분)에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설서 규정과 주의 규정이 상충될 때, 해설서 내용으로 법적 용어를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텍스트의 해석을 엄격하게 한다면 쟁점물품(임플란트용 티타늄 스크루)은 제15부에 분류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S 위원회는 제9021호 해설서 내용이 주의 규정에 위배되는 소지가 어느 정도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당초 해설서 규정을 삽입한 취지는 이러한 물품을 제9021호에 분류하고자 하는 의도였음을 감안하여 (투표를 거쳐) 쟁점물품을 제9021호에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HS는 이 결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legal text(제15부 주 제2호와 제90류 주 제1호 바목)와 제9021호 해설서 내용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제15부 주2 가목 2.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	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임플란트로 전용되도록 특별히 고안된 것은 제외한다(제9021호)]	
제90류 주1 바목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그러나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의 임플란트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고안된 것은 제9021호에 분류한다.]	

20. 반도체 디바이스 측정 검사용 기기에 대한 개정

현재의 HS 제9030호 분류체계는 아래와 같다.

90.30 -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생략) - 전압·전류·저항·전력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9030.31 --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9030.32 --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9030.33 -- 기타(기록장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9030.39 --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9030.40 -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 - 그 밖의 기기
9030.82 --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9030.84 --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9030.89 -- 기타
9030.90 - 부분품과 부속품

제9030호에는 전기적 양의 측정·검사용 기기가 분류되며, 제9030.3 소호그룹에는 전압·전류·저항·전력을 측정하는 기기가, 제9030.8 소호그룹에는 앞의 5단위 소호에 분

류되지 않는 그 밖의 측정검사용 기기가 분류되며, 제9030.82 소호에는 제9030호의 의미 내에서의 전기적인 방법으로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를 측정·검사하는 기기가 분류된다. (광학적인 방법으로 반도체 웨이퍼를 검사하는 기기는 제9031.41 소호에 분류)

제9030.82 소호의 물품은 정보기술협정(ITA)에 의하여 0%의 양허관세가 적용되며, 보통 반도체나 집적회로 공정에서 각 단계별로 제조된 반도체 칩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한 장비들이 이 품목번호로 수입신고되고 있다.

문제는 HS 분류원칙상 반도체 측정검사용 기기가 이 소호에 분류될 수 없다는 점이다.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6호는 4단위 호가 결정된 이후 6단위 소호를 결정할 때,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의 소호의 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소호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 비교할 수 있다는 말은 5단위 소호(one-dash 소호)는 5단위 소호끼리, 6단위 소호(two-dash level)는 6단위 소호끼리 비교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통칙 6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분류원칙은 4단위 호가 결정된 이후 소호를 결정할 때는 먼저 5단위 소호들간 비교를 통하여 5단위를 확정하고, 그 5단위에서 또 세분류가 있을 때, 다시 그 5단위 소호 내의 6단위 소호들끼리 비교를 하여 최종적으로 6단위 소호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6단위 소호는 그 상위의 5단위 소호를 벗어날 수 없고, 5단위 소호는 4단위 호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반도체 디바이스 측정검사용 기기는 주로 생산된 반도체가 설계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반도체 디바이스에 특정 신호를 인가하여 그 신호에 따라 출력되는 신호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테스트가 이루어지며 그 입출력 신호는 대부분 전압, 저항과 같은 전기적인 양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품목분류를 검토하면, 제9030.3 소호 그룹은 전압, 전류, 저항 등의 측정용이고 이 소호 그룹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라야 제9030.8 소호그룹에 포함될 수 있다. 반도체 디바이스 측정검사용 기기는 이론적으로는 제9030.3 소호그룹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제9030.82 소호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이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제48차 검토소위원회(‘15.5월)에서 우리나라는 제9030호 분류체계, 특히 제9030.82 소호의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된 소호 용어 개정을 제안하였다. 또한 중국은 제9030.82소호와 제9031.41소호의 용어에서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검사용 기기라고 표현하는 데 따르는 해석상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호의 용어에 직접회로와

반도체용 마스크나 레티클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여 한국과 중국의 개정제안이 모두 이 소호들에 반영되었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9030.3 - 전압 · 전류 · 저항 · 전력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9030.3 - 전압 · 전류 · 저항 · 전력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은 제외한다]	
9030.82 --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9030.82 --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집적회로를 포함한다)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9031.41 -- 반도체 웨이퍼와 소자 검사용이나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photomask)나 레티클(reticle) 검사용	9031.41 -- 반도체 웨이퍼와 소자(집적회로를 포함한다) 검사용이나 반도체 소자(집적회로를 포함한다)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photomask)나 레티클(reticle) 검사용	

21. 테마파크와 인디애나 존스(미국의 제95류와 97류 개정 제안)

놀이공원의 나라 미국은 제52차 검토소위원회('17.5월)에서 롤러코스터를 포함한 놀이공원용 유희기구와 관련한 제95류 주 신설 및 제9508호 분류체계 개편을 제안하였다. HS 2017에서 회전목마나 그네, 롤러코스터 등의 놀이기구는 제9508호에 분류되나, 이 호의 소호는 단 2개(9508.10 - 순회서커스와 순회동물원 용품, 9508.90 - 기타)뿐이다.

미국은 관련 업계의 산업동향 분석을 통하여 테마파크 수입의 평균 55~65%는 놀이기구나 탈 것의 입장료에서 나오며,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판매고를 나타내고 있는 놀이기구(특히, 롤러코스터)들은 모두 만들어진지 15년 이내의 최신 기종들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새로 만들어지고 설치되는 롤러코스터는 그 크기와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평균적으로 미화 8백만불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며, 이러한 놀이기구의 제조, 판매, 설치 등과 관련된 산업이 매우 독립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고 이 분야의 세계시장이 2020년까지 연평균 7.5%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제9508호의 놀이기구 분류체계를 세분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그 밖에 미국은 제54차 검토소위원회('18. 5월)에서 예술품²³⁾·수집품·골동품 등에 대한 제97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제97류에 포함되는 물품들은 회화, 판화, 고고학적 수집품, 골동품 등 주로 상업적 가치보다는 문화적 가치와 연관된 물품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그간의 HS 개정연혁에서 크게 바뀌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

미국은 미술품이나 수집품, 골동품 등의 거래가 상업적인 규모 자체로도 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술품 등의 가격이 모호한 점 등의 이유로 정확하지 않은 금액으로 세관에 신고되거나 자금세탁, 탈세 등 불법적인 일에 악용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세관 통관과정에서의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97류 각 호의 내용을 세분하고, 특히 각 호에서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물품(제9706호는 250년을 초과한 물품)과 기타의 물품을 구분하여 이들 물품의 거래규모 파악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차원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검토소위원회는 몇 차례의 논의를 거쳐 미국이 제안한 개정 텍스트를 일부 수정하여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제95류 주6 신설 <신설>	6. 제9508호에서 가. "놀이공원의 탈 것(amusement park rides)"이란 주로 즐거움이나 오락을 목적으로 고정되거나 제한된 코스(수류(水流)를 포함한다)를 통하거나 정해진 영역 내에서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태우고 이동시키는 장치 또는 여러 장치와 설비의 조합을 말한다. 그러한 탈것은 놀이공원, 테마파크, 워터파크 내에 결합될 수 있다. 이러한 탈것은 주거지나 놀이터에 통상적으로 설치되는 종류의 것은 제외한다. 나. "워터파크 유희물(water park amusements)"은 건설된 통로 없이 물을 포함한 제한된 영역에서 사용하도록 특성화된 장치 또는 여러 장치와	

23) 제97류의 표제에는 참조의 편의상 예술품(works of art)이라 표현하지만 품목분류표상 어느 호의 용어나 주에서도 예술품을 언급하거나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설비의 조합을 말한다. 워터파크 유희물은 워터파크에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설비만을 포함한다. 다. 놀이공원용품(fairground amusements)이란 기회, 힘 또는 기술을 겨루는 게임으로 보통 조작자나 승무원들을 고용하며 영구적인 건물 안이나 독립된 구내상점 등에 설치된다. 놀이공원 유희용품은 제9504호의 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설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95.04 -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 · 오락용구 · 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 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 · 당구용구 · 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 · 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	95.04 -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 · 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 · 당구용구 · 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 · 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 · 코인 · 은행권 · 은행카드 · 토큰과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오락용 기계	
95.08 - 회전목마 · 그네 · 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그 밖의 놀이공원용품과 순회서커스 · 순회동물원 · 순회극장 용품 9508.10 - 순회서커스와 순회동물원 용품 9508.90 - 기타	95.08 - 순회서커스 · 순회동물원, 놀이공원의 탈 것 · 워터파크 유희물, 놀이공원용품(실내사격연습장용품을 포함한다), 순회극장용품 9508.10 - 순회서커스와 순회동물원 용품 - 놀이공원의 탈 것 · 워터파크 유희물 9508.21 -- 롤러코스터 9508.22 -- 회전목마 · 그네 · 회전놀이기구 9508.23 -- 범퍼카(Dodge'em car) 9508.24 -- 동작 시뮬레이션 기기 및 무빙씨어터(moving theatre) 9508.25 -- 물에서 타는 것 9508.26 -- 워터파크 유희물 9508.29 -- 기타 9508.30 - 놀이공원용품 9508.40 - 순회극장용품	
제97류 주2 신설 <신설>	2. 제9701호에는 대량으로 생산된 모자이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2~5. (생략)	크, 상업적 캐릭터의 수작업 작품 등은 이들이 예술가에 의하여 디자인되거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포함되지 않는다. 3~6. (생략)	
97.01 - 회화·데생·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llage)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9701.10 - 회화·데생·파스텔 9701.90 - 기타	97.01 - 회화·데생·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llage)·모자이크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 9701.21 -- 회화·데생·파스텔 9701.22 -- 모자이크 9701.29 -- 기타 - 기타 9701.91 -- 회화·데생·파스텔 9701.92 -- 모자이크 9701.99 -- 기타	소호 +4
97.02 -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	97.02 -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 9702.10 -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 9702.90 - 기타	소호 +1
97.03 -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97.03 -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9703.10 -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 9703.90 - 기타	소호 +1
97.05 -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97.05 - 수집품과 표본[고고학·민족학·사학·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고생물학·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9705.10 - 수집품과 표본[고고학·민족학·사학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고생물학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9705.21 -- 사람의 표본 및 그 일부분 9705.22 -- 멸종하였거나 멸종위기에 있는 종의 것이나 그 일부분 9705.29 -- 기타 - 수집품과 표본[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소호 +5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9705.31 --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 9705.39 -- 기타	
97.06 -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	97.06 -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 9706.10 - 제작 후 250년을 초과한 것 9706.90 - 기타	소호 +1

22. 그 밖의 개정

제6차 Review-cycle에서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들 중 일부는 기존의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보다 명확히 하거나 용어의 정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개정으로 호(heading) 사이의 물품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것도 있는 반면, 소규모의 물품이동이 뒤따르는 개정도 있다. 그리고 국제거래량 감소로 삭제되거나 거래량 증가에 따라 신설된 품목번호도 있다.

한국은 제60차 HS 위원회('17.9월)에서 사포닌 층이 제거된 퀴노아(quinoa)를 제1008호에 분류한 결정과 관련하여 제10류 주1 나목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2022년 HS에 반영되었다. 그 밖에 제3류 각 소호에서 명태의 분류학적 영문 명칭이 “Alaska Pollack”에서 “Alaska Pollock”으로 바뀐 것을 포함하여 어류, 과일 등의 분류학적 명칭을 수정하거나 영문판과 불문판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소한 편집상의 오류 정정 등이 있으나 국문 관세율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제4905.10호(지구의), 제6812.92호와 제6812.93호(석면으로 만든 종이, 판지, 시트), 제7419.10호(구리제의 체인), 제8107호(카드뮴과 그 제품), 제8507.40호(니켈-철 축전지), 제8519.50호(전화응답기), 제9006.51호와 제9006.52호(필름 카메라), 제9114.10호(시계 스프링) 등이 국제거래량 감소에 따라 삭제되었다.



<지구본과 필름 카메라(소호 삭제)>

IV. 맺음말

1. 사용자 친화적인 HS와 코드 수 증가의 문제

HS 6단위 코드 수는 1988년 제정 당시 5,019개를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 HS에서는 5,224개까지 늘어났다가 2007년 HS 개정시 불필요한 코드가 대폭 삭제되어 5,052개로 줄어들기도 했다. 이후 매 개정 때마다 6단위 코드의 수가 증가하여 2022년 HS에서는 5,611개에 이르게 되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HS가 추구하는 방향 중의 하나는 국제무역 동향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코드를 삭제하여 품목분류표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보다 쉽고 친화적인 도구로서의 역할을 제공하는 것이다. HS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는 수준의 적절한 코드 수가 얼마인지는 정의하기 어렵겠지만 지나치게 세분화된 분류체계가 사용자들에게 불편함과 어려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 늘어나고 있는 코드의 대부분은 FAO나 오존 협약 사무국 등 국제기구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본론 부분에서 설명했던 국제기구와 관련된 HS 개정은 지금까지 꾸준히 있어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WCO와 HS 위원회는 대체로 관련된 물품이 국제무역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따지지 않고 이들 국제기구가 추구하는 방향에 협조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제기구의 요청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HS 호나 소호의 수가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고, 합리적인 수준의 상한선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글쓴이의 생각이다.

향후 제7차, 제8차 Review-cycle에서도 이들 국제기구의 수요와 요청에 따른 HS 개정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차기 검토주기에서부터는 이들 국제기구의 취지와 방향을 수용하면서도 HS의 효율성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국제기구가 요청하는 물품 모두를 HS 4단위나 6단위 레벨에서 특개하는 것보다는 HS 위원회나 과학소위원회(Scientific Sub-Committee)에서 해당 물품이 분류되는 6단위 소호를 결정하고, 이러한 물품을 별도의 코드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6단위 소호 내에서 각 회원국이 자국의 품목분류표에 이를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2. HS 개정에 따른 우리나라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의 문제

우리나라는 국제공통의 HS 6단위를 세분류하여 10단위 분류체계로 운영하며 이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Harmonized System Korea, 기획재정부 고시)로 고시하고 있다. 2022년 HS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별표 관세율표 개정안,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 고시) 개정안 및 HS 해설서(관세청 고시) 개정안을 준비하여야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HS 개정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불필요한 세분류 체계를 간소화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쉽고 친화적인 품목분류표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HSK를 개정할 때도 이러한 HS의 기본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굳이 HS의 기본정신을 얘기할 것도 없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구해 온 전방위 FTA 정책으로 인한 다차원적 관세구조에서 HSK의 일관성·명확성·간결함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5년마다 HS 협약에 의한 품목분류표 개정을 반영하거나 ITA 등 새로운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율을 수용하기 위하여 HSK가 개정되는 경우 변경 전의 코드에 대한 정리 없이 기계적인 연계만을 추구하다 보니 HSK 체계는 계속해서 더 복잡해져 오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HS 개정에 따라 제4011호와 제6907호·제6908호 구조는 매우 간단해졌지만 HSK 레벨에서는 2017년 HS 개정 이전의 구조를 그대로 연계하면서 10단위 코드체계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또한 2017년 HS 개정시 MCO IC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면서 제8542호의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제8542호 내의 HS 6단위 분류체계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HSK에서는 2017년 HSK 개정시 MCO IC의 용도나 이전 HS에서의 분류기준에 따라 세분류하면서 수십 개의 10단위 코드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이 10단위 코드가 FTA 협정과 연계되면서 사실상 수백 개의 코드가 새로 생겨난 셈이 되었다.

이는 국제적인 6단위 기준에서는 전혀 쟁점이 없는 물품에 대해 국내 10단위 코드를 부여하면서 굳이 다시금 불필요하고 어려운 분류를 통하여 10단위 코드를 확정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HS 품목분류표 개정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사용자(수출입자, 정부기관, 통계학자 등)에게 명확하고 간편한 분류체계를 만드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HSK는 오히려 개정될 때마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분류체계를 만들어오고 있다. 이로 인해 수출입업자는 물론, 이 HSK를 토대로 품목번호를 부여해야 하는 관세당국의 입장에서조차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앞으로 HSK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좀 더 간결하면서 쉽고 명확한 분류체계와 세율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관련 기관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더욱이, 다차원 FTA 환경에서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려운 분류체계와 세율체계가 업계와 정부당국

스스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 아니다.

(끝)

부록	2022년 HS 개정(신구대조표)
----	--------------------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제2류 주1 나목 신설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생략) 나~다. (생략)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생략) 나. 먹을 수 있는 죽은 곤충(제0410호) 다~라. (생략)	
제3류 주3 신설 <신설>	3. 제0305호부터 제0308호에는 식용에 적합한 고운 가루, 거친 가루와 펠렛은 포함하지 않는다.(제0309호)	
0302.3 -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Euthynnus (Katsuwonus) pelamis)]. 다만, 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2.3 -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카추워누스 펠라미스)]. 다만, 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2.33 -- 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	0302.33 -- 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카추워누스 펠라미스)]	
0302.55 -- 명태(Alaska Pollack)[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0302.55 -- 명태(Alaska Pollock)[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0303.4 -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Euthynnus (Katsuwonus) pelamis)]. 다만, 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4 -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카추워누스 펠라미스)]. 다만, 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43 -- 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	0303.43 -- 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카추워누스 펠라미스)]	
0303.67 -- 명태(Alaska Pollack)[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0303.67 -- 명태(Alaska Pollock)[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0304.75 -- 명태(Alaska Pollack)[테라그라	0304.75 -- 명태(Alaska Pollock)[테라그라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0304.87 -- 가다랑어 · 줄무늬 버니토	0304.87 -- 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카추워 누스 펠라미스)]	
0304.94 -- 명태(Alaska Pollack)[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0304.94 -- 명태(Alaska Pollock)[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0304.95 -- 브레그마세로티대 (Bregmacerotidae)과 · 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 (중략)... 무라에놀레피디대 (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명태(Alaska Pollack)(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는 제외한다]	0304.95 -- 브레그마세로티대 (Bregmacerotidae)과 · 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 (중략)... 무라에놀레피디대 (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명태(Alaska Pollock)(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는 제외한다]	
03.05 -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5 -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3.06 -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 냉장이나 냉동한 것 · 건조한 것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 · 건조한 것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갑각류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6 -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 냉장이나 냉동한 것 · 건조한 것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 · 건조한 것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306.19 -- 기타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6.19 -- 기타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0306.39 -- 기타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6.39 -- 기타	
0306.99 -- 기타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6.99 -- 기타	
03.07 -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7 -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가리비과의 조개[펙텐(Pecten)·클라미스(Chlamys)·프라코펙텐(Placopecten)속의 것으로서 여왕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0307.2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0307.22 -- 냉동한 것 0307.29 -- 기타	- 가리비와 그 밖의 펙티니대(Pectinidae)과의 조개 : 0307.2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0307.22 -- 냉동한 것 0307.29 -- 기타	
- 기타[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7.9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0307.92 -- 냉동한 것 0307.99 -- 기타	- 기타 0307.9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0307.92 -- 냉동한 것 0307.99 -- 기타	
03.08 -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	03.08 -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체동물은 제외한다)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신설>	03.09 - 어류·갑각류와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9.10 -- 어류의 것 0309.90 -- 기타	호 +1 소호 +2
제4류 주2, 주5 나목, 주6 신설 1. (생략) <신설> 2~3. (생략) 4.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신설> 가~다. (생략) <신설>	1. (생략) 2. 제0403호의 목적상 요거트는 농축하거나 가향할 수 있으며 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 과일, 너트, 코코아, 초콜릿, 향신료, 커피 또는 커피 추출물, 곡물 또는 베이커리 제품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첨가된 물품이 밀크 성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어서는 안 되고 전체 물품은 요거트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4. (생략) 5.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식용에 부적합한 죽은 곤충(제0511호) 나~라. (생략) 6. 제0410호의 목적상 '곤충'이란 먹을 수 있는 곤충의 전체 또는 일부분으로, 신선, 냉장, 냉동, 건조, 훈제,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드러나 이 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하며, 조제 또는 보존처리한 먹을 수 있는 곤충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제4부)	
04.03 - 버터밀크·응고밀크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과실·견과류·코코아를	04.03 - 요구르트, 버터밀크·응고밀크와 응고크림·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과실·견과류·코코아를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3.10 - 요구르트	0403.20 - 요구르트	
04.10 -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물	04.10 - 곤충과 그 밖의 따로 분류되지 않 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물 0410.10 - 곤충 0410.90 - 기타	소호 +1
제7류 주5 신설 <신설>	5. 제0711호는 소비하기 전, 운송 또는 보 관중의 일시적인 보존만을 위하여 처리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 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가 분 류된다. 다만,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0704.10 - 꽃양배추와 결구(結球) 브로콜리 (headed broccoli)	0704.10 - 꽃양배추와 브로콜리(broccoli)	
- 버섯과 송로(松露) 0709.51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0709.59 -- 기타	- 버섯과 송로(松露) 0709.51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0709.52 -- 볼레투스(Boletus)속의 버섯 0709.53 -- 칸타렐루스(Cantharellus)속의 버섯 0709.54 -- 표고버섯(Lentinus edodes) 0709.55 -- 송이버섯(Tricholoma matsu- take, Tricholoma magnivelare, Tricholoma anatolicum, Tricholoma dulciolens, Tricholoma caligatum) 0709.56 -- 송로버섯(Tuber spp.) 0709.59 -- 기타	소호 +5
07.11 -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 (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 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 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7.11 -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 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신설>	0712.34 -- 표고버섯(Lentinus edodes)	소호 +1
제8류 주4 신설 <신설>	4. 제0812호는 소비하기 전, 운송 또는 보 관중의 일시적인 보존만을 위하여 처리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가 분류된다. 다만,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0802.90 - 기타	- 기타 0802.91 -- 잣,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802.92 -- 잣, 껍데기를 벗긴 것 0802.99 -- 기타	소호 +2
08.12 -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8.12 -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10류 주1 나목 나. 이 류에서 껍질을 벗긴 곡물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은 제외한다. 다만, 쌀은 현미·정미·연마미·광택미·반숙미·쇄미(broken rice)도 제1006호로 분류한다.	나. 이 류에서 껍질을 벗긴 곡물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은 제외한다. 다만, 쌀은 현미·정미·연마미·광택미·반숙미·쇄미(broken rice)도 제1006호로 분류한다. 이와 유사하게, 사포닌을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거된 퀴노아로 그 밖의 다른 공정을 수행하지 않은 퀴노아는 제1008호에 분류한다.	
<신설>	1211.60 -- 아프리카 체리(<i>Prunus africana</i>) 나무의 껍질	소호 +1
제3부 표제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동물성·식물성·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제15류 표제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동물성·식물성·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제15류 소호주 <신설>	1. 소호 제1509.30호의 목적상, 버진 올리브유는 유리산도가 올레산(oleic acid)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하로 나타나며, 코덱스 규격 33-1981에 명시된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1. 소호 제1514.11호와 제1514.19호에서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유 (rape oil, colza oil)"란 (생략)	특성에 따라 다른 범주의 버진 올리브유 와 구분할 수 있다. 2 소호 제1514.11호와 제1514.19호에서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유 (rape oil, colza oil)"란 (생략)	
15.09 -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 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9.10 - 버진(virgin) 1509.90 - 기타	15.09 -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 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9.20 -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509.30 - 버진 올리브유 1509.40 - 기타 버진 올리브유 1509.90 - 기타	소호 +2
15.10 -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신설> <신설>	15.10 -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1510.10 - 가공하지 않은(crude) 올리브 포 마스유 1510.90 - 기타	소호 +1
15.15 - 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5 - 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물성·미생 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 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신설>	1515.60 -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 들의 그 분획물	소호 +1
15.16 -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 들의 분획물[전체적으로나 부분적 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 텔화한(inter-esterified) 것, 리에스 텔화한(re-esterified) 것, 엘라이딘 화한(elaidinised) 것으로 한정하며,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6 -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전체적으로 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inter-esterified) 것, 리에스텔화한(re-esterified) 것, 엘 라이딘화한(elaidinised) 것으로 한 정하며,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신설>	1516.30 -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 들의	소호 +1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의 그 분획물	
15.17 -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	15.17 - 마가린,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	
15.18 -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15.18 -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제4부 표제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고안된 상품(니코틴을 함유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다), 기타 니코틴을 함유한 상품으로 사람의 체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고안된 것	
제16류 표제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또는 곤충의 조제품	
제16류 주1, 주2 1. 이 류에서 제2류·제3류나 제0504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脡肉)·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은 제외한다. 2.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脡肉)·피·어류나 갑각류·	1. 이 류에서 제2류·제3류·제4류 제6호나 제0504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脡肉)·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그리고 곤충은 제외한다. 2.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脡肉)·피·곤충·어류나 갑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생략)	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생략)	
제16류 소호주1 1. 소호 제1602.10호에서 “균질화한 조제품”이란 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육이나 설육(脣肉)이나 피를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중략)... 그 조제품에는 육이나 설육(脣肉)이 눈에 보일 정도의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이 소호는 제1602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	1. 소호 제1602.10호에서 “균질화한 조제품”이란 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육·설육(脣肉)·피나 곤충을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중략)... 그 조제품에는 육·설육(脣肉)이나 곤충이 눈에 보일 정도의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이 소호는 제1602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	
16.01 -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脣肉)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	16.01 -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脣肉)·피나 곤충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	
16.02 -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脣肉)이나 피	16.02 -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脣肉)·피나 곤충	
제18류 주1 1. 이 류에서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제3004호의 조제품은 제외한다.	1. 이 류에서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가. 소시지·육·설육(脣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조제식료품 나. 제0403호·제1901호·제1902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제3004호의 조제품	
제19류 주1 가목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의 경우를 제외한 조제 식료품으로서 소시지·육·설육(脣肉)·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의 경우를 제외한 조제 식료품으로서 소시지·육·설육(脣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제16류)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제16류)	
제20류 주1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생략) <신설> 나. 소시지·육·설육(脣肉)·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조제 식료품(제16류) 다~라. (생략)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생략) 나. 식물성 지방과 기름(제15류) 다. 소시지·육·설육(脣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조제 식료품(제16류) 라~마. (생략)	
2008.93 --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2008.93 --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링곤베리[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20.09 -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9 - 과실 및 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9.2 -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포멜로(pomelo)를 포함한다] 주스	2009.2 -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주스, 포멜로(pomelo) 주스	
- 그 밖의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 2009.81 --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주스 2009.89 -- 기타	- 그 밖의 한 가지 과실·견과류나 채소로 된 주스 2009.81 --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주스, 링곤베리[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주스 2009.89 -- 기타	
제21류 주1 바목 신설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가~마. (생략) <신설> 바~사. (생략)	가~마. (생략) 바. 제2404호의 물품 사~아. (생략)	
22.02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 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 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 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 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 한다)	22.02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 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 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 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 의 과실·견과류 주스와 채소 주스 는 제외한다)	
23.06 -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 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 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304호나 제2305호의 것은 제외 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6 -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 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 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304호나 제2305호의 것은 제외 한 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 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 정한다]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 고 흡입하도록 고안된 상품(니코틴을 함유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다), 기타 니코틴을 함유한 상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 시키도록 고안된 것	
제24류 주2, 주3 신설 <신설>	2. 제2404호와 이 류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제2404호에 분 류한다. 3. 제2404호의 목적상 “연소없이 흡입”이라 함은 가열장치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하여 연소 없이 흡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설>	24.04 - 담배·재구성한 담배·니코틴을 함 유한 제품 또는 담배·니코틴 대용 품을 함유한 제품으로 연소하지 않 고 흡입하도록 고안된 것, 그 밖의 니코틴을 함유한 제품으로 인체 내 에 니코틴을 흡수하도록 고안된 것 - 연소하지 않고 흡입하도록 고안 된 제품 2404.11 -- 담배나 담배대용품을 함유한 것	호 +1 소호 +6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2404.12 -- 기타, 니코틴을 함유한 것 2404.19 -- 기타 - 기타 2404.91 -- 씹거나 먹는 방식의 것 2404.92 -- 피부투여 방식의 것 2404.99 -- 기타	
제25류 주2 마목 신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라. (생략) <신설> 마~자. (생략)	제25류 주2 마목 신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라. (생략) 마. 백운석 래밍믹스(ramming mix)(제 3816호) 바~차. (생략)	
25.18 - 백운석(白雲石)[하소(煨燒)한 것인지 또는 소결(燒結)한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과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 2518.10 - 하소(煨燒)하지 않거나 소결(燒結)하지 않은 백운석(白雲石) 2518.20 - 하소(煨燒)하거나 소결(燒結)한 백운석(白雲石) 2518.30 -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	25.18 - 백운석(白雲石)[하소(煨燒)한 것인지 또는 소결(燒結)한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 2518.10 - 하소(煨燒)하지 않거나 소결(燒結)하지 않은 백운석(白雲石) 2518.20 - 하소(煨燒)하거나 소결(燒結)한 백운석(白雲石) <삭제>	소호 -1
제26류 주1 바목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스크랩(scrap), 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제 7112호)	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스크랩(scrap), 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제 7112호 또는 제8549호)	
제27류 소호주 5 5. 제2710호의 소호에서 “바이오디젤”이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사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서 얻은 것으로서 연료로 사용되는 지방산의 모노알킬 에스	5. 제2710호의 소호에서 “바이오디젤”이란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사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서 얻은 것으로서 연료로 사용되는 지방산의 모노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테르를 말한다.	알킬 에스테르를 말한다.	
제6부 주4 신설 <신설>	4. 그 명칭이나 기능에 따라 제6부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호의 용어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제3827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3827호에 분류하지 않고 그 물품의 명칭이나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2844.40 - 방사성원소 · 방사성동위원소와 소호 제2844.10호 · 제2844.20호 · 제2844.30호의 것은 제외한 이들의 화합물, 합금 · 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의 방사성원소 · 방사성동위원소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사성 잔재물	- 방사성원소 · 방사성동위원소와 소호 제2844.10호 · 제2844.20호 · 제2844.30호의 것은 제외한 이들의 화합물, 합금 · 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의 방사성원소 · 방사성동위원소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사성 잔재물 2844.41 -- 트리튬과 그 화합물, 합금 · 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트리튬과 그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844.42 -- 악티늄-225 · 악티늄-227 · 캘리포늄-253 · 큐리움-240 · 큐리움-241 · 큐리움-242 · 큐리움-243 · 큐리움-244 · 아인슈타늄-253 · 아인슈타늄-254 · 가돌리늄-148 · 폴로늄-208 · 폴로늄-209 · 폴로늄-210 · 라듐-223 · 우라늄-230 또는 우라늄-232와 이들의 화합물, 합금 · 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 원소나 그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844.43 -- 그 밖의 방사성원소 · 방사성동위원소와 이들의 화합물, 합금 · 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의 방사성원소 ·	소호 +3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방사성동위원소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844.44 -- 방사성 잔재물	
28.45 - 동위원소(제2844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동위원소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45.10 - 중수(重水)(산화 중수소) <신설> <신설> <신설> 2845.90 - 기타	28.45 - 동위원소(제2844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동위원소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45.10 - 중수(重水)(산화 중수소) 2845.20 - 보론-10에 농축된 보론과 그 화합물 2845.30 - 리튬-6에 농축된 리튬과 그 화합물 2845.40 - 헬륨-3 2845.90 - 기타	소호 +3
제29류 주1 사목 1.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사. 가목·나목·다목·라목·마목·바목의 물품에 그 물품의 식별이나 안전을 위하여 항분제(抗粉劑)·착색제·방향성(芳香性) 물질을 첨가한 것(그러한 첨가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가목·나목·다목·라목·마목·바목의 물품에 그 물품의 식별이나 안전을 위하여 항분제(抗粉劑)·착색제·방향성(芳香性) 물질·구토제를 첨가한 것(그러한 첨가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29류 주4 4. (중략) 제2911호, 제2912호, 제2914호, 제2918호, 제2922호에서 “산소관능”이란 제2905호부터 제2920호까지에서 열거한 관능(특성 유기산소를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29류 주4 4. (중략) 제2911호, 제2912호, 제2914호, 제2918호, 제2922호에서 “산소관능”(이들 해당호의 특성 유기산소를 함유하는 그룹)이란 제2905호부터 제2920호까지에서 열거한 산소관능을 말한다.	
- 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브롬화·요드화유도체 2903.31 -- 이브롬화에틸렌(ISO)(1,2-디브로모에탄) 2903.39 -- 기타	-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유도체 2903.41 -- 트리플루오르메탄(HFC-23) 2903.42 -- 디플루오르메탄(HFC-32) 2903.43 -- 플루오르메탄(HFC-41), 1,2-디플루오르메탄(HFC-152)과 1,1-디플루오르메탄(HFC-152a) 2903.44 -- 펜타플루오르메탄(HFC-125),	소호 +12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1,1,1-트리플루오르에탄 (HFC-143a)과 1,1,2-트리플루오르에탄(HFC-143) 2903.45 -- 1,1,1,2-테트라플루오르에탄 (HFC-134a)과 1,1,2,2-테트라플루오르에탄(HFC-134) 2903.46 -- 1,1,1,2,3,3,3-헵타플루오르프로판(HFC-227ea), 1,1,1,2,2,3-헥사플루오르프로판(HFC-236cb), 1,1,1,2,3,3-헥사플루오르프로판(HFC-236ea)과 1,1,1,3,3,3-헥사플루오르프로판(HFC-236fa) 2903.47 -- 1,1,1,3,3-Pentafluoropropane (HFC-245fa) and 1,1,2,2,3-pentafluoropropane (HFC-245ca) 2903.48 -- 1,1,1,3,3-펜타플루오르부탄(HFC-365mfc)과 1,1,1,2,2,3,4,5,5,5-데카플루오르펜탄(HFC-43-10mee) 2903.49 -- 기타 -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 유도체 2903.51 -- 2,3,3,3-테트라플루오르프로펜(HFO-1234yf), 1,3,3,3-테트라플루오르프로펜(HFO-1234ze)과 (Z)-1,1,1,4,4,4-헥사플루오르-2-부텐(HFO-1336mzz) 2903.59 -- 기타 - 비환식탄화수소의 브롬화 · 요드화 유도체 2903.61 -- 브롬화메틸(브로모메탄) 2903.62 -- 에틸렌 디브로마이드(ISO) (1,2-디브로모메탄) 2903.69 -- 기타	
2903.71 --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2903.72 --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2903.73 --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 2903.74 --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2903.75 --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2903.76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2903.71 --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HCFC-22) 2903.72 --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HCFC-123) 2903.73 --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HCFC-141, 141b)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메탄	2903.74 --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HCFC-142, 142b) 2903.75 --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HCFC-225, 225ca, 225cb) 2903.76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Halon-1211),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Halon-1301),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메탄 (Halon-2402)	
제29류 제4절 표제 에테르 ·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케톤 · 3원고리의 에폭시드 · 아세탈 · 헤미아세탈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에테르 ·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아세탈과 과산화헤미아세탈 · 과산화케톤 · 3원고리의 에폭시드 · 아세탈 · 헤미아세탈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 - 에테르 · 에테르알코올 · 에테르페놀 · 에테르알코올페놀 ·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 - 에테르 · 에테르알코올 · 에테르페놀 · 에테르알코올페놀 ·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아세탈과 과산화헤미아세탈 · 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60 -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케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60 -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아세탈과 과산화헤미아세탈 · 과산화케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신설>	2930.10 - 2-(엔,엔-디에틸아미노)메탄티올	소호 +1
29.31 -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2931.10 - 테트라메칠납, 테트라에칠납 2931.20 - 트리부틸틴 화합물 - 그 밖의 유기인 유도체 2931.31 -- 디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2931.32 -- 디메틸 프로필포스포네이트 2931.33 -- 디에틸 에틸포스포네이트 2931.34 -- 3-(트리하이드록시시릴)프로필 메틸포스포산 나트륨	29.31 -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2931.10 - 테트라메칠납, 테트라에칠납 2931.20 - 트리부틸틴 화합물 - 비할로겐화 유기인 유도체 2931.41 -- 디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2931.42 -- 디메틸 프로필포스포네이트 2931.43 -- 디에틸 에틸포스포네이트 2931.44 -- 메틸포스포산 2931.45 -- 메틸포스포산과 (아미노이미노	소호 +5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2931.35 -- 2,4,6-트리프로필-1,3,5,2,4,6-트리옥사트리포스피네인 2,4,6-트리옥사이드	2931.46 -- 2,4,6-트리프로필-1,3,5,2,4,6-트리옥사트리포스피난-2,4,6-트리옥사이드	
2931.36 -- (5-에틸-2-메틸-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2931.47 -- (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2931.37 -- 비스[(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2931.48 -- 3,9-디메틸-2,4,8,10-테트라옥사-3,9-디포스파스피로[5.5] 언데칸 3,9-디옥사이드	
2931.38 -- 메틸포스포 산과 (아미노이미노 메틸)우레아의 염(1 : 1)	2931.49 -- 기타	
2931.39 -- 기타	- 할로겐화 유기인 유도체	
2931.90 - 기타	2931.51 -- 메틸포스포닉 디클로라이드	
	2931.52 -- 프로필포스포닉 디클로라이드	
	2931.53 -- 오-(3-클로로프로필) 오-[4-니트로-3-(트리플루오로메틸)페닐] 메틸포스포노시오네이트	
	2931.54 -- 트리클로르폰(ISO)	
	2931.59 -- 기타	
	2931.90 - 기타	
<신설>	2932.96 -- 카보푸란(ISO)	소호 +1
2933.33 -- 알펜타닐(INN) · 아닐레리딘(INN) · 베지트라마이드(INN) · 브로마제팜(INN) · 디페녹신(INN) · 디펜옥실레이트(INN) · 디피파논(INN) · 펜타일(INN) · 케토베미돈(INN) · 메틸페니데이트(INN) · 펜타조신(INN) · 페치딘(INN) · 페치딘(INN) 제조중간체 에이 · 펜사이클리딘(INN)(PCP) · 페노페리딘(INN) · 피프라드롤(INN) · 피리트라미드(INN) · 프로피람(INN) · 트리메페리딘(INN)과 이들의 염	2933.33 -- 알펜타닐(INN) · 아닐레리딘(INN) · 베지트라마이드(INN) · 브로마제팜(INN) · 카펜타닐(INN) · 디페녹신(INN) · 디펜옥실레이트(INN) · 디피파논(INN) · 펜타닐(INN) · 케토베미돈(INN) · 메틸페니데이트(INN) · 펜타조신(INN) · 페치딘(INN) · 페치딘(INN) 제조중간체 에이 · 펜사이클리딘(INN)(PCP) · 페노페리딘(INN) · 피프라드롤(INN) · 피리트라미드(INN) · 프로피람(INN) · 레미펜타닐(INN) · 트리메페리딘(INN)과 이들의 염	
<신설>	2933.34 -- 그 밖의 펜타닐과 그 유도체 2933.35 -- 3-퀴누클리도놀 2933.36 -- 4-아닐리노-N-펜에틸피페리딘(ANPP)	소호 +4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2933.37 -- N-펜에틸-4-피페리돈(NPP)	
<신설>	2934.92 -- 그 밖의 펜타닐과 그 유도체	소호 +1
2936.24 -- 디-판토텐산이나 디엘-판토텐산 (비타민 B3나 비타민 B5)과 이 들의 유도체	2936.24 -- 디-판토텐산이나 디엘-판토텐산 (비타민 B5)과 이들의 유도체	
- 에페드린과 이들의 염 2939.41 -- 에페드린과 그 염 2939.42 -- 슈도에페드린(INN)과 그 염 2939.43 -- 캐친(INN)과 그 염 2939.44 -- 놀에페드린과 그 염 2939.49 -- 기타	- 마황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 체, 이들의 염 2939.41 -- 에페드린과 그 염 2939.42 -- 슈도에페드린(INN)과 그 염 2939.43 -- 캐친(INN)과 그 염 2939.44 -- 놀에페드린과 그 염 2939.45 -- 레보메탐페타민 · 메탐페타민 (INN) · 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 트 및 이들의 염 2939.49 -- 기타	소호 +1
- 기타(식물성의 것에 한정한다) 2939.71 -- 코카인 · 엑고닌 · 레보메탐페타 민 · 메탐페타민(INN) · 메탐페타 민 레이스메이트 및 이들의 염 · 에스테르 · 그 밖의 유도체 2939.79 -- 기타	- 기타(식물성의 것에 한정한다) 2939.72 -- 코카인 · 엑고닌 및 이들의 염 · 에스테르 · 그 밖의 유도체 2939.79 -- 기타	
제30류 주1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생략) 나. 흡연자의 금연을 보조하기 위한 조제 품[예: 정제(tablet) · 추잉껌 · 패치(피부 투여 방식)](제2106호나 제3824호) 다~아. (생략) <신설>	나. 니코틴을 함유한 것으로 흡연자의 금 연을 보조하기 위한 제품[예: 정제 (tablet) · 추잉껌 · 패치(피부투여 방 식)](제2404호) 다~아. (생략) 자. 제3822호의 진단용 시약	
제30류 주4 마목 4. 다음 각 목의 물품은 제3006호로 분류 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 다. 마. 혈액형 분류용 시약	마. 공인된 임상실험에 사용되는 플라시보 와 맹검(이중맹검) 테스트 키트(일정 투여량으로 포장된 것으로 활성의료성 분을 포함했는지 여부에 관계없다)	
30.02 - 사람의 피, 치료용 · 예방용 · 진단	30.02 - 사람의 피, 치료용 · 예방용 · 진단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인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인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포배양체(변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인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3002.11 -- 말라리아 진단 테스트 키트 3002.12 --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 3002.13 -- 면역물품(혼합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 3002.14 -- 면역물품(혼합된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3002.15 --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정한다) 3002.19 -- 기타	-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인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삭제> 3002.12 --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 3002.13 -- 면역물품(혼합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 3002.14 -- 면역물품(혼합된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3002.15 --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정한다) <삭제>	소호 -2
3002.20 - 백신(인체의약용으로 한정한다) 3002.30 - 백신(동물의약용으로 한정한다)	- 백신, 독소, 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3002.41 -- 백신(인체의약용으로 한정한다) 3002.42 -- 백신(동물의약용으로 한정한다) 3002.49 -- 기타	소호 +1
<신설>	- 세포배양체(변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002.51 -- 세포요법용 제품 3002.59 -- 기타	소호 +2
3006.20 - 혈액형 분류용 시약	<삭제>	소호 -1
<신설>	3006.93 -- 공인된 임상실험에 사용되는 플라시보와 맹검(이중맹검) 테스트	소호 +1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트 키트(일정 투여량으로 포장된 것)	
<신설>	3204.18 -- 카로틴 착색제와 이들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	소호 +1
제34류 주1 가목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으로 사용되는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식용 혼합물과 조제품(제1517호)	가. 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으로 사용되는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식용 혼합물과 조제품(제1517호)	
-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402.11 -- 음이온성 3402.12 -- 양이온성 3402.13 -- 비이온성 3402.19 -- 기타 3402.20 - 소매용 조제품	- 양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402.31 -- 리니어 알킬벤젠산과 그 염 3402.39 -- 기타 - 기타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402.41 -- 음이온성 3402.42 -- 비이온성 3402.49 -- 기타 3402.50 - 소매용 조제품	소호 +1
36.03 -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전기 뇌관 <신설>	36.03 -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전기 뇌관 3603.10 - 도화선 3603.20 - 도폭선 3603.30 - 격발뇌관(Percussion caps) 3603.40 - 뇌관(Detonating caps) 3603.50 - 점화기 3603.60 - 전기뇌관	소호 +5
제37류 주2 2. 이 류에서 “사진”이란 광선이나 복사선에 따라 감광성 면에 직접·간접으로 가시상(可視像)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이 류에서 “사진”이란 광선이나 복사선에 따라 감광성(감열성을 포함한다) 면에 직접·간접으로 가시상(可視像)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8류 주1 다목 신설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나. (생략) <신설> 다~마. (생략))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나. (생략) 다. 제2404호의 물품 라~바. (생략))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제38류 주4 가목 4. 이 표에서 “생활폐기물”은 가정·호텔·식당·병원·가게·사무실 등에서 수집된 쓰레기... (중략) ... 다만,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가. 플라스틱·고무·나무·종이·직물·유리나 금속의 폐기물과 폐전지 등과 같은 폐기물로부터 분리 수거된 개개의 재료나 제품으로 이 표의 적당한 호에 해당하는 것	4. 이 표에서 “생활폐기물”은 가정·호텔·식당·병원·가게·사무실 등에서 수집된 쓰레기... (중략) ... 다만,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가. 플라스틱·고무·나무·종이·직물·유리나 금속의 폐기물, 전기·전자 폐기물과 스크랩(폐전지를 포함한다) 등과 같은 폐기물로부터 분리 수거된 개개의 재료나 제품으로 이 표의 적당한 호에 해당하는 것	
제38류 주7 7. 제3826호의 소호에서 “바이오디젤”이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사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서 얻은 것으로서 연료로 사용되는 지방산 모노 알킬 에스테르를 말한다.	7. 제3826호의 소호에서 “바이오디젤”이란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사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서 얻은 것으로서 연료로 사용되는 지방산 모노 알킬 에스테르를 말한다.	
제38류 소호주1 1. 소호 제3808.52호와 제3808.59호는 다음을 하나 이상 함유하는 제3808호의 물품만을 포함한다. 알라클로르(ISO), 알디카브(ISO), 엘드린(ISO), 아진포스-메틸(ISO), 비나파크릴(ISO), 캄페클로(ISO)(특사핀), 캡타폴(ISO), 클로단(ISO), 클로디메폼(ISO), 클로로벤질레이트(ISO), 디디티[DDT(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DNOC(ISO)]이나 그 염, 디노셉(ISO)과 그 염이나 에스테르, 엔도설판(ISO), 에틸렌디브로마이드(ISO)(1,2-디브로모에탄), 이염화에틸렌(ISO)(1,2-디클로로에탄),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헵타클로르(ISO), 헥사클로로벤젠(ISO),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 수은화합물, 메타미도포스(ISO), 모노크로토포스(ISO), 옥시란(산화에틸렌), 파라티온(ISO), 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온), 펜타- 및 옥타브로모디페닐	1. 소호 제3808.52호와 제3808.59호는 다음을 하나 이상 함유하는 제3808호의 물품만을 포함한다. 알라클로르(ISO), 알디카브(ISO), 엘드린(ISO), 아진포스-메틸(ISO), 비나파크릴(ISO), 캄페클로(ISO)(특사핀), 캡타폴(ISO), 카보푸란(SIO) , 클로단(ISO), 클로디메폼(ISO), 클로로벤질레이트(ISO), 디디티[DDT(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DNOC(ISO)]이나 그 염, 디노셉(ISO)과 그 염이나 에스테르, 엔도설판(ISO), 에틸렌디브로마이드(ISO)(1,2-디브로모에탄), 이염화에틸렌(ISO)(1,2-디클로로에탄),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헵타클로르(ISO), 헥사클로로벤젠(ISO),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 수은화합물, 메타미도포스(ISO), 모노크로토포스(ISO), 옥시란(산화에틸렌), 파라티온(ISO), 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온), 펜타클로로페놀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u>에테르</u>, 펜타클로로페놀(ISO)과 그 염이나 에스테르, 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과불화옥탄 술폰닐 플루오라이드, 포스파미돈(ISO),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와 그 염이나 에스테르, 트리부틸틴 화합물. <u>소호 제3808.59호에는 또한 베노밀(ISO), 카보퓨란(ISO), 타이람(ISO)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분제(粉劑) 제형(劑形)도 포함된다.</u>	(ISO)과 그 염이나 에스테르, 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과불화옥탄술폰닐 플루오라이드, 포스파미돈(ISO),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와 그 염이나 에스테르, 트리부틸틴 화합물, <u>트리클로르폰(ISO)</u>.	
제38류 소호주3 3. 소호 제3824.81호부터 제3824.88호까지는 다음의 물질을 하나 이상 함유하는 혼합물과 조제품만을 포함한다. 옥시란(산화에틸렌),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앨드린(ISO), 캄페클로(ISO)(톡사핀),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디티[DDT(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앨드린(ISO, INN), 엔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미렉스(ISO),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 펜타클로로벤젠(ISO), 헥사클로로벤젠(ISO), 과불화옥탄 술폰산,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과불화옥탄술폰닐 플루오라이드 또는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또는 옥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	3. 소호 제3824.81호부터 제3824.89호까지는 다음의 물질을 하나 이상 함유하는 혼합물과 조제품만을 포함한다. 옥시란(산화에틸렌),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앨드린(ISO), 캄페클로(ISO)(톡사핀),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디티[DDT(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앨드린(ISO, INN), 엔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미렉스(ISO),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 펜타클로로벤젠(ISO), 헥사클로로벤젠(ISO), 과불화옥탄 술폰산,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과불화옥탄술폰닐 플루오라이드, 테트라·펜타·헥사·헵타·옥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 단사슬 염소화 파라핀. 단사슬 염소화파라핀이란 염소화 정도가 48% 이상이며 다음의 분자구조를 가진 화합물의 혼합물을 말한다. $C_xH_{(2x-y+2)}Cl_y, (x=10\sim13, y=1.13)$	
38.16 - 내화시멘트·내화모르타르·내화콘크리트와 이와 유사한 혼합물(제3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8.16 - 내화시멘트·내화모르타르·내화콘크리트와 이와 유사한 혼합물(백운성 래밍 믹스를 포함하고 제3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38.22 -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	38.22 -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 키트상 태로 포장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 -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 키트상 태로 포장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822.11 -- 말라리아용 3822.12 -- 지카와 그 밖에 Aedes 속의 모 기로부터 전염되는 질병용 3822.13 -- 혈액형 분류용 3822.19 -- 기타 3822.90 - 기타	소호 +4
- 메탄, 에탄, 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가지는 혼합물 3824.71 --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는 것[수소염화불화탄소(HCFCs)·과불화탄소(PFCs)·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824.72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을 함유하는 것 3824.73 --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을 함유하는 것 3824.74 --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24.75 -- 사염화탄소를함유하는 것 3824.76 -- 1,1,1-삼염화에탄(메틸클로로포름)을함유하는 것 3824.77 --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브로모	<삭제>	소호 -9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3824.78 --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는 것[염화불화탄소(C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 3824.79 -- 기타		
<신설>	3824.89 -- 단사슬 염화파라핀을 함유한 것	소호 +1
<신설>	3824.92 -- 메틸포스포산의 폴리글리콜 에스테르	소호 +1
<신설>	38.27 - 따로 분류되지 않은 메탄·에탄·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함유한 혼합물 - 염화불화탄소(CFC)를 함유한 것(수소염화불화탄소(HCFC), 과불과탄소(PFC) 또는 수소불화탄소(HFC)를 함유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다), 수소브롬화불화탄소(HBFC)를 함유한 것, 카본 테트라클로라이드를 함유한 것, 1,1,1-트리클로로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한 것 3827.11 -- 염화불화탄소(CFC)를 함유한 것(수소염화불화탄소(HCFC), 과불과탄소(PFC) 또는 불화탄화수소(HFC)를 함유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다) 3827.12 -- 수소브롬화불화탄소(HBFC)를 함유한 것 3827.13 -- 카본 테트라클로라이드를 함유한 것 3827.14 -- 1,1,1-트리클로로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한 것 3827.20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Halon-1211)·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Halon-1301)·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Halon-2402)을 함유하는 것 -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 수	호 +1 소호 +19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이 지는 상관없으며 염화불화탄소 (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27.31 -- 소호 제2903.41호부터 제 2903.48호의 물질을 함유한 것	
	3827.32 -- 기타, 소호 제2903.741호부터 제2903.75호의 물질의 함유한 것	
	3827.39 -- 기타	
	3827.40 - 메틸브로마이드(브로모메탄)나 브로로클로로메탄을 함유한 것 - 트리플루오르메탄(HFC-23)이나 과불화탄소(PFC)을 함유한 것(염 화불화탄소(CFC)나 수소염화불화 탄소(HCFC)를 함유하지 않은 것 으로 한정한다)	
	3827.51 -- 트리플루오르메탄(HFC-23)을 함 유한 것	
	3827.59 -- 기타 - 그 밖의 수소불화탄소(HFC)를 함 유한 것(염화불화탄소(CFC)나 수 소염화불화탄소(HCFC)를 함유하 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27.61 -- 1,1,1-트리플루오르에탄 (HFC-143a)을 15% 이상 함유한 것	
	3827.62 -- 기타, 이 호의 앞선 소호에 포 함되지 않는 것으로 펜타플루오 르에탄(HFC- 125)을 55% 이상 함유한 것(비환식탄화수소(HFO) 의 불포화 플루오르와 유도체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 다)	
	3827.63 -- 기타, 이 호의 앞선 소호에 포 함되지 않는 것으로 펜타플루오 르에탄(HFC- 125)을 40% 이상 함유한 것	
	3827.64 -- 기타, 이 호의 앞선 소호에 포 함되지 않는 것으로 1,1,1,2-테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트라플루오르에탄(HFC-134a)을 30% 이상 함유한 것(비환식탄 화수소(HFO)의 불포화 플루오르와 유도체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27.65 -- 기타, 이 호의 앞선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디플루오르메탄(HFC-32)을 20% 이상, 펜타플루오르에탄(HFC-125)을 20% 이상 함유한 것 3827.68 -- 기타, 이 호의 앞선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소호 제 2903.41호부터 제2903.48호의 물질을 함유한 것 3827.69 -- 기타 3827.90 - 기타	
제7부 주2 2. 제3918호나 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고무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은(not incidental) 모티프(motif)·문자·그림을 인쇄한 것은 제49류로 분류한다.	2. 제3918호나 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고무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은(not subsidiary) 모티프(motif)·문자·그림을 인쇄한 것은 제49류로 분류한다.	
제39류 주2 저목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저. 제94류의 물품(예: 가구·램프와 조명기구(lamps and lighting fittings)·조명용 사인·조립식 건축물)	저. 제94류의 물품(예: 가구·조명기구(luminaires and lighting fittings)·조명용 사인·조립식 건축물)	
3907.20 - 그 밖의 폴리에테르	- 그 밖의 폴리에테르 3907.21 -- 비스(폴리옥시에틸렌) 메틸포스포네이트 3907.29 -- 기타	소호 +1
<신설>	3911.20 - 폴리(1,3-페닐렌 메틸포스포네이트)	소호 +1
- 장갑, 병어리장갑 4015.11 -- 외과용 4015.19 -- 기타	- 장갑, 병어리장갑 4015.12 --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4015.19 -- 기타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제42류 주2 카목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카. 제94류의 물품(예: 가구· <u>램프와 조명기구(lamps and lighting fittings)</u>)	카. 제94류의 물품(예: 가구· <u>조명기구(luminaires and lighting fittings)</u>)	
제44류 주1 거목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거. 제94류의 물품(예: 가구· <u>램프와 조명기구(lamps and lighting fittings)</u> , 조립식 건축물)	거. 제94류의 물품(예: 가구· <u>조명기구(luminaires and lighting fittings)</u> , 조립식 건축물)	
제44류 소호주2, 3, 4 신설 <신설>	2. 소호 제4401.32호에서 “목재 브리켓(briquette)”이란 기계 목재가공업, 가구 제조업이나 그 밖의 목재 변형 활동에서 발생하는 대팻밥, 톱밥, 칩과 같은 부산물로서 직접 압축하거나 중량기준으로 전 중량의 100분의 3 이하로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것을 말한다. 이러한 브리켓(briquette)은 입방형·다면체·원통형으로 가장 짧은 단면이 25밀리미터 이상이다. 3. 소호 제4407.13호에서 “S-P-F”란 가문비나무(Spruce), 소나무(Pine), 전나무(Fir)의 혼교임분에서 얻어진 목재를 말하며 각 종의 종의 구성비는 다양하고 정확히 알 수 없다. 4. 소호 제4407.14호에서 “Hem-fir”란 웨스턴 솔송나무와 전나무의 혼교임분에서 얻어진 목재를 말하며 각 종의 구성비는 다양하고 정확히 알 수 없다.	
<신설>	4401.32 -- 목재 브리켓(briquette)	소호 +1
4401.40 - 톱밥,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응결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톱밥,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응결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401.41 -- 톱밥 4401.49 -- 기타	소호 +1
44.02 - 목탄[셸(shell)이나 너트(nut)의 탄을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2.10 - 대나무로 만든 것	44.02 - 목탄[셸(shell)이나 너트(nut)의 탄을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2.10 - 대나무로 만든 것	소호 +1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신설> 4402.90 - 기타	4402.20 - 껍질과 너트로 만든 것 4402.90 - 기타	
4403.21 -- 소나무[피너스(Pinus)종]의 것(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403.21 -- 소나무[피너스(Pinus)종]의 것(횡단면의 최소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403.23 -- 전나무[아비에스(Abies)종]와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종]의 것(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403.23 -- 전나무[아비에스(Abies)종]와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종]의 것(횡단면의 최소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403.25 -- 기타(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403.25 -- 기타(횡단면의 최소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신설>	4403.42 -- 티크(Teak)	소호 +1
4403.93 --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의 것(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403.93 --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의 것(횡단면의 최소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403.95 -- 자작나무[베틀라(Betula)종]의 것(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403.95 -- 자작나무[베틀라(Betula)종]의 것(횡단면의 최소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신설>	4407.13 -- S-P-F[가문비나무(Picea)종, 소나무(Pinus)종]와 전나무(Abies)종의 것 4407.14 -- Hem-fir[웨스턴 햄록(Tsuga heterophylla)과 전나무(Abies)종]의 것	소호 +2
<신설>	4407.23 -- 티크(Teak)	소호 +1
44.12 -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4412.10 - 대나무로 만든 것 -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412.31 ~ 4412.39 (생략) <신설>	44.12 -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4412.10 - 대나무로 만든 것 -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412.31 ~ 4412.39 (생략) - 적층 베니어 목재	소호 +7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 기타 4412.94 -- 블록보드(blockboard), 라민보드(laminboard), 배튼보드(battenboard) 4412.99 -- 기타	4412.41 -- 적어도 한 쪽 바깥면의 플라이가 열대산 목재로 된 것 4412.42 -- 기타, 적어도 한 쪽 바깥면의 플라이가 활엽수로 된 것 4412.49 -- 기타, 양쪽 바깥면의 플라이 모두 침엽수인 것 - 블록보드(blockboard), 라민보드(laminboard), 배튼보드(battenboard) 4412.51 -- 적어도 한 쪽 바깥면의 플라이가 열대산 목재로 된 것 4412.52 -- 기타, 적어도 한 쪽 바깥면의 플라이가 활엽수로 된 것 4412.59 -- 기타, 양쪽 바깥면의 플라이 모두 침엽수인 것 - 기타 4412.91 -- 적어도 한 쪽 바깥면의 플라이가 열대산 목재로 된 것 4412.92 -- 기타, 적어도 한 쪽 바깥면의 플라이가 활엽수로 된 것 4412.99 -- 기타, 양쪽 바깥면의 플라이 모두 침엽수인 것	
44.14 - 나무로 만든 그림틀·사진틀·거울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44.14 - 나무로 만든 그림틀·사진틀·거울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4414.10 - 열대산 목재로 된 것 4414.90 - 기타	소호 +1
4418.10 - 창, 프랑스 창과 이들의 틀	- 창, 프랑스 창과 이들의 틀 4418.11 - 열대산 목재로 된 것 4418.19 - 기타	소호 +1
4418.20 - 문·문틀·문지방	- 문·문틀·문지방 4418.21 - 열대산 목재로 된 것 4418.29 - 기타	소호 +1
<신설>	4418.30 - 소호 제4418.81호부터 제4418.89호의 물품을 제외한 기등과 빔	소호 +1
4418.60 - 기둥과 들보	<삭제>	소호 -1
<신설>	- 가공한 구조용 목재 4418.81 -- 접착한 적층목재(glulam)	소호 +4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4418.82 -- 교차적층 목재(CLT 또는 X-lam) 4418.83 -- I 비임(beam) 4418.89 -- 기타	
<신설>	4418.92 -- 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	소호 +1
<신설>	4419.20 - 열대산 목재로 만든 것	소호 +1
4420.10 - 나무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4420.11 - 열대산 목재로 만든 것 4420.19 - 기타	소호 +1
<신설>	4421.20 - 관(棺)	소호 +1
제46류 주2 마목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마. 제94류의 물품(예: 가구· 램프와 조명기구(lamps and lighting fittings))	마. 제94류의 물품(예: 가구· 조명기구(luminaires and lighting fittings))	
제48류 주2 너목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너. 제96류의 물품[예: 단추, 위생 타월(패드)과 탐폰, 유아용 냅킨(기저귀)과 냅킨 라이너]	너. 제96류의 물품[예: 단추, 위생 타월(패드)과 탐폰, 냅킨(기저귀)과 냅킨 라이너]	
제48류 주12 12. 제4814호와 제482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종이·판지·셀룰로오스 워딩과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단지 부수적이지 않은(not incidental) 모티프(motif)·문자·회화를 인쇄한 것은 제49류에 해당한다.	12. 제4814호와 제482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종이·판지·셀룰로오스 워딩과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단지 부수적이지 않은(not subsidiary) 모티프(motif)·문자·회화를 인쇄한 것은 제49류에 해당한다.	
49.05 - 지도·해도나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벽걸이용의 것·지형도와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으로 한정한다) 4905.10 - 지구의 - 기타 4905.91 -- 책자로 된 것 4905.99 -- 기타	49.05 - 지도·해도나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벽걸이용의 것·지형도와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으로 한정한다) <삭제> 4905.20 - 책자로 된 것 4905.90 - 기타	소호 -1
제11부 주1 나목, 러목, 버목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나. 사람 머리카락과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제0501호 · 제6703호 · 제6704호). 다만, 일반적으로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u>여과포(straining cloth)</u>(제5911호)는 제외한다. 러. 제94류의 물품(예: 가구 · 침구 · 램프와 조명기구(lamps and lighting fittings)) 버. 제96류의 물품[예: 브러시 · 바느질용 여행세트 ·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와 타자기용 리본 · 위생타월(패드)과 탐폰 · 유아용 냅킨(기저귀)과 냅킨 라이너]	나. 사람 머리카락과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제0501호 · 제6703호 · 제6704호). 다만, 일반적으로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u>여과포(filtering or straining cloth)</u>(제5911호)는 제외한다. 러. 제94류의 물품(예: 가구 · 침구 · 조명기구(luminaires and lighting fittings)) 버. 제96류의 물품[예: 브러시 · 바느질용 여행세트 ·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와 타자기용 리본 · 위생타월(패드)과 탐폰 · 냅킨(기저귀)과 냅킨 라이너]	
<신설>	15. 제11부 주 제1호를 제외하고, 방직용 섬유 · 의류 ·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부가적인 기능을 위한 화학적 · 기계적 · 전자적 부품을 장착한 것은 이들 부품이 섬유나 직물 내에 불박이로 결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11부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다만, 전체 물품의 이 부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5501.10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5501.11 -- 아라미드의 것 5501.19 -- 기타	소호 +1
제56류 주1 바목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바. 제9619호의 위생타월(패드) · 탐폰, 유아용 냅킨 · 냅킨라이너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바. 제9619호의 위생타월(패드) · 탐폰, 냅킨(기저귀) · 냅킨라이너와 이와 유사한 물품	
57.03 -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 깔개[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703.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7.03 -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 깔개(터프(turf)를 포함한다)[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703.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소호 +2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5703.20 -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5703.30 - 그 밖의 인조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703.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5703.21 -- 터프 5703.29 -- 기타 - 그 밖의 인조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703.31 -- 터프 5703.39 -- 기타 5703.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면으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5802.11 -- 표백하지 않은 것 5802.19 -- 기타	5802.10 - 면으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소호 -1
제59류 주3 신설, 주8 가목 3호 개정 1~2. (생략) <신설> 3~6. (생략) 7. 제5911호에는 제11부의 다른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적용한다. 가. (생략) 3) 착유기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나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여과포(straining cloth)	3. 제5903호에서 “플라스틱으로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란 하나 이상의 직물층과 하나 이상의 플라스틱 시트나 필름을 결합한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들 레이어를 접착하여 조합한 것으로 그 단면에서 이들 필름이나 플라스틱 층이 육안으로 관찰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 4~7. (생략) 8. 제5911호에는 제11부의 다른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적용한다. 가. (생략) 3) 착유기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나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여과포(filtering or straining cloth)	
59.11 -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 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59.11 -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8호 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5911.40 - 착유기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	5911.40 - 착유기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filtering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straining cloth)(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or straining cloth)(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제61류 주4 4. 제6105호와 제61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적어도 10센티미터 × 10센티미터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 수가 1센티미터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는 제외하며, 제61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	4. 제6105호와 제61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적어도 10센티미터 × 10센티미터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 수가 1센티미터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는 제외하며, 제61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 셔츠"와 "셔츠블라우스"는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된 의류로 길거나 짧은 소매가 있고, 목 부분에서 시작하는 전체 또는 일부 트임(opening)이 있다. "블라우스"도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된 헐렁한 의류이나 소매가 없는 것도 있으며 목 부분부터 시작되는 트임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셔츠" · "셔츠블라우스 · "블라우스"는 옷깃이 있을 수도 있다.	
6116.10 -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6116.10 -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 · 도포 · 피복하거나 적층한 것	
제62류 주4 신설 1~3. (생략) <신설>	1~3. (생략) 4. 제6205호와 제62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는 제외하며, 제62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 셔츠"와 "셔츠블라우스"는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된 의류로 길거나 짧은 소매가 있고, 목 부분에서 시작하는 전체 또는 일부 트임(opening)이 있다. "블라우스"도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된 헐렁한 의류이나 소매가 없는 것도 있으며 목 부분부터 시작되는 트임이 있는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4~9. (생략)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셔츠” · “셔츠블라우스 · “블라우스”는 옷 깃이 있을 수도 있다. 5.~10. (생략)	
62.01 -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 (overcoat) · 카코트(car-coat) · 케이 프(cape) · 클룩(cloak) · 아노락 (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 드치터(wind-cheater) · 윈드재킷 (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 (제6203호의 것은 제외한다) - 오버코트(overcoat) · 레인코트 (raincoat) · 카코트(car-coat) · 케 이프(cape) · 클룩(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 6201.1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201.12 -- 면으로 만든 것 6201.13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201.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기타 6201.9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201.92 -- 면으로 만든 것 6201.93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201.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2.01 -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 (overcoat) · 카코트(car-coat) · 케이 프(cape) · 클룩(cloak) · 아노락 (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 드치터(wind-cheater) · 윈드재킷 (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 (제6203호의 것은 제외한다) 6201.2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201.30 - 면으로 만든 것 6201.4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201.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소호 -4
62.02 -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 (overcoat) · 카코트(car-coat) · 케이 프(cape) · 클룩(cloak) · 아노락 (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 드치터(wind-cheater) · 윈드재킷 (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 (제6204호의 것은 제외한다) - 오버코트(overcoat) · 레인코트 (raincoat) · 카코트(car-coat) · 케 이프(cape) · 클룩(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 6202.1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202.12 -- 면으로 만든 것	62.02 -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 (overcoat) · 카코트(car-coat) · 케이 프(cape) · 클룩(cloak) · 아노락 (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 드치터(wind-cheater) · 윈드재킷 (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 (제6204호의 것은 제외한다) 6202.2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202.30 - 면으로 만든 것 6202.4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202.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소호 -4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6202.13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202.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기타 6202.9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202.92 -- 면으로 만든 것 6202.93 -- 인조섬유의 것 6202.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210.20 - 그 밖의 의류(소호 제6201.11호 부터 제6201.19호까지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6210.20 - 그 밖의 의류(제6201호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6210.30 - 그 밖의 의류(소호 제6202.11호 부터 제6202.19호까지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6210.30 - 그 밖의 의류(제6202호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63.06 - 방수포(tarpaulin) · 차양 · 차일, 텐트, 돛[보트용 · 세일보드(sailboard)용 · 랜드크래프트(landcraft)용], 캠프용품	63.06 - 방수포(tarpaulin) · 차양 · 차일, 텐트(임시 캐노피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돛[보트용 · 세일보드(sailboard)용 · 랜드크래프트(landcraft)용], 캠프용품	
- 텐트 6306.22 -- 합성섬유로 만든 것 6306.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텐트(임시 캐노피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6306.22 -- 합성섬유로 만든 것 6306.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제67류 주1 가목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여과포 (straining cloth)(제5911호)	가.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여과포 (filtering or straining cloth)(제5911호)	
제68류 주1 차목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차. 제94류의 물품(예: 가구 · 램프와 조명기구 (lamps and lighting fittings) · 조립식 건축물)	차. 제94류의 물품(예: 가구 · 조명기구 (luminaires and lighting fittings) · 조립식 건축물)	
6802.10 - 타일 · 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 (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알갱이 · 조각 · 가루	6802.10 - 타일 · 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 (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가장 넓은 면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으로 덮이는 것으로 한정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알갱이 · 조각 · 가루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 기타 6812.91 -- 의류 · 의류부속품 · 신발 · 모자류 6812.92 -- 종이 · 표지용 판지 · 펄트(felt) 6812.93 -- 압축가공한 시트(sheet) 모양이나 롤 모양인 석면섬유 조인트(jointing) 6812.99 -- 기타	- 기타 6812.91 -- 의류 · 의류부속품 · 신발 · 모자류 <삭제> <삭제> 6812.99 -- 기타	소호 -2
6815.10 -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	- 탄소섬유, 비(非)전기용의 탄소섬유 제품, 비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 6815.11 -- 탄소섬유 6815.12 -- 탄소섬유의 직물 6815.13 -- 그 밖의 탄소섬유 제품 6815.19 -- 기타	소호 +3
6815.91 -- 마그네사이트 · 백운석 · 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6815.91 -- 마그네사이트(천연상태의 마그네시아를 포함한다) · 백운석(천dolime 상태의 백운석을 포함한다) · 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제69류 주1 1.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 제6904호부터 제6914호까지는 제6901호부터 제6903호까지로 분류되는 것 외의 제품에만 적용한다.	1.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 가. 제6904호부터 제6914호까지는 제6901호부터 제6903호까지로 분류되는 것 외의 제품에만 적용한다. 나. 수지의 경화 · 수화작용의 촉진 · 물이나 그 밖의 휘발성분의 제거 등의 목적으로 섭씨 800도 미만의 온도로 가열한 제품은 소성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품은 제69류에서 제외한다. 다. 도자제품은 조제된 무기물 · 비철금속 재료를 보통 실온(室溫)에서 사전에 성형하여 구워 만든 방법으로 얻어진다. 원료는 점토 · 용융 실리카를 포함한 규산질의 재료 · 녹는점이 높은 재료(예 : 산화물 · 탄화물 · 질화물 ·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때로는 내화점토나 인산염과 같은 결합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제(binders)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	
제69류 주2 자목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자. 제94류의 물품(예: 가구· 램프와 조명기구(lamps and lighting fittings) ·조립식 건축물)	자. 제94류의 물품(예: 가구· 조명기구(luminaires and lighting fittings) ·조립식 건축물)	
69.03 - 그 밖의 내화성 도자제품[예: 레토르트(retort)·도가니·머플·노즐·플러그·서포트·큐펠(cupel)·관(管)·쉬드(sheath)·막대(rod)](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69.03 - 그 밖의 내화성 도자제품[예: 레토르트(retort)·도가니·머플·노즐·플러그·서포트·큐펠(cupel)·관(管)·쉬드(sheath)·막대(rod)· 슬라이드 게이트(slide gate)](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6903.10 -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 또는 이들 혼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6903.10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제70류 주1 라목·마목 신설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다. (생략) <신설> 라. (생략)	라. 제86류부터 제88류의 이동수단(vehicle)용의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실드)·후방창문과 그 밖의 창문(틀에 끼운 것에 한한다) 마. 제86류부터 제88류의 이동수단(vehicle)용의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실드)·후방창문과 그 밖의 창문(틀에 끼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가열장치나 그 밖의 전기·전자장치가 결합된 것에 한한다) 바. (생략)	
제70류 주1 마목 마. 제9405호의 램프와 조명기구(lamps and lighting fittings) ·조명용 사인·조명용 명판이나 이와 유사한 것(고정광원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부분품 바~사. (생략)	사. 제9405호의 조명기구(luminaires and lighting fittings) ·조명용 사인·조명용 명판이나 이와 유사한 것(고정광원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부분품 아~자. (생략)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70.01 - 깨진 유리,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 스크랩(scrap), 유리 괴(塊)	70.01 - 깨진 유리,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 스크랩(scrap)[제8549호의 음극선관과 그 밖의 활성화된 유리를 제외한다], 유리 괴(塊)	
70.11 - 밀폐되지 않은 유리로 만든 외피(벌브와 튜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부분품(<u>전구</u> · 음극선관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부착물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70.11 - 밀폐되지 않은 유리로 만든 외피(벌브와 튜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부분품(<u>전기램프와 광원</u> · 음극선관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부착물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70.19 -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 · 직물) - 슬리버(silver) · 로빙(roving) · 실 · 단연사 7019.11 -- 단연사(길이가 5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7019.12 -- 로빙(roving) 7019.19 -- 기타 - 얇은 시트(sheet)(보일) · 웹(web) · 매트(mat) · 매트리스(mattress) · 보드와 이와 유사한 부직포 7019.31 -- 매트(mat) 7019.32 -- 얇은 시트(sheet)(보일) 7019.39 -- 기타 7019.40 - 로빙(roving) 직물 - 그 밖의 직물 7019.51 --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 7019.52 -- 폭이 30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으로 한정한다) 7019.59 -- 기타 7019.90 - 기타	70.19 -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 · 로빙(roving) · 직물) - 슬리버(silver) · 로빙(roving) · 실 · 단연사와 이들의 매트(mat) 7019.11 -- 단연사(길이가 5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7019.12 -- 로빙(roving) 7019.13 -- 그 밖의 실, 슬리버 7019.14 -- 기계적으로 접착한 매트 7019.15 -- 화학적으로 접착한 매트 7019.19 -- 기타 - 기계적으로 접착한 직물 : 7019.61 -- 로빙의 폐쇄식 직조 직물 7019.62 -- 그 밖의 로빙의 폐쇄식 직물 7019.63 -- 폐쇄식 직조 직물[실의 평직물로 도포 · 적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19.64 -- 폐쇄식 직조 직물[실의 평직물로 도포 ·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7019.65 -- 개방식 직조직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7019.66 -- 개방식 직조직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019.69 -- 기타 - 화학적으로 접착한 직물 : 7019.71 -- 베일(얇은 시트)	소호 +7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7019.72 -- 그 밖의 폐쇄식 직물 7019.73 -- 그 밖의 개방식 직물 7019.80 - 글라스 울과 글라스 울의 제품 7019.90 - 기타	
7104.20 - 기타(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으로 한정한다)	- 기타(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으로 한정한다) 7104.21 -- 다이아몬드 7104.29 -- 기타	
7104.90 - 기타	- 기타 7104.91 -- 다이아몬드 7104.99 -- 기타	
71.12 -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71.12 -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854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제15부 주1 차목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차. 제94류의 물품[예: 램프와 조명기구(lamps and lighting fittings) ...]	차. 제94류의 물품[예: 조명기구(luminaires and lighting fittings) ...]	
제15부 주2 가목 2.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	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임플란트로 전용되도록 특별히 고안된 것은 제외한다(제9021호)]	
제15부 주7 7. 복합물품의 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비금속(卑金屬) 외의 재료를 혼합한 물품으로서 이 표의 통칙(the Interpretative Rules)에 따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으로 보는 것을	7. 복합물품의 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비금속(卑金屬) 외의 재료를 혼합한 물품으로서 이 표의 통칙(the General Interpretative Rules)에 따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으로 보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포함한다]....	는 것을 포함한다]....	
제15부 주8 가목 8.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이란 금속의 제조나 금속에 대한 기계작업에 따라 발생한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파손·절단·마손(磨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금속물품을 말한다.	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1) 모든 금속 웨이스트와 스크랩 2) 파손·절단·마손(磨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금속물품	
제15부 주9 신설 <신설>	9. 제74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 다음 각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봉 “봉”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단조(鍛造)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 아니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며 다른 두 변은 직선이고 길이가 같으며, 평행한 “편평 모양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한 주조나 소결(燒結)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trimming)이나 스케일 제거(de-scaling)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위와 동일한 모양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다만, 제74류의 와이어바(wire-bar)와 빌릿(billet)으로 선재[와이어로드(wire-rod)]나 관(管) 등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가공을 용이하게 하도록 단순히 끝을 가늘게 하거나 그 밖의 가공을 한 제7403호의 구리의 괴(塊)로 본다. 이 규정은 제81류 물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프로파일 “프로파일(profile)”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단조(鍛造)·형조(形造)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선·판·시트(sheet)·스트립·박(箔)·관(管)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조나 소결(燒結)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trimming)이나 스케일 제거(de-scaling)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위와 동일한 모양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다. 선(線) “선(線)”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 모양인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라.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8001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 분류되는 호에는 특히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 홈·리브(rib)·체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것에 구멍을 뚫은 것·물결 모양으로 한 것·연마한 것·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없는 것에 적용한다. 아. 관(管) “관(管)”이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모양으로서 그 관(管)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우도 있고,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同心)이며 위와 동일한 모양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管)으로 본다.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管)들은 연마한 것, 도포한 것, 구부린 것, 나선가공한 것, 구멍을 뚫은 것, 웨이스트한(waisted) 것, 익스팬디드한(expanded) 것, 원추형으로 한 것, 플랜지(flange) · 고리 · 링을 붙인 것도 있다.	
제74류 주1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다. (생략) 라. 봉 (생략) 마. 프로파일(profile) (생략) 바. 선(線) (생략) 사. 판 · 시트 · 스트립 · 박(箔) (생략) 아. 관(管) (생략)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다. (생략)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7419.10 - 체인과 그 부분품	<삭제>	소호 -1
- 기타 7419.91 -- 주조 · 주형 · 압착 · 단조(鍛造)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419.99 -- 기타	7419.20 - 주조 · 주형 · 압착 · 단조(鍛造)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419.80 - 기타	
제75류 주1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봉(생략) 나. 프로파일(생략) 다. 선(線)(생략) 라. 판 · 시트 · 스트립 · 박(箔)(생략) 마. 관(管)(생략)	<삭제>	
제75류 소호주2 2. <u>이 류의 주 제1호다목</u> 에 불구하고 소호 제7508.10호의 “선(線)”이라는 용어는 횡단면의 치수가 6밀리미터 이하인 제품(코일 모양인지와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 없다)에만 적용한다.	2. <u>제15부 주 제9호다목</u> 에 불구하고 소호 제7508.10호의 “선(線)”이라는 용어는 횡단면의 치수가 6밀리미터 이하인 제품(코일 모양인지와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 없다)에만 적용한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제76류 주1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봉(생략) 나. 프로파일(생략) 다. 선(線)(생략) 라. 판·시트·스트립·박(箔)(생략) 마. 관(管)(생략)	<삭제>	
2. 이 류의 주 제1호다목에 불구하고 소호 제7616.91호의 "선(線)"이라는 용어는 횡 단면의 치수가 6밀리미터 이하인 제품 (코일 모양인지와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 없다)에만 적용한다	2. 제15부 주 제9호다목에 불구하고 소호 제7616.91호의 "선(線)"이라는 용어는 횡 단면의 치수가 6밀리미터 이하인 제품 (코일 모양인지와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 없다)에만 적용한다	
제78류 주1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봉(생략) 나. 프로파일(생략) 다. 선(線)(생략) 라. 판·시트·스트립·박(箔)(생략) 마. 관(管)(생략)	<삭제>	
제79류 주1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봉(생략) 나. 프로파일(생략) 다. 선(線)(생략) 라. 판·시트·스트립·박(箔)(생략) 마. 관(管)(생략)	<삭제>	
제80류 주1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봉(생략) 나. 프로파일(생략) 다. 선(線)(생략) 라. 판·시트·스트립·박(箔)(생략) 마. 관(管)(생략)	<삭제>	
제81류 주1 1. 제74류의 주 제1호의 "봉", "프로파일	<삭제>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profile)", "선(線)"과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의 규정은 이 류에 준용한다.		
81.03 - 탄탈륨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3.20 -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가루 8103.3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8103.90 - 기타	81.03 - 탄탈륨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3.20 -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가루 8103.3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기타 8103.91 -- 도가니 8103.99 -- 기타	소호 +1
81.06 - 비스무트(bismuth)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6 - 비스무트(bismuth)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6.10 - 비스무트 함유량이 전 중량의 99.99를 초과하는 것 8106.90 - 기타	소호 +1
81.07 - 카드뮴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7.20 - 카드뮴의 괴(塊), 가루 8107.3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8107.90 - 기타	<삭제>	소호 -3
81.09 - 지르코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9.20 - 지르코늄의 괴(塊), 가루 8109.3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8109.90 - 기타	81.09 - 지르코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지르코늄의 괴(塊), 가루 8109.21 -- 하프늄(hafnium) 함유량이 중량 비로 지르코늄의 500분의 1 미만인 것 8109.29 -- 기타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8109.31 -- 하프늄(hafnium) 함유량이 중량 비로 지르코늄의 500분의 1 미만인 것 8109.39 -- 기타 - 기타 8109.91 -- 하프늄(hafnium) 함유량이 중량 비로 지르코늄의 500분의 1 미만인 것	소호 +3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8109.99 -- 기타	
81.12 - 베릴륨 · 크로뮴 · 게르마늄 · 바나듐 · 갈륨 · 하프늄 · 인듐 · 니오븀(컬럼븀) · 레늄 · 탈륨과 이것으로 만든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12 - 베릴륨 · 크로뮴 · 하프늄 · 레늄 · 탈륨 · 카드뮴 · 게르마늄 · 바나듐 · 갈륨 · 인듐 · 니오븀(컬럼븀)과 이것으로 만든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신설>	- 하프늄 8112.31 --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8112.39 -- 기타	소호 +2
<신설>	- 레늄 8112.41 --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8112.49 -- 기타	소호 +2
<신설>	- 카드뮴 8112.61 --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8112.69 -- 기타	소호 +2
제16부 주2 나목 2. 기계의 부분품은... (중략)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중략)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	제16부 주2 나목 2. 기계의 부분품은... (중략)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중략)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하고 제8524호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	
제16부 주6 신설 <신설>	6. 가. 이 표 전체에서 “전기 · 전자 웨이스트와 스크랩”이란 전기 · 전자 조립품, 인쇄회로 보드, 전기 또는 전자 제품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파손 · 절단 · 그 밖의 공정으로 원래의 의도대로 사용될 수 없게 되었거나 원래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 · 정비 · 보수하는 것이 경제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적으로 부적합한 것 2) 개별 물품을 운송·적재·하역 과정에서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방법으로 포장되거나 선택된 것 나. “전기·전자 웨이스트와 스크랩”과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이 혼재된 것은 제8549호에 분류한다. 다. 이 부에는 제38류 주 제4호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84류 주2 2. 제16부의 주 제3호나 이 류의 주 제9호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략) ...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에는 분류하지 않는다. 다만, 제8419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발아용 기기·부란기·양육기(제8436호) 나. 곡물 가습기(제8437호) 다. 당즙 추출용 침출기(제8438호) 라. 방직용 섬유사·직물류나 그 제품의 열처리용 기계(제8451호) 마. 기계적 작동을 하도록 설계된 기계류·설비·실험실장비로서 온도의 변화가 그 작동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에서는 종속적인 것 제8422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자루나 이와 유사한 용기를 봉합하는 재봉기(제8452호) 나. 제8472호의 사무용 기기 제8424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잉크젯방식 인쇄기(제8443호) 나. 워터제트 절단기(제8456호)	2. 제16부의 주 제3호나 이 류의 주 제9호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략) ...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에는 분류하지 않는다. 가. 다만, 제8419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1) 발아용 기기·부란기·양육기(제8436호) 2) 곡물 가습기(제8437호) 3) 당즙 추출용 침출기(제8438호) 4) 방직용 섬유사·직물류나 그 제품의 열처리용 기계(제8451호) 5) 기계적 작동을 하도록 설계된 기계류·설비·실험실장비로서 온도의 변화가 그 작동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에서는 종속적인 것 나. 제8422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1) 자루나 이와 유사한 용기를 봉합하는 재봉기(제8452호) 2) 제8472호의 사무용 기기 다. 제8424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1) 잉크젯방식 인쇄기(제8443호) 2) 워터제트 절단기(제8456호)	
제84류 주5 신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신설> 5~8. (생략)	5. 제8462호에서 평판제품용의 “슬리팅 라인(slitting line)”이란 코일 푸는 기계 · 코일 평평하게 하는 기계 · 슬리터(slitter) · 코일 감는 기계로 구성된 가공설비를 말한다. 평평한 제품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는 설비(Cut-to-length line)”란 코일 푸는 기계 · 코일 평평하게 하는 기계 · 전단기(shear)로 구성된 가공설비를 말한다. 6~9. (생략)	
제84류 주6호(현행의 제5호) 라목 5. 가~다. (생략) 라. 다음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위의 주 제5호다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로 분류되지 않는다. (생략)	6. 가~다. (생략) 라. 다음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위의 주 제6호다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로 분류되지 않는다. (생략)	
제84류 주10 신설 <신설> 9. (생략)	10. 제8485호에서 “부가제조”(3D 프린팅이라고도 한다)라 함은 디지털 모델을 바탕으로 재료(예 : 금속 · 플라스틱이나 세라믹)를 연속적으로 부가 · 적층하고 경화 · 응고시켜 물리적인 대상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16부 주 제1호와 제84류 주 제1호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5호의 설명에 부합하는 기계는 이 호에 분류하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다. 11. (생략)	
제84류 주11(현행의 주9) 가목 9. 가. 제85류의 주 제9호가목과 나목의 “반도체디바이스”와 “전자집적회로”의 표현은 이 주와 제8486호에서도 적용된다. 다만, 이 주와 제8486호의 목적에 따라 “반도체디바이스”는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LED)를 포함한다.	11. 가. 제85류의 주 제12호가목과 나목의 “반도체디바이스”와 “전자집적회로”의 표현은 이 주와 제8486호에서도 적용된다. 다만, 이 주와 제8486호의 목적에 따라 “반도체디바이스”는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LED)를 포함한다.	
제84류 소호주 2 2. 소호 제8471.49호에서 “시스템”이란 제	2. 소호 제8471.49호에서 “시스템”이란 제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84류의 주 제5호다목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기기들로 이루어진 자동자료처리계를 말하며, 적어도 중앙처리장치와 한 개의 입력장치(예: 키보드나 스캐너)와 한 개의 출력장치(예: 영상디스플레이장치나 프린터)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84류의 주 제6호다목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기기들로 이루어진 자동자료처리계를 말하며, 적어도 중앙처리장치와 한 개의 입력장치(예: 키보드나 스캐너)와 한 개의 출력장치(예: 영상디스플레이장치나 프린터)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84.14 -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84.14 -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식의 생물학적 안전 캐비닛(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신설>	8414.70 - 기밀식의 생물학적 안전 캐비닛	소호 +1
8418.10 - 냉장고·냉동고(분리된 외부 문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418.10 - 냉장고·냉동고[분리된 외부 문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문 대신 서랍이 있거나 문과 서랍이 모두 있는 것을 포함한다)]	
<신설>	8419.12 - 태양열 물 가열기	소호 +1
- 건조기 8419.31 -- 농산물용 8419.32 -- 목재용·제지펄프용·종이용·판지용 8419.39 -- 기타	- 건조기 8419.33 -- 동결건조 장치·냉동건조 유닛·분무건조기 8419.34 -- 기타, 농산물용 8419.35 -- 기타, 목재용·제지펄프용·종이용·판지용 8419.39 -- 기타	소호 +1
<신설>	8421.32 -- 촉매변환기나 분진 여과기(두 가지가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내연기관의 배기가스 청정·여과용으로 한정한다)	소호 +1
<신설>	8428.70 - 산업용 로봇	소호 +1
84.38 - 식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	84.38 - 식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비휘발성인 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	
84.62 - 단조(鍛造)용·해머링(hammering)	84.62 - 단조(鍛造)용·해머링(hammering)	소호 +11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용 · 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 · 접음용 · 교정용 · 펼침용 · 전단용 · 펀칭용 · 낫칭(notch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 방법에 의한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가공용 프레스 8462.10 - 단조기(鍛造機) · 다이스탬핑기(die-stamping machine)(프레스를 포함한다)와 해머 - 굽힘기 · 접음기 · 교정기 · 펼침기(프레스를 포함한다) 8462.21 -- 수치제어식 8462.29 -- 기타 - 전단기(프레스를 포함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8462.31 -- 수치제어식 8462.39 -- 기타 - 펀칭기나 낫칭기(notching machine)(프레스를 포함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462.41 -- 수치제어식	용 · 다이포징(die-forging)용(롤링 밀은 제외한다)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 · 접음용 · 교정용 · 펼침용 · 전단용 · 펀칭용 · 낫칭(notching)용 · 니블링(nibbling)용(인발 벤치를 제외한다)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 · 슬리팅 라인(slitting line) ·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는 설비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의한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가공용 프레스 - 단조용 · 다이포징용 열간 성형기(프레스를 포함한다)와 열간 해머 8462.11 -- 밀폐단조기 8462.19 -- 기타 - 평판제품용 굽힘기 · 접음기 · 교정기 · 펼침기(프레스 브레이크를 포함한다) 8462.22 -- 프로파일 성형기 8462.23 -- 수치제어식 프레스 브레이크 8462.24 -- 수치제어식 패널 굽힘기 8462.25 -- 수치제어식 롤 성형기 8462.26 -- 그 밖의 수치제어식 굽힘기 · 접음기 · 교정기 · 펼침기 8462.29 -- 기타 - 평판제품용 슬리팅 라인(slitting line) ·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는 설비 · 그 밖의 전단기(프레스를 제외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제외한다) 8462.32 -- 슬리팅 라인(slitting line) ·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는 설비 8462.33 -- 수치제어식 전단기 8462.39 -- Other - 평판제품용 펀칭기 · 낫칭기(notching machine)나 니블링기(nibbling machine)(프레스를 제외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8462.49 -- 기타 - 기타 8462.91 -- 액압 프레스 8462.99 -- 기타	8462.42 -- 수치제어식 8462.49 -- 기타 - 관·중공이 있는 형강·봉 가공용의 기계(프레스를 제외한다) 8462.51 -- 수치제어식 8462.59 -- 기타 - 냉간 금속가공용 프레스 8462.61 -- 액압프레스 8462.62 -- 기계식 프레스 8462.63 -- 서보프레스 8462.69 -- 기타 8462.90 - 기타	
8479.20 - 동물성이나 비취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조제용 기계류	8479.20 - 동물성·비취발성인 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조제용 기계류	
<신설>	8479.83 -- 냉간 등압성형기	소호 +1
8482.40 - 니들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482.50 -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482.40 - 니들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케이지와 니들 롤러의 조립품을 포함한다) 8482.50 -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케이지와 롤러의 조립품을 포함한다)	
<신설>	84.85 - 부가제조방식의 기계 8485.10 - 금속용 8485.20 - 플라스틱·고무용 8485.30 - 플라스터·시멘트·세라믹이나 유리용 8485.80 - 기타 8485.90 - 부분품	호 +1 소호 +5
84.86 -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 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84.86 -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11호다목 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8486.40 - 이 류의 주 제9호다목 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8486.40 - 이 류의 주 제11호다목 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제85류 주5 신설 <신설>	5. 제8517호에서 “스마트폰”이라 함은 자동 자료처리기계의 기능(예 : 제3자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수의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동시에 실행)을 수행하도록 고안된 휴대기기용 운영체제를 갖춘 셀룰러 통신망용 전화기로서 디지털 카메라나 네비게이션 시스템 등 다른 기능을 장착했는지에 상관없다.	
5. 제8523호에서 (생략)	6. 제8523호에서 (생략)	
제85류 주7 신설 <신설>	7. 제8524호에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라 함은 최소한 표시화면을 장착하여 정보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나 기기를 말하며, 사용하기 전에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결합되도록 설계 제작된 것이다.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표시화면은 평평한 것, 곡선형인 것, 구부러지는 것, 접거나 늘일 수 있는 형태를 포함하나 이들 형태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은 영상신호를 수신하고 이들 신호를 화면의 픽셀에 할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가요소를 결합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8524호에는 영상신호를 변환하는 부품(예 : 스케일러 IC, 복조 IC나 응용프로그램 처리기)을 장착하였거나 다른 호의 물품의 특성을 가진 디스플레이 모듈은 포함되지 않는다.	
6~8. (생략)	8~10. (생략)	
제85류 주11 신설	11. 제8539호에서 “발광다이오드(LED) 광원”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발광다이오드(LED) 모듈”은 전기회로 내에 정렬된 발광다이오드를 기반으로 하며 전기·기계·열·광학 부품과 같은 추가적인 부품을 포함하는 광원을 말한다. 이들은 또한 전력의 공급이나 제어를 위하여 개별능동부품, 개별수동부품 또는 제8536호나 제8542호의 물품을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모듈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은 기계적 전기적 접촉을 원활히 하고 조명기구에 쉽게 갈아끼울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캡을 갖추고 있지 않다. 나. “발광다이오드(LED) 램프”는 전기·기계·열·광학 부품과 같은 추가적인 부품을 결합한 하나 이상의 LED 모듈을 포함하는 광원을 말한다. 발광다이오드 모듈과 발광다이오드 램프의 차이점은 램프는 기계적 전기적 접촉을 원활히 하고 조명기구에 쉽게 갈아끼울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캡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제85류 주12(현행의 주9) 가목 9. 제8541호와 제8542호에서 가.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電界)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디바이스를 말한다.	12. 제8541호와 제8542호에서 가. 1)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電界)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디바이스나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를 말한다. 반도체 디바이스는 보조적 기능을 하는 능동·수동부품을 장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수 부품의 조립품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 정의에서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는 반도체 기반 센서·반도체 기반 액추에이터·반도체 기반 공진기·반도체 기반 오실레이터를 말하며 개별 반도체 기반의 디바이스로 어떠한 종류의 물리적·화학적 현상·활동도 전기적 신호로 바꾸거나 전기적 신호를 물리적인 현상·활동으로 바꾸는 기능을 본질적으로 수행하는 디바이스를 말한다.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의 모든 부품은 분리불가능하게 결합되어 있고 이들의 구성이나 기능을 가능하게 하도록 분리불가능하게 부가된 필수적인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다음의 각 표현은 아래의 설명과 같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가) “반도체 기반”이란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제조되었거나 반도체 재료로 만들어졌거나 반도체 기술로 제조되어 반도체 기판이나 재료가 트랜스듀서 기능과 성능에 핵심적이고 대체불가능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작동은 물리적·전기적·화학적·광학적 특성을 포함한 반도체 특성에 기인한다. 나) “물리적 또는 화학적 현상”은 압력, 음파, 가속, 진동, 운동, 방위, 왜력, 자기장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 빛, 방사능, 습도, 흐름, 화학물질의 농도 등의 현상과 관련된 것이다. 다) “반도체 기반 센서”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한 형태로 마이크로전자 또는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것으로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지고, 물리적·화학적 양을 감지해 이를 전기신호(전기적 속성의 변화 또는 기계구조 변위의 결과로 발생)로 변환하는 기능을 한다. 라) “반도체 기반 액추에이터”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한 형태로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지고, 전기적 신호를 물리적인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전자와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부품이다. 마) “반도체 기반 공진기”란 반도체 디바이스의 한 형태로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지고, 외부 신호에 반응하여 구조물의 물리적인 기하학적 성질에 의해 미리 규정된 주파수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진동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전자와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부품을 말한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바) “반도체 기반 오실레이터(oscillators)”란 반도체 디바이스의 한 형태로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지고, 구조물의 물리적인 기하학적 성질에 의해 미리 규정된 주파수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진동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전자와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능동 부품을 말한다. 2) “발광다이오드(LED)”란 반도체 물질에 기반하여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적외선·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반도체 디바이스로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되었는지에 관계없으며 보호용의 다이오드를 결합하였는지도 관계없다. 제8541호의 발광다이오드는 전력공급이나 제어를 위한 부품을 장착하고 있지 않다.	
제85류 주12(현행의 주9) 나목 4)다)(1) 나. “전자집적회로”란 다음 물품을 말한다. (중략) 4)다)(1) “실리콘 기반 센서”는 마이크로 전자 또는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것으로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지고, 물리적·화학적 양을 감지해 이를 전기신호(전기적 속성의 변화 또는 기계구조 변위의 결과로 발생)로 변환하는 기능을 한다. “<u>물리적 또는 화학적 양</u>”은 압력, 음파, 가속, 진동, 운동, 방위, 왜력, 자기장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 빛, 방사능, 습도, 흐름, 화학물질의 농도 등 실제 현상과 관련된 것이다.	4)다)(1) “실리콘 기반 센서”는 마이크로 전자 또는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것으로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지고, 물리적·화학적 현상을 감지해 이를 전기신호(전기적 속성의 변화 또는 기계구조 변위의 결과로 발생)로 변환하는 기능을 한다. “<u>물리적 또는 화학적 현상</u>”은 압력, 음파, 가속, 진동, 운동, 방위, 왜력, 자기장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 빛, 방사능, 습도, 흐름, 화학물질의 농도 등의 현상과 관련된 것이다.	
제85류 주10호 삭제 10. 제8548호에서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란 파손·절단·소진이나 그 밖의 이유 등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재충전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삭제>	
제85류 소호주 1~3 신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신설> 1. (생략)	1. 소호 제8528.81호는 고속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 레코더로서 다음의 특징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가진 것만을 분류한다. - 기록속도가 마이크로초당 0.5 mm를 초과하는 것 - 시간 분해도가 50나노초 또는 그 이하인 것 - 초당 225,000 프레임을 초과하는 것 2. 소호 제8528.82호와 관련, 방사선 강화 또는 내방사선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 레코더는 고방사선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강되거나 설계제작된 것을 말한다. 이들 카메라는 작동상의 품질저하 없이 최소한 방사선량 50 × 10³ Gy(silicon) (5 × 10⁶ RAD (silicon))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었다. 3. 소호 제8528.83호는 야간투시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 레코더로서 사용가능한 빛을 전자로 변환하고 이를 증폭하여 가시적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는 광음극을 사용한다. 이 소호에는 열영상 카메라는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제8525.89소호) 4. (생략)	
제85류 소호주 5 신설 <신설>	5. 소호 제8549.11호부터 제8549.19호까지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란 파손·절단·소진이나 그 밖의 이유 등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재충전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8501.3 - 그 밖의 직류전동기와 직류 발전기	8501.3 - 그 밖의 직류전동기와 직류 발전기(태양광 발전기를 제외한다)	
8501.6 - 교류 발전기	8501.6 - 교류 발전기(태양광 발전기를 제외한다)	
<신설>	- 태양광 직류 발전기 8501.71 -- 출력이 50와트 이하인 것 8501.72 -- 출력이 50와트를 초과하는 것	소호 +3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8501.80 - 태양광 교류 발전기	
8507.40 - 니켈-철 축전지	<삭제>	소호 -1
8514.10 - 저항가열식 노(爐)와 오븐	- 저항가열식 노(爐)와 오븐 8514.11 -- 열간 등압 성형기 8514.19 -- 기타	소호 +1
8514.30 - 그 밖의 노(爐)와 오븐	- 그 밖의 노(爐)와 오븐 8514.31 -- 전자 빔 노 8514.32 -- 플라즈마 · 진공 아크식 노 8514.39 -- 기타	소호 +2
85.17 -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 · 영상이나.....	85.17 - 전화기(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로 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을 포함한다)와 음성 · 영상이나.....	
-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8517.11 -- 유선전화기[무선 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517.12 --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8517.18 -- 기타	- 전화기(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로 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을 포함한다)와 음성 8517.11 -- 유선전화기[무선 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517.13 -- 스마트폰 8517.14 -- 그 밖의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8517.18 -- 기타	소호 +1
8517.70 - 부분품	- 부분품 8517.71 -- 각종 안테나오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 8517.79 -- 기타	소호 +1
8519.50 - 전화응답기	<삭제>	소호 -1
<신설>	85.24 -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구동 또는 제어회로가 없는 것 8524.11 -- 액정의 것 8524.12 --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것 8524.19 -- 기타 - 기타 8524.91 -- 액정의 것	호+1 소호 +6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8524.92 --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것 8524.99 -- 기타	
8525.80 - 텔레비전 카메라 · 디지털 카메라 · 비디오카메라레코더	- 텔레비전 카메라 · 디지털 카메라 · 비디오카메라레코더 8525.81 --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계기된 고속 카메라 8525.82 -- 기타,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계기된 방사선 강화 · 내방사선 카메라 8525.83 -- 기타, 이 류의 소호주 제3호에 계기된 야간투시 카메라 8525.89 -- 기타	소호 +3
85.29 -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9 - 부분품(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9 -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램프	85.39 -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	
8539.50 -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램프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 8539.51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모듈 8539.52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램프	소호 +1
85.41 - 다이오드 ·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 - 반도체 디바이스(예 : 다이오드 · 트랜지스터 ·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다른 발광다이오드와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40 -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와 발광다이오드	-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와 발광다이오드 8541.41 -- 발광다이오드 8541.42 -- 광전지(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지 않은 것)	소호 +3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8541.43 -- 광전지(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된 것) 8541.49 -- 기타	
8541.50 -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	-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 8541.51 --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8541.59 -- 기타	소호 +1
<신설>	8543.40 - 전자담배 및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	소호 +1
85.48 -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548.10 -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8548.90 - 기타	85.48 -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삭제> <삭제>	소호 -1
<신설>	85.49 - 전기·전자 웨이스트와 스크랩 -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8549.11 -- 연산(鉛酸)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수명이 끝난 연산축전지 8549.12 -- 기타, 납·카드뮴·수은을 함유한 것 8549.13 -- 화학적 형태에 따라 분류된 것으로 납·카드뮴·수은을 함유하지 않은 것 8549.14 --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납·카드뮴·수은을 함유하지 않은 것 8549.19 -- 기타 - 주로 귀금속의 회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 8549.21 -- 일차전지·축전지·수은 스위치·음극선관이나 그 밖의 활성 유리에서 나온 유리를 함유하는 것 또는 카드뮴·수은·납·폴리염화비페닐(PCB)을 함유한 전	호 +1 소호 +11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기 · 전자부품 8549.29 -- 기타 - 기타 전기 · 전자 조립품과 인쇄 회로기판 8549.31 -- 일차전지 · 축전지 · 수은 스위치 · 음극선관이나 그 밖의 활성 유리에서 나온 유리를 함유하는 것 또는 카드뮴 · 수은 · 납 · 폴 리염화비페닐(PCB)을 함유한 전기 · 전자부품 8549.39 -- 기타 - 기타 8549.91 -- 일차전지 · 축전지 · 수은 스위치 · 음극선관이나 그 밖의 활성 유리에서 나온 유리를 함유하는 것 또는 카드뮴 · 수은 · 납 · 폴 리염화비페닐(PCB)을 함유한 전기 · 전자부품 8549.99 -- 기타	
제17부 주2 차목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차. 제9405호의 <u>램프나 조명기구(lamps or lighting fittings)</u>	차. 제9405호의 <u>조명기구(luminaires and lighting fittings)와 그 부분품</u>	
제87류 소호주 신설 <신설>	소호주 1. 소호 제8708.22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기 적합한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가.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쉴드) · 후방창문과 그 밖의 창문(틀에 끼운 것에 한한다) 나.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쉴드) · 후방창문과 그 밖의 창문(틀에 끼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가열장치나 그 밖의 전기 · 전자장치가 결합된 것에 한한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8701.20 -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8701.21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만을 갖춘 것 8701.22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8701.23 --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8701.24 -- 추진용 전동기만 갖춘 것 8701.29 -- 기타	소호 +4
8702.30 - 불꽃점화식 <u>왕복 피스톤 내연기관</u> 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8702.30 - 불꽃점화식 <u>피스톤 내연기관</u> 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8703.2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u>왕복 피스톤 내연기관</u> 만을 갖춘 것)	8703.2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u>피스톤 내연기관</u> 만을 갖춘 것)	
8703.40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u>왕복 피스톤 내연기관</u> 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8703.40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u>피스톤 내연기관</u> 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8703.60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u>왕복 피스톤 내연기관</u> 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8703.60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u>피스톤 내연기관</u> 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 그 밖의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의 것 8704.2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8704.22 --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 8704.23 --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 기타(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	- 기타,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만을 갖춘 것 8704.2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8704.22 --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 8704.23 --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 기타,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	소호 +5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관으로 한정한다) 8704.3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8704.32 -- 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 8704.90 - 기타	관만을 갖춘 것 8704.3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8704.32 -- 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 - 기타,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8704.4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8704.42 --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 8704.43 --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 기타,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8704.5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8704.52 -- 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 8704.60 - 기타, 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신설>	8708.22 -- 이 류의 소호주 1에 규정된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쉴드), 후방 창문 및 기타 창문.	소호 +1
8711.10 -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이하인 <u>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u> 의 것 8711.20 -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초과 250시시 이하인 <u>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u> 의 것 8711.30 - 실린더용량이 250시시 초과 500시시 이하인 <u>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u> 의 것 8711.40 - 실린더용량이 500시시 초과 800시시 이하인 <u>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u> 의 것 8711.50 - 실린더용량이 800시시를 초과하는 <u>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u> 의 것	8711.10 -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이하인 <u>피스톤 내연기관</u> 의 것 8711.20 -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초과 250시시 이하인 <u>피스톤 내연기관</u> 의 것 8711.30 - 실린더용량이 250시시 초과 500시시 이하인 <u>피스톤 내연기관</u> 의 것 8711.40 - 실린더용량이 500시시 초과 800시시 이하인 <u>피스톤 내연기관</u> 의 것 8711.50 - 실린더용량이 800시시를 초과하는 <u>피스톤 내연기관</u> 의 것	
제88류 주1 신설	1. 이 류에서 “무인기”라 함은 제8801호의 것을 제외하고 기내의 조종사가 없이 비행하도록 설계제작된 모든 항공기를 말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한다. 이들은 유료화물을 수송하도록 설계제작되었거나 비행중에 실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장착된 디지털 카메라나 기타의 장치를 갖추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인기"에는 오로지 유희의 목적으로만 설계제작된 날아다니는 완구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9503호)	
제88류 소호주2 신설	2. 제8806.21소호부터 제8806.24소호까지, 제8806.91소호부터 제8806.94소호까지에서 "최대이륙중량"이라 함은 적재중량, 장비와 연료를 포함하여 보통의 비행조건에서 이륙시의 최대 중량을 말한다.	
88.02 - 그 밖의 항공기(예: 헬리콥터·비행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서보비틀(suborbital), 우주선 운반로켓	88.02 - 제8806호의 무인기를 제외한 그 밖의 항공기(예: 헬리콥터·비행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서보비틀(suborbital), 우주선 운반로켓	
88.03 - 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8803.10 - 프로펠러·로터(rotor)와 이들의 부분품 8803.20 - 기체 지지부와 그 부분품 8803.30 -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8803.90 - 기타	<삭제>	호 -1 소호 -4
<신설>	88.06 - 무인기 8806.10 - 승객을 수송하도록 설계제작된 것 - 기타, 원격조종 비행만 가능한 것 8806.21 -- 최대이륙중량이 250 그램 이하인 것 8806.22 -- 최대이륙중량이 250 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것 8806.23 --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 킬로그램 이하인 것	호 +1 소호 +11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8806.24 --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50 킬로그램 이하인 것 8806.29 -- 기타 - 기타 8806.91 -- 최대이륙중량이 250 그램 이하인 것 8806.92 -- 최대이륙중량이 250 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것 8806.93 --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 킬로그램 이하인 것 8806.94 --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50 킬로그램 이하인 것 8806.99 -- 기타	
<신설>	88.07 - 제8801호 · 제8802호 · 제8806호 물품의 부분품 8807.10 - 프로펠러 · 로터(rotor)와 이들의 부분품 8807.20 - 기체 지지부와 그 부분품 8807.30 - 비행기 · 헬리콥터 · 무인기의 그 밖의 부분품 8807.90 - 기타	호 +1 소호 +4
89.03 - 요트, 유람용이나 운동용 그 밖의 선박,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 8903.10 -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 기타 8903.91 -- 범선(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903.92 -- 모터보트[아웃보드 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는 제외한다] 8903.99 -- 기타	89.03 - 요트, 유람용이나 운동용 그 밖의 선박,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 - 인플랫터블(inflatable)식[견고한 선체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8903.11 -- 모터가 결합되었거나 결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짐을 싣지 않은 순중량(모터를 제외한다)이 100 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8903.12 -- 모터를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되지 않은 것[짐을 싣지 않은 순중량이 100 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8903.19 -- 기타 - 범선(인플랫터블식을 제외하며 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	소호 +7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관없다) 8903.21 -- 길이가 7.5 미터 이하인 것 8903.22 -- 길이가 7.5 미터를 초과하고 24 미터 이하인 것 8903.23 -- 길이가 24 미터를 초과하는 것 - 모터보트[인플랫터블식을 제외하며 아웃보드 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를 제외한다] 8903.31 -- 길이가 7.5 미터 이하인 것 8903.32 -- 길이가 7.5 미터를 초과하고 24 미터 이하인 것 8903.33 -- 길이가 24 미터를 초과하는 것 - 기타 8903.93 -- 길이가 7.5 미터 이하인 것 8903.99 -- 기타	
제90류 주1 바목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그러나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익용의 임플란트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고안된 것은 제9021호에 분류한다.]	
- 그 밖의 사진기 9006.51 -- 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뷰파인더(viewfinder)[싱글렌즈리플렉스(SLR)]를 갖춘 것(폭이 35밀리미터 이하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9006.52 -- 기타(폭이 35밀리미터 미만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9006.53 -- 기타(폭이 35밀리미터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9006.59 -- 기타	- 그 밖의 사진기 9006.53 -- 폭이 35밀리미터인 롤필름용 9006.59 -- 기타	소호 -2
90.13 - <u>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u>,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90.13 -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22 - 엑스선이나 알파선 · 베타선 ·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 (생략)	90.22 - 엑스선이나 알파선 · 베타선 · 감마선 · 그 밖의 전리선을 사용하는 기기... (생략)	
9027.80 - 그 밖의 기기	- 그 밖의 기기 9027.81 -- 질량분석기(Mass spectrometer) 9027.89 -- 기타	소호 +1
9030.3 - 전압 · 전류 · 저항 · 전력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9030.3 - 전압 · 전류 · 저항 · 전력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은 제외한다]	
9030.82 --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9030.82 --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집적회로를 포함한다)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9031.41 -- 반도체 웨이퍼와 소자 검사용이나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photomask)나 레티클(reticle) 검사용	9031.41 -- 반도체 웨이퍼와 소자(집적회로를 포함한다) 검사용이나 반도체 소자(집적회로를 포함한다)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photomask)나 레티클(reticle) 검사용	
9114.10 -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삭제>	소호 -1
제94류 표제 가구... (중략)... 다른 류로 분류하지 않은 램프 · 조명기구(lamps and lighting fittings) ... (생략)	가구... (중략)... 다른 류로 분류하지 않은 조명기구(luminaires and lighting fittings) ... (생략)	
제94류 주1 바목, 카목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바. 제85류의 램프 · 조명기구 카. 완구용 가구 · 완구용 램프나 조명기구(lamps or lighting fittings) (제9503호) 당구대나 그 밖의 오락용으로 특별히 설계한 가구(제9504호), 중국등(燈)과 같은 마술(conjuring trick)용이나 장식용 가구[전기식 가랜드(garland) 는 제외한다](제9505호)	바. 제85류의 조명 · 광원과 이들의 부분품 카. 완구용 가구 · 완구용 조명기구(luminaires and lighting fittings) (제9503호) 당구대나 그 밖의 오락용으로 특별히 설계한 가구(제9504호), 중국등(燈)과 같은 마술(conjuring trick)용이나 장식용 가구[조명용 스트링(lighting string) 은 제외한다](제9505호)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제94류 주4 4. 제9406호에서 “조립식 건축물”이란 공장에서 완성한 건축물이나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어 동시에 제시되는 건축물(예: 가옥·작업현장의 숙박시설·사무실·학교·상점·차고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물)을 말한다.	4. 제9406호에서 “조립식 건축물”이란 공장에서 완성한 건축물이나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어 동시에 제시되는 건축물(예: 가옥·작업현장의 숙박시설·사무실·학교·상점·차고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물)을 말한다. 조립식 건축물은 보통 표준 콘테이너에 선적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으로 제시되나 실질적 또는 완전하게 내부가 사전 조립된 강제의 “모듈화된 빌딩 유닛”을 포함한다. 이러한 모듈화된 빌딩 유닛은 보통 영구적인 건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함께 조립되도록 설계제작되어 있다.	
9401.30 - 회전의자(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회전의자(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9401.31 -- 목재로 만든 것 9401.39 -- 기타	소호 +1
9401.40 - 침대 겸용 의자[가든시트(garden seat)나 캠핑용은 제외한다]	- 침대 겸용 의자[가든시트(garden seat)나 캠핑용은 제외한다] 9401.41 -- 목재로 만든 것 9401.49 -- 기타	소호 +1
9401.90 - 부분품	- 부분품 9401.91 -- 목재로 만든 것 9401.99 -- 기타	소호 +1
9403.90 - 부분품	- 부분품 9403.91 -- 목재로 만든 것 9403.99 -- 기타	소호 +1
<신설>	9404.40 - 이불, 침대보, 아이더다운, 깃털 이불[컴포터(comforter)]	소호 +1
94.05 - 램프·조명기구(lamps and lighting fitting)[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생략)]	94.05 - 조명기구(luminaires and lighting fitting)[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생략)]	
9405.10 - 샹들리에(chandelier)와 그 밖의 천장용·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공공공지(公共空地)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 샹들리에(chandelier)와 그 밖의 천장용·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공공공지(公共空地)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소호 +6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9405.20 - 전기식의 테이블 · 책상 · 침대 · 마루스탠드 램프	9405.11 -- 발광다이오드(LED) 광원에 전용 되도록 설계제작된 것 9405.19 -- 기타 - 전기식의 테이블 · 책상 · 침대 · 마루스탠드 조명	
9405.30 -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세트	9405.21 -- 발광다이오드(LED) 광원에 전용 되도록 설계제작된 것 9405.29 -- 기타 -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스트링	
9405.40 -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9405.31 -- 발광다이오드(LED) 광원에 전용 되도록 설계제작된 것 9405.39 -- 기타 - 그 밖의 전기식 조명기구	
9405.50 -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9405.41 -- 발광다이오드(LED) 광원에 전용 되도록 설계제작된 것 9405.49 -- 기타 -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9405.60 - 조명용 사인 · 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9405.51 -- 발광다이오드(LED) 광원에 전용 되도록 설계제작된 것 9405.59 -- 기타 - 조명용 사인 · 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9405.61 -- 발광다이오드(LED) 광원에 전용 되도록 설계제작된 것 9405.69 -- 기타	
<신설>	9406.20 - 강제의 모듈화된 빌딩 유닛	소호 +1
제95류 주1 거목 신설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하. (생략) <신설> 거~어. (생략)	가~하. (생략) 거. 무인기(제8806호) 너~저. (생략)	
제95류 주6 신설 <신설>	6. 제9508호에서 가. "놀이공원의 탈 것(amusement park rides)"이란 주로 즐거움이나 오락을 목적으로 고정되거나 제한된 코스(수류(水流)를 포함한다)를 통하거나 정해진 영역 내에서 한 사람 또는 여러 사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람을 태우고 이동시키는 장치 또는 여러 장치와 설비의 조합을 말한다. 그러한 탈것은 놀이공원, 테마파크, 워터파크 내에 결합될 수 있다. 이러한 탈것은 주거지나 놀이터에 통상적으로 설치되는 종류의 것은 제외한다. 나. "워터파크 유희물(water park amusements)"은 건설된 통로 없이 물을 포함한 제한된 영역에서 사용하도록 특성화된 장치 또는 여러 장치와 설비의 조합을 말한다. 워터파크 유희물은 워터파크에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설비만을 포함한다. 다. 놀이공원용품(fairground amusements)"이란 기회, 힘 또는 기술을 겨루는 게임으로 보통 조작자나 승무원들을 고용하며 영구적인 건물 안이나 독립된 구내상점 등에 설치된다. 놀이공원 유희용품은 제9504호의 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설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95.04 -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 · 오락용구 · 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 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 · 당구용구 · 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 · 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	95.04 -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 · 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 · 당구용구 · 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 · 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 · 코인 · 은행권 · 은행카드 · 토큰과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오락용 기계	
95.08 - 회전목마 · 그네 · 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그 밖의 놀이공원용품과 순회서커스 · 순회동물원 · 순회극장 용품 9508.10 - 순회서커스와 순회동물원 용품 9508.90 - 기타	95.08 - 순회서커스 · 순회동물원, 놀이공원의 탈 것 · 워터파크 유희물, 놀이공원용품(실내사격연습장용품을 포함한다), 순회극장용품 9508.10 - 순회서커스와 순회동물원 용품 - 놀이공원의 탈 것 · 워터파크 유희물 9508.21 -- 롤러코스터 9508.22 -- 회전목마 · 그네 · 회전놀이기구 9508.23 -- 범퍼카(Dodge'em car)	소호 +8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9508.24 -- 동작 시뮬레이션 기기 및 무빙 씨어터(moving theatre) 9508.25 -- 물에서 타는 것 9508.26 -- 워터파크 유희물 9508.29 -- 기타 9508.30 - 놀이공원용품 9508.40 - 순회극장용품	
제96류 주1 차목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차. 제94류의 물품(예 : 가구, <u>램프와 조명 기구(lamps and lighting fittings)</u>)	차. 제94류의 물품(예 : 가구, <u>조명기구 (luminaires and lighting fittings)</u>)	
9609.10 - 연필과 크레용(건고한 집 속에 심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9609.10 - 연필과 크레용(집 속에 심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96.17 -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u>케이스를 갖춘 것으로</u>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	96.17 -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u>완전한 것으로</u>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	
96.19 - 위생 타월(패드)·탐폰(tampon), <u>유아용</u> 냅킨·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	96.19 - 위생 타월(패드)·탐폰(tampon), 냅킨·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	
제97류 주2 신설 <신설> 2~5. (생략)	2. 제9701호에는 대량으로 생산된 모자이크, 상업적 캐릭터의 수작업 작품 등은 이들이 예술가에 의하여 디자인되거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포함되지 않는다. 3~6. (생략)	
97.01 - 회화·데생·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llage)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9701.10 - 회화·데생·파스텔 9701.90 - 기타	97.01 - 회화·데생·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llage) · 모자이크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 9701.21 -- 회화·데생·파스텔 9701.22 -- 모자이크 9701.29 -- 기타 - 기타 9701.91 -- 회화·데생·파스텔	소호 +4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9701.92 -- 모자이크 9701.99 -- 기타	
97.02 - 오리지널 판화 · 인쇄화 · 석판화	97.02 - 오리지널 판화 · 인쇄화 · 석판화 9702.10 -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 9702.90 - 기타	소호 +1
97.03 -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97.03 -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9703.10 -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 9703.90 - 기타	소호 +1
97.05 - 수집품과 표본[동물학 · 식물학 · 광물학 · 해부학 · 사학 · 고고학 · 고생물학 · 민족학 ·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97.05 - 수집품과 표본[고고학 · 민족학 · 사학 · 동물학 · 식물학 · 광물학 · 해부학 · 고생물학 ·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9705.10 - 수집품과 표본[고고학 · 민족학 · 사학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 수집품과 표본[동물학 · 식물학 · 광물학 · 해부학 · 고생물학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9705.21 -- 사람의 표본 및 그 일부분 9705.22 -- 멸종하였거나 멸종위기에 있는 종의 것이나 그 일부분 9705.29 -- 기타 - 수집품과 표본[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9705.31 --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 9705.39 -- 기타	소호 +5
97.06 -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	97.06 -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 9706.10 - 제작 후 250년을 초과한 것 9706.90 - 기타	소호 +1